

N A T I O N A L
H U M A N R I G H T S
C O M M I S S I O N O F T H E
R E P U B L I C O F K O R E A
A N N U A L R E P O R T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연 간 보 고 서

2 0 0 5

국가인권위원회



EM01595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5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이 책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등을 담은 연간보고서입니다



발 간 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께 내놓는 이 연간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한 해 동안 위원회가 한 일을 한데 모아 정리하고 스스로 평가를 내려본 것입니다. 어떤 진정사건들을, 몇 건이나 접수해 조사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 인권과 관련된 정책이나 법령에 대해 어떤 권고를 했으며,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어떻게 인권교육을 하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했는지 등을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나아가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연간보고서이기도 합니다. 위원회의 활동상에 비추어 본 2005년 대한민국의 인권 현실인 셈입니다.

위원회가 출범한 지 4년째 되던 2005년에 위원회는 더욱 바빴습니다. 국민의 귀한 세금을 받아 일하는 인권 공무원인 위원회 직원들이 그만큼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 우리 직원들은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원회 직원들이 바쁘면 바쁜 만큼 대한민국 인권 현실이 아직 개선할 점이 많다는 방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단지 지난해를 두고 느끼는 감회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이 점점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또 더욱 잘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는 2005년에 많은 변화를 꾀했습니다. 국민이 한결 더 쉽게 위원회에 다가올 수 있도록 문턱을 더욱 낮추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으로 바꾸는 작업을 오랫동안 벌여 2006년 초 새로이 직제를 바꾸고, 또 팀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우리 위원회가 왜 이 같은 조직 개편을 했는지 어렵פות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간보고서를 통해 우리 위원회의 활동, 또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도 다음해 이맘때에는 희망적인 내용이 더 많이 담긴 2006년 연간보고서를 선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영황

목 차

2005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 1부 | 총론 013

| 2부 | 위원회 주요 활동 023

제1장 법령·제도·정책·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025

제1절 개 요 025

제2절 주요 추진실적 026

1.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026
2.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049
3. 인권상황 실태조사 051
4. 북한인권 사업 065
5. 청문회·토론회 운영 068
6. 각종 위원회·협의회와 연구포럼의 구성 및 운영 078
7. 인권논문 공모 080

제3절 평 가 081

제2장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처리 083

제1절 개 요 08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084

1. 지역순회 인권상담센터 운영 084

2.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 085
 3. 면전진정 접수 086
 4. 진정접수 087
 5. 인권상담 088
 6. 안내 및 민원처리 093
- 제3절 평 가 093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095

제1절 개 요 095

제2절 주요 추진실적 096

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096
2. 검찰·경찰·군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115
3. 구금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121
4. 기타 기관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124
5. 공청회 운영 133

제3절 평 가 136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37

제1절 개 요 137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38

1.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138
2.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141
3. 평등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147
4.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147
5. 성희롱에 대한 조사·구제 150
6.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152



- 7.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156
 - 8.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158
 - 9.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160
 - 10.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162
 - 11. 기타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62
 - 12. 간담회·토론회 운영 163
- 제3절 평 가 170

제5장 인권교육 및 홍보 173

제1절 개 요 17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74

- 1. 인권교육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 174
- 2.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177
- 3. 공공부문 인권교육 확산 182
- 4.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185
- 5.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 홍보 192

제3절 평 가 193

제6장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197

제1절 개 요 197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98

- 1. 인권단체와 협력 강화 198
- 2.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 협력활동 205

제3절 평 가 212

제7장 인권정보 서비스 213

제1절 개 요 21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213

1.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구축 213
2. 사이버 인권교육 시스템 구축 214
3. 인권자료실 소장 자료 대출 서비스 215
4. 저시력자를 위한 자료이용 보조기기 도입 및 자료열람 공간 확장 216

제8장 지역사무소 217

제1절 지역사무소 설치 배경과 주요 업무 217

1. 지역사무소 설치 배경 217
2. 지역사무소의 주요 업무 217

제2절 주요 추진실적 218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218
2. 교류협력, 홍보, 교육 218
3. 조사 지원 219

제3절 평 가 219

| 3부 | 특별사업 221

제1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안 223

1. 권고안 작성 의의 223
2. 권고안 작성 근거 223
3. 권고안 작성 과정 224
4. 권고안 주요 내용 225



제2장 차별금지법안 227

1. 추진 배경 227
2. 주요 추진실적 228
3. 주요 내용 228
4. 평가 및 향후 계획 229

제3장 위원회 발전기획단 230

1. 추진 배경 230
2. 주요 내용 230

제4장 사무처 조직혁신 233

1. 추진 배경 및 과정 233
2. 직제개편의 주요 내용 234
3. 향후 계획 235

| 부록 | 237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명단 239
2. 자문위원회 등 위원 명단 245
3. 조직 및 정원 250
4. 예산 251
5. 위원회 활동일지 252
6. 위원회 발간자료 263
7. 보도자료 267

| 표 목차 |

[표 2-1-1] 인권 관련 법령·정책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026
[표 2-1-2]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현황	052
[표 2-1-3] 청문회 및 토론회 개최 현황	069
[표 2-2-1] 연도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086
[표 2-2-2] 경로별 진정접수 현황	087
[표 2-2-3] 연도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087
[표 2-2-4] 경로별 상담 현황	089
[표 2-2-5] 인권침해 내용별 상담 현황	090
[표 2-2-6] 차별행위 사유별 상담 현황	092
[표 2-2-7] 경로별 안내 및 민원 현황	093
[표 2-3-1] 인권침해사건 처리유형별 현황	097
[표 2-3-2] 대상 기관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099
[표 2-3-3] 대상 기관별 주요 조치 현황	100
[표 2-3-4] 공청회 개최 현황	134
[표 2-4-1] 차별행위 진정사건 영역별 접수 현황	139
[표 2-4-2] 차별행위 진정사건 사유별 접수 현황	140
[표 2-4-3]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유형별 현황	142
[표 2-4-4] 차별행위 진정사건 사유별 처리 현황	143
[표 2-4-5] 차별행위 진정사건 주요 조치 현황	144
[표 2-4-6] 기타 진정사건 처리유형별 현황	163
[표 2-4-7]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현황	164
[표 2-5-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중 인권교육 분야 권고안	174
[표 2-5-2] 사이버 인권교육 배움터 구성	175
[표 2-5-3] 사이버 인권교육 배움터 방문 및 접속자 현황	176
[표 2-5-4] 초·중등학교 통합학급 교원 및 관리자 연수과정	178
[표 2-5-5] <인권, 누구에게나 소중해요> 구성	179



[표 2-5-6]	<사람이 곧 하늘이다> 구성	180
[표 2-5-7]	인권교육 실천사례 및 문예작품 수상작	182
[표 2-5-8]	법 집행 공무원 등 대상 인권 연수과정	183
[표 2-5-9]	군 인권교육 신설 현황	184
[표 2-5-10]	세 번째 인권영화 제작 현황	185
[표 2-5-11]	<다섯 개의 시선> 국제영화제 초청 현황	186
[표 2-5-12]	<별별 이야기> 국내외 영화제 초청 현황	187
[표 2-5-13]	인권만화집 <사이시옷> 내용	188
[표 2-5-14]	인권사진집 <어디 편들 꽃이 아니라> 작가별 내역	189
[표 2-5-15]	월간 <인권> 주요 내용	191
[표 2-6-1]	2005년 인권단체 지원사업 현황	199
[표 2-6-2]	2005년 시민실천 프로그램개발 용역사업 추진 현황	201
[표 2-6-3]	2005년 국제회의 참가 현황	206
[표 2-6-4]	국제인권기구 및 외국 국가인권기구 방문 현황	208
[표 2-6-5]	외국기관 및 인사 내방 현황	210
[표 2-7-1]	사이버 인권교육 시스템 콘텐츠 내용	215
[표 2-7-2]	인권자료실 장서 현황	216

| 그래프 목차 |

[그래프 2-2-1]	경로별 진정접수 연도별 현황	88
[그래프 2-2-2]	경로별 상담 현황	88
[그래프 2-3-1]	인권침해사건 처리(인용) 현황	98
[그래프 2-3-2]	종결사건의 기관별 현황	98
[그래프 2-4-2]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관련 진정 현황	140
[그래프 2-4-3]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유형별 현황	14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총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를 생각해본다. 우리는 지난 4년간 작은 도움에도 기뻐하는 이들을 보며 가슴 뿌듯해하기도 했지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더 많은 이들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여기까지 왔다.

우리는 적잖은 일을 해왔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싶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더 머나먼 길, 그 길에서 우리의 손길과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을 생각할 때 자부심과 성취감에 만족해하기에는 아직 이른다.

우리의 목적지가 저 멀리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 속에서 현재의 좌표를 확인하는 것은 매년 반복하는 일이나, 그럼에도 2005년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4년여 활동해온 가운데 의미 있는 성과와 변화를 이뤄낸 한 해였다.

2005년에는 위원회의 기능과 조직이 적잖게 확대됐다. 확대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중장기적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3년여의 궤적에 대해 평가와 성찰을 하였다. 그리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을 더욱 많이, 더욱 잘하기 위한 변화가 이뤄졌다.

2005년 차별시정 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되면서 우리 위원회는 차별시정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으며, 또한 지역사무소를 설치했다. 이 같은 조직의 확대는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그만큼 늘어난 것을 의미하는 한편, 국민의 기대와 위원회의 책임이 더욱 커졌음을 뜻하기도 한다. 2005년은 이렇게 확대된 역할에 걸맞은 자기 혁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위원회는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했고, 정책자문 위원회도 꾸렸다. 효율적이며 전문화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6개월에 걸쳐 조직 혁신 작업도 벌였다. 우리 위원회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3개년 계획인 ‘인권증진행동계획’도 마련

했다. 이 같은 일련의 작업들은 위원회의 업무, 역량 및 위상 등 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적·전략적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시하려는 노력이었다. 한마디로 위원회에 2005년은 ‘모색과 변화의 시간’이었다.

이 같은 모색과 변화는 2005년 초 제2기 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 방향을 제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새로 출범한 제2기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세 가지로 천명했다.

첫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보호에 노력한다. 둘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셋째, 인권시민단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이 같은 활동 방향은 지난 시기 위원회의 활동을 계승하고 부족한 점을 극복한다는 관점에서 설정된 것이고, 2005년은 이 같은 활동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된 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위원회는 사형제도 폐지,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법률안, 양심적 병역거부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책과 법령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했다. 많은 국민의 시선이 위원회로 쏠렸고, 거기엔 거센 비판도 있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져 결과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인권의식 제고에 기여했다고 자평한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표명은 사회권 분야에 대한 위원회의 관심과 의지를 밝힌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나 학생두발 제한과 같이 그동안 우리 사회가 큰 비판 없이 받아들이던 교육과 관련된 제도나 관행에 대하여도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논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여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에 노력한다는 제2기 위원회의 활동 방향에 따라 2005년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주거빈곤층, 한센인, 국내 탈북자, 미등록 외국인, 청소년 출소자, HIV감염인, 노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인권NAP) 권고안의 준비상황에 발맞추어 인권



NAP 권고안의 이행을 밀반침함과 아울러 법령·정책 등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향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근거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력 속에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권이 구체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개인의 진정을 통해서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의 헌법과 국제 규범은 개별적인 사건들에 대한 결정을 통해서 실제로 그 효력을 발휘한다. 또 개인의 개별적인 구제에 그치지 않고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이 축적되면서 하나의 지침과 기준으로서 그 의미를 가지며 정책과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된다.

그런 면에서 진정은 인권기구의 출발이자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인권 상담에서부터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 결정 및 권고를 통해 권리구제에 이르는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이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 위원회의 업무이며 위원회가 발전하는 데 바탕이 되는 항구적인 과제다.

2005년에도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상담, 진정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으면서 평생 소외당하며 그늘 속에서 살아온 한센인과 그 가족들을 찾아가 인권순회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위원회는 국립소록도병원과 칠곡농원의 한센인들을 찾아가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지역공동체 토론회 실시, ‘청소년과 함께하는 인권현장’ 및 한센인 인권증진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펼쳤다. 위원회는 이 같은 인권상담을 앞으로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수시로 기동성 있게 전개하기 위해 상담의 ‘발’이 돼줄 인권순회상담용 버스도 구입했다. 2006년부터는 이 상담 버스를 이용해 다수인 보호시설 수용자와 도서·벽지 주민,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상담활동을 벌이려고 한다.

인권침해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구제 활동은 2004년의 ‘진정사건 처리 시스템 재정비’를 바탕으로 진정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 구제의 질적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

됐다. 전년도 대비 침해사건 인용률은 70% 이상 높아졌고, 이는 권리구제 방식이 다양해지고 조사구제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사구제활동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됨에 따라 조사 초기단계인 사건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사 중에 분쟁의 쟁점 및 분쟁 당사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정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이 더욱 많아진 것이다.

2005년에는 여의도 시위 농민 사망사건, 부안 핵폐기장 시위 과정에서 불거진 인권침해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인권침해 사건들이 특히 이목을 끌었다. 그동안 고질적으로 반복돼오던 정신병원 수용자들의 심각한 인권문제, 또 학교·우체국·병무청 등과 같이 국민의 일상적 삶과 관련이 있는 국가기관이 관행적으로 침해해온 인권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구제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인권침해 사건을 통해 위원회는 이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국가=가해자, 국민=피해자'라는 관계를 넘어서 국가기관의 정책, 이슈를 놓고 국가기관과 국민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해가 충돌하는 관계로 인식하고, 이러한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갈등 해결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또한 2005년에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인권 사안, 제도적·구조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 방문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확대하고 동시에 인권침해 행위의 사전 예방효과를 도모하였다.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은 2005년에 그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유형도 다양해졌다. 200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차별 진정사건은 총 1,081건으로서, 전년에 비해 약 2.7배나 늘어났다. 이는 차별시정 업무 일원화 방침에 따라 여성부의 성차별 및 성희롱 업무가 위원회로 이관된 데 힘입은 것이기도 하지만, 차별에 대한 국민의 의식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진정사건의 차별사유 또한 다양해졌다. 그중에서 특히 성희롱,



용모 등 신체조건, 장애, 학력 및 사회적 신분 등의 차별사유에 따른 진정사건이 두드러졌다. 위원회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유형이 다양해진 차별 진정사건을 좀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차별개선담당관실을 신설하는 등 조사인력을 확충하였고, 조사관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조사 및 구제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등 내실을 다졌다.

여러 차별 사건 중에서 색각을 이유로 한 공무원 채용 제한, 학교 및 기업에서의 성희롱,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청계천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에 대한 시정 권고 등이 주목을 받았다. 그 외에도 위원회는 차별 전문가 및 인권단체들과 간담회와 토론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차별시정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유기적인 공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진정직업자격 등 고용차별 판단기준에 관한 외국 판례조사’ 및 ‘청소년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연구’ 같은 용역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등 차별시정 이론 및 정책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위원회는 2005년에 우리 사회에 인권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권교육 및 홍보에도 힘을 쏟았다. 인권 존중은 궁극적으로 그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에서 발현되는 것이므로 인권교육 및 홍보는 인권국가를 향한 무형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위원회의 할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 인권이라는 가치가 점차 확산되고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인권교육의 수요가 증대하는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위원회는 인권교육을 더욱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권교육 법제화 추진, 인권정책 NAP에 인권교육 포함, 사이버인권교육 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벌였다. 아울러 학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학교 운영, 실천사례 및 문예작품 공모, 교사 인권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군대 인권문제가 주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군대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군 인권감수성 연수과정 운영, 군 양성·보수기관 내 인권강좌 개설 추진 등 군 분야 인권교육에도 많은 힘을 기울였다.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사전예방과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인권문화 콘텐츠

츠의 개발과 보급에 힘써온 위원회는 2004년에 제작한 인권 영화 <다섯 개의 시선>을 개봉해 호평을 받았다. 또 인권 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 인권 만화집 <사이시옷>, 인권 사진집 <어디 핀들 꽃이 아니라>도 선보여 국민에게 인권의식을 자연스럽게 심어주고 있다.

인권단체와의 협력 관계는 제2기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특히 큰 전환을 이룬 분야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규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협치(協治, 굿 거버넌스)'적 관계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위원회는 인권단체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위원회는 정책 간담회와 분야별 간담회를 여러 차례 열었고, 위원회가 실시하는 방문조사와 실태조사에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2003, 2004년에 이어 '민간경상보조금사업', '시민실천 프로그램개발 용역사업'을 인권단체와 공동 협력사업으로 진행함으로써, 시민사회에서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재정적으로 취약한 인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위원회는 2005년에도 준국제기구로서 국제인권 공동체에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냈다. 위원회의 역할 수행은 국가인권기구(이하 NI) 협력, 유엔 등 국제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 동향분석의 세 분야로 추진되었다. NI 협력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APF(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 의장직 수행, 네팔 및 파키스탄 NI 설립 지원 등과 함께 ICC(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추진하는 등 위원회는 국제교류협력에 있어 상당한 영역 확대와 발전을 꾀했다. 그러나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이해와 신규 의제 개발, 그리고 국제회의에서 위원회의 발언권 강화를 위해 좀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5년 10월, 위원회는 지역의 인권의식을 증진하고 인권침해 현장에 신속히 다가가고자 부산과 광주에 지역사무소를 설립하였다. 지역 인권 업무를 담당할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1년 11월 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지역사무소를 설립한 것인데,



이는 지역 인권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가 한몫을 해야 한다는 인권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 인권현안을 꼼꼼히 챙겨보겠다는 위원회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부산과 광주지역사무소는 개소 이후 3개월 동안 인권상담, 진정접수 등 위원회의 고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아울러 인권현장 방문과 지역 내 인권단체와의 교류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사무처의 지역업무 부담을 경감하였고, 위원회를 바라보는 지역민의 시선을 한층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부산과 광주 지역사무소의 운영을 토대로 2006년에는 대구, 대전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할 계획이다.

2005년 하반기 위원회 내부 운영의 큰 흐름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바로 직제 개편 등 조직혁신과 발전기획단 운영이다.

그중 직제개편은 지난 3년여 간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부 성찰로부터 촉발됐다. 직제 개편은 6월초 ‘위원회 비전수립 및 조직·인사제도 혁신안 마련’을 목표로 조직혁신팀(T/F)이 구성되면서 그 준비가 본격화돼 연말에 완료됐다. 내부의 치열한 논의와 연구를 거쳐 만들어진 새로운 직제령이 12월 30일 공포됐고, 위원회는 5국 19과 3소속기관에서 5본부 22팀 3소속기관으로 개편됐다.

또한 위원회는 내부 인사 및 학자, 법조인, 인권단체 관계자 등 인권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위원회 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그 아래 3개의 팀(업무전략기획팀, 위상발전기획팀, 역량강화기획팀)을 두어 ‘위원회 발전 전략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 제 1 장 법령·제도·정책·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 제 2 장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처리
- 제 3 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제 4 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제 5 장 인권교육 및 홍보
- 제 6 장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 제 7 장 인권정보 서비스
- 제 8 장 지역사무소



제1장 법령·제도·정책·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제1절 개 요

위원회는 ①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고, ②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며, ③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표명 업무를 수행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4호, 제7호).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규칙·명령·조례 등을 포함하는 ‘개별 성문법규’ △법규와 기타 사회규범에 따라 복합적으로 체계화된 ‘제도’ △정부가 향후 나아갈 노선이나 취해야 할 방침에 해당하는 ‘정책’ △예전부터 늘 되풀이돼온 ‘관행’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해당하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는 인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위원회는 일반적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구체적 사안과 관련된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문회를 활용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법령·제도·정책·관행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토론회 등을 거쳐 관계 기관,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안을 해결하는 데 가장 걸맞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주 요 추진실적

1.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위원회는 2005년 한 해 동안 22건의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이하 법령·정책 등)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였고, 이 중 8건은 해당 기관이 수용했거나 일부 수용했으며, 해당 기관에서 미수용 의견을 밝힌 경우는 1건이었다. 위원회가 법령·정책 등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것 중 나머지 건은 해당 기관이 수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인데, 수용 여부에 대한 명확하고 확정적인 의견 표시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검토 중’으로 분류하였다. 해당 기관이 검토 중인 사안은 13건이다.

[표 2-1-1] 인권 관련 법령·정책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연번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 용	의결일자	해당기관	수용여부
1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재정신청제도, 소송서류 열람 등사권, 필요적 보석, 국선변호인 제도 등의 확대와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영장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함	1.24	법무부	검토 중
2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사업건별 등록방식을 단체별 연간등록방식으로 수정하며, 비현실적인 모집비용 총당비율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함	1.24	행정자치부	일부 수용
3	신원조사제도 개선 권고	신원조사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되, 조사대상자와 조사항목을 조정하고, 연좌제 금지에 위반될 수 있는 항목은 삭제되어야 함	2.14	국회, 국가정보원	일부 수용
4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세부정보제공제도는 도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피해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당해 가해자의 세부정보제공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정보등록제도 및 청소년 관련교육기관 등 취업제한 규정은 수정·보완이 필요함	2.28	청소년 보호위원회	일부 수용



연번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 용	의결일자	해당기관	수용여부
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집행유예 선고 시 치료보호와 보호관찰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것은 재량사항으로 수정하고, 집행유예 선고 시 부과되는 치료보호기간을 4개월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2.28	보건복지부	일부 수용
6	공무원 차등 정년에 대한 개선 권고	공무원의 정년을 계급에 따라 차등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그 개정을 권고함	3.14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검토 중
7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대한 의견표명	초등학생에게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것은 아동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개선하고, 일기쓰기 교육이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함	3.25	교육인적자원부	수용
8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표명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임	4.6	국회, 법무부	검토 중
9	인신보호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인신보호법안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므로 법 제정에 적극 찬성하고,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규율대상 확대, 조사 개시 시기 명시, 이해관계인의 필요적 의견청취제도 도입 등의 보완이 필요함	4.6	국회	검토 중
10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제한적 사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정립의 필요성을 확인하면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4.11	국회, 노동부	검토 중
11	「외국인보호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중요사항을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고지, 보호외국인 사망 등의 경우 출신국 영사에게 통보 의무화, 격리보호 요건 및 기간의 제한 등이 필요함	5.23	법무부	일부 수용
12	통계 등 4개 직무분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정년차별 개선 권고	통계, 전산, 비상계획, 대학직장예비군의 4개 직무분야 별정직 공무원에 한해서만 근무상한 연령을 55세로 규정한 것은 차별이므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함	6.13	중앙인사위원회	검토 중

연번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 용	의결일자	해당기관	수용여부
13	학생 두발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두발의 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두발 제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련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시 학생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며, 강제이발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함	6.27	교육인적 자원부, 시·도교육청	수용
14	「질서위반행위 규제 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은 행정의무위반행위의 비범죄화라는 입법취지를 반영하지 못하여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의 효율성에만 치중되어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7.14	법무부	일부 수용
15	민간보험의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의 획일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시설 등을 보험가입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며, 장애인 관련 공통계약심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8.22	법무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검토 중
16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회복비용, 위로금, 일일수입, 부양상실금 등의 구조범위 포함,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격 요건 삭제 등의 보완이 필요하고, 범죄피해자 수를 기준으로 한 통계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8.22	법무부, 경찰청	미수용
17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권고	가족 및 가정의 정의가 혼인·혈연·입양에 기초하지 않은 가족 및 가정형태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수정하고 정비하며, 가치중립적인 법률명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10. 10	여성가족부	검토 중
18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일정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게임물 제공을 제한하고 위반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함	10.24	국회	검토 중
19	반인도적 범죄 및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 법안에 대하여 공소시효 배제 및 정지 범죄의 범위 수정, 공소시효 정지기간에 대한 구체적 규정, 소멸시효의 기간 연장, 공소시효나 소멸시효에 대한 부진정소급효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11.14	국회, 법무부	검토 중
2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개정 권고	소재불명을 이유로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을 인정하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함	11.14	법무부, 법원행정처	검토 중



연번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 용	의결일자	해당기관	수용여부
2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공무원 가입범위 규정 개선 의견표명	공무원의 노조가입 금지의 범위를 결과적으로 조례·규칙·훈령 등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 및 복위임금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함	11.28	노동부	검토 중
22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의견표명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함	12.26	국회, 국방부	검토 중

(1)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법무부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및 방어권 보장,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권리보장의 향상, 형사절차의 간이·신속화, 형벌 권의 적정성 실현 등을 목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하였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형사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부 규정은 국제인권규약 및 헌법의 기본권 보장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의 배제사유 등의 축소 및 참여권의 내용 명시, 긴급체포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한 사후영장제도 도입, 재정신청제도의 전면 확대, 피고인 구속기간 연장의 재검토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송서류 열람·등사권과 필요적 보석의 범위 확대, 국선변호인 제도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표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위원회가 의견표명한 내용 대부분은 현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선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2)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안」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대신 투명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기부금품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독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표명했다.

기부금품의 모집과 기부행위에 대한 규제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과 표현의 자유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참여민주주의의 확립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등록을 해야 하는 기부금품 액수의 최소기준을 법률에 규정해 기부금품 모집 활동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제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기부금품 모집대상을 열거하는 것 보다는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예외적인 모집금지 사유를 적시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사업건별이 아니라 모집단체가 사업과 관계없이 매년 갱신등록을 하도록 하며, 법에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부금품 출연 강요 행위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여 기부 권유 활동을 인정하고, 비현실적인 모집비용 충당비율과 관련된 규율을 삭제하거나 그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개정안은 위원회의 의견표명 후 기부금품 모집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위원회의 의견대로 개정됐다.

(3) 신원조사제도 개선 권고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2003년 8월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원조사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헌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국회의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여 신원조사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되,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직자로서의 자격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사 대상자를 한정하고,



조사목적에 부합하고 일반적 예측 및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조사항목을 조정하며, 연좌제 금지에 위반될 수 있는 항목은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국회의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원조사 대상자의 열람권 및 정정청구권을 보장하는 등 신원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관리 등이 「공공기관의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조사대상 및 항목을 축소함으로써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으나,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4)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청소년보호위원회(현 청소년위원회, 이하 청보위)는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2회 이상 받은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받은 경우에 본인의 상세한 주소와 사진 등 세부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세부정보를 시·군·구 지역주민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의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04년 8월 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위원회는 개정안의 세부정보제공제도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인격권, 특히 사회적 인격상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도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다만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 청소년과 그 가족이 요청할 경우에 당해 가해자의 세부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개정안의 세부정보제공제도와 관련하여 결정 기관과 결정 시기 및 절차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 재범의 위험성 요건을 추가할 것,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둘 것, 중립적인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록의무 불이행 시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은 삭제할 것, 관련 직무담당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 등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범죄의 경중, 제한되는 직업과 범죄와의 관련성,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제한토록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보건복지부는 2004년 11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조희하였고, 위원회는 개정안의 내용 중 특히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보호관찰의 병과와 관련된 규정이 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법원이 마약중독자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시 치료보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필요적으로 보호관찰을 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재량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울러 집행유예 선고 시 부과되는 치료보호 기간을 4개월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표명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료보호 기간을 4개월 이상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은 수용하여 이를 삭제하였으나, 치료보호와 보호관찰의 필요적 병과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았다.

(6) 공무원 차등 정년에 대한 개선 권고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로 하는 등 계급에 따라 차등 규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위원회에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위원회는 그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공무원의 정년을 차등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대해 원활한 인사 정책 등 공무원 조직의 신진대사를 위한 목적이나 민간기업과의 형평성 내지 청년실업 문제 등이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특정 계급 이하의 공무원을 고용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 제11조에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이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행정자치부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7)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관련 권고

위원회는 2005년 3월 25일 교육인적 자원부장관에게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서 보장하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개선하고, 초등학교의 일기 쓰기 교육이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건에 대한 검토는 한 초등학교가 ‘시상을 목적으로 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행위’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위원회에 조회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현재 많은 초등학교에서 일기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각 시·도 교육감에게 일기 쓰기는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평가·시상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초등학생 일기검사 인권침해 논란

인권총 "사적인 기록 - 개인생활" 교사들은 "글쓰기 능력지하" 반발
네티즌-시민들도 찬반양론 팽팽

생각·행동 교사들의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는 인권침해인가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 국
가인권위원회는 7일 초등학교에서의 일기장 검사 관련은 인격·표현·사생활에 대한 자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는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시상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의 일기장 인사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의견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일기장사 관행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아동이 교사의 감시·감독에 두는 일기 쓰기 교육은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인권위에 환경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지연 시민과후생사회에서는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는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인권위는 "아동이 교사의 감시·감독에 두는 일기 쓰기 교육은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인권위에 환경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지연 시민과후생사회에서는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는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인권위는 "아동이 교사의 감시·감독에 두는 일기 쓰기 교육은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인권위에 환경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지연 시민과후생사회에서는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는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한국일보 2005.4.8. A8면

(8)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2005년 4월 6일에 열린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사형제도 폐지 권고를 결정하였다. 사형제가 헌법 제10조(인간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및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의 원칙)과 사형 폐지를 직접적으로 촉구하는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이하 사형폐지규약)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원회는 2003년 인권 현안 10대 과제 중 하나로 사형제 폐지를 선정했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위원회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사형제에 대한 국내외 동향, 사형 관련 규정, 범죄, 판례 등을 분석하였으며, 그 쟁점에 대하여 검토해왔다.

위원회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2004년 11월과 12월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서 각각 논의를 거친 다음, 2005년 3~4월에 3회에 걸친 전원위원회에서 사형제도 폐지의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즉 전면폐지안, 사형을 폐지하되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안, 사형을 폐지하되 일정기간 감형·가석방 없는 무기형안, 사형을 폐지하되 전시에는 존치하는 안, 현행 사형범죄 범위 등의 축소 방안, 현행 유지안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마침내 2005년 4월 6일에 열린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총 11명의 위원 중 9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사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사형폐지안 8명, 사형존치안 1명의 의견으로 '폐지안'이 의결되었다.

위원들은 사형폐지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일정기간 감형·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 및 전쟁 시 예외적으로 사형제도 유지 의견이 있었던바, 이러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입법과정에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의 의견표명 이후에도 사형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국회 등 사회 전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권위, 사형제폐지 입장 확정

국가기관 첫 결정... 극형 존치여부 논란 가열될 듯

국회에 '의견 표명' 내기로 대체방안은 결론 못내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환)가 국가기관 최초로 사형제도 폐지 입장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은 사형제 폐지를 놓고 뜨거운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형제 폐지 결의=국가인권위는 6일 오후 조영환 위원장 주재로 제8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사형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 국회에 '사형제 폐지 의견표명'을 내기로 결심했다.

이날 전원위원회 참석인인 9명 가운데 김호준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폐지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사를 표명해 이같이 확정됐다. 이날 결정은 인권위가 국회외장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입법방향을 잡을 것을 권고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날 사형제 폐지 의견표명을 내면서 사형제에 대해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이에 관련 구체적인 대안 마련은 입법기관인 국회에 떠맡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들은 사형제 무조건 폐지,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 사형제 존치 등의 대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의견이 엇갈려 세부 방안을 정하지는 못했다.

이해학 의원은 "생명의 존엄성에 비해 조정은 사형제 폐지가 옳다"고 했고, 최금숙 의원은 "사형제 유지를 원하는 다수 국민의 법감정상 다소 위헌 소지가 있더라도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호준 의원은 "형량적으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제도 폐지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견표명'이란? = 보통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처럼 정부기관의 최종 권한자에게 대해서는 '권고'를 낸다. 다만 위원 개인이나 헌법기관인 국회나, 관할을 맡은 한지 법원에는 특정인에 대해 권고하기 어려운 헌법을 감안해 '의견표명' 형식의 입장을 밝힌다.

입장표명도 권고와 같은 효력으로 결정 내용을 입법부나 행정부 등의 기관에 강제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번 의견표명이 국회의 입법활동이나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형제 폐지는 참여정부 출범에 맞춰 당시 인권위가 제시한 '10대 인권현안 과제' 중의 하나였다. 인권위는 이날 최종 결정을 앞둔 지난날 28일 7차 전원위원회에서 이미 9대 '의 폐지 유예로 가결을 잠깐 바 외에 일관되게 사형제 폐지를 고수해왔다. 특히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도 조의장은 "나는 9대부터 사형제 폐지 군의를 주장해왔다"며 폐지'에 무게를 실어왔다.

국회에는 9대부터 10대 의원들이 사형제 폐지에 대해 찬성했다. 이 법안은 국회외장 과반인 175명이 법외법반안으로 찬반을 지지할 것으로 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이 이 법안 처리에는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6일 사무실에서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사형제 폐지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인8

“이제는...” VS “아직은...”

폐지-존치 찬반 '팽팽'... 실현 미지수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형제 폐지 권고 결정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해도 국가기관 최초의 결정이란 점에서 그 상징성과 파장이 적지 않다.

특히 국회에 유인된 의원 등 175명의 과반수 발의로 계속중인 사형제 폐지 법안의 통과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형제 존치를 이유로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선진국'이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향후 한국과 '인권지수'가 향상될 것이라 기대도 날게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형제 존치론의 목소리가 적지 않아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치열한 찬반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폐지론자들은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책임하는 것 자체가 또다른 상인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존치론자들은 국민의 법감정을 존중해야 하며 피해자와 가족자의 생명 가치는 놓아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폐지 쪽에 단체들은 대체로 "사형제의 범죄예방 효과는 증명된 바 없고 법인을 죽인다고 해서 피해자 가족의 심상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총약법에 대해 입법예치 차원에서 사형제가 필요하며 인간의 생명을 가치는 경중을 둘 수 없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할 때는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존치론 입장의 한 변호사는 "사형제 폐지가 강력 범죄 증가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상반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 대기자는 모두 59명이다. 연례상인 법 유령형은 1상에서 사형선고 후 부인이 항소하지 않고 검찰만 법원이 무죄 판결을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하면 사형상 항이 확정되지만 재판이 종결되지 않아 사형 대기자가 되는 경우이다.

■사형제 폐지 관련 일지

1989-1989	대법원, 서울의 합헌성 인용 결정
1989-2	헌법 제39조(장도살인·제사)를 위반한 제57조 제1항(사형집행)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결구, 헌법재판관 6인.
1990-5	헌법 제39조(제사)에 대해 헌법재판관, 대법원 6인, 헌법소원심판결구(헌재는 6인).
1990-5	헌재, 장도살인(제사) 28세)가 낸 1법소원, 7대2 합헌결정. "존치(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 붙여.
1989	공고단체, 총합의 사형제폐지운동의회가 설립.
1997-12	지촌의 총 23명 의지한 사형제 폐지
1999-12	사형제폐지법안(국회제정, 법원 위 상정)도 통해 지촌제정.
2001-10	민주화 정당들 의회 총 154명 사형제폐지법안(국회제정, 법원 위 상정)도 통해 지촌제정.
2004-12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회 총 175명 '사형제폐지특별법안' 발의. 국회는 법사위 상정 본격심사.
2005-4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 폐지 권고

지 않았다. 국민의 정부 이후 현재까지만 한건의 사형집행이 없었다. 가장 오래 사형이 집행된 것은 김영삼 총리 말기인 1997년 12월30일로 무려 231의 사형수가 하루만에 형종의 이슬이

경향신문 2005.4.7. 10면

(9) 「인신보호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형사사법절차 외의 인신구금에 대해서도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를 도입하기 위해 의원 입법 발의된 「인신보호법안」에 대하여 2005년 2월 위원회의 의견을 조회하였다.

「인신보호법안」은 적법한 형사사법절차 외의 불법·부당한 행정력 또는 사인(단체 포함)의 구금에 대해서도 법원에 구제 신청(구속 적부심사)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해 즉각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금의 일시해제 신청, 국선번호인 선임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헌법의 신체의 자유 최대보장 원칙,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기준에 「인신보호법안」이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법 제정에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인신보호법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규율대상과 구제 신청권자의 범위 확대, 조사개시 시기 명시, 이해관계인의 필요적 의견청취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며, 또한 구제청구권 고지 및 구금사실의 통지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신보호법안」은 위원회의 의견표명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10)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4년 9월 정부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및 「파견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이하 비정규직 법률안) 등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경영계와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부르는 등 첨예한 사회적 대립을 가져왔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법률안이 전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인권의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이를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의 보호와 차별의 해소가 우리 사회가 해결하여야 할 기본적 인권과제이자 민주적 사회통합의 당면과제라고 파악하고 그 근본가치가 훼손되고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5.4.11.

형해화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에는 비정규직 법안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근거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 근로자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

판단기준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는 사용사유제한 규정, 사유제한 위반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간주 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 및 기간제 근로계약의 서면요건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파견대상 업무의 제한적 허용 규정, 현행과 동일한 파견기간 규정, 당해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한 휴지기간의 확장 규정, 파견근로자의 불법사용 즉시 직접고용의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파견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용사업주의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법률안은 위원회의 의견표명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11) 「외국인보호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5년 3월 보호외국인에 대한 강제력 행사나 신체검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자 법무부는 2005년 9월 중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안에 맞추어 「외국인보호규칙 전부개정령안」(이하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하였다.

전부개정령안은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외국인 면회의 기준과 절차 등 보호외국인의 인권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담고 있어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향상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인권기준이나 헌법의 기본권 보장 원칙에 비추어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법무부에 의견표명한 주요 내용은 생활규칙뿐만 아니라 불만 제기나 권리구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보호대상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고지하고 중요한 내용은 게시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보호외국인이 위독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외국인의 출신국 영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또한 격리보호 중인 보호외국인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격리보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격리보호의 최대기한을 정하여 자의적으로 운영될 여지를 최소화하며, 격리보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나 이의 제기 수단을 보장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격리보호자에 대한 운동 및 면회 금지는 보호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로 제한해야 한다는 점 등이 포함되었다.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표명 중 「외국인보호규칙 전부개정령안」 제30조(공동청원 금지규정)과 제27조(격리보호자 운동 및 면회 금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수용하였다.

(12) 통계 등 4개 직무분야 별정직 공무원 정년 차별 개선 권고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6조 제1항 별표가 통계, 전산, 비상계획, 대학직장예비군 의 4개 직무를 담당하는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을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과 달리 55세로 규정한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위원회에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통계, 전산, 비상계획, 대학직장예비군의 4개 직무분야 별정직 공무원에 한해



서만 근무 상한연령을 55세로 규정한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6조 제1항 별표는 업무와 연령의 상관관계 및 인력수급 상황 등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 직무분야 공무원을 고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에 정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13) 학생 두발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강제이발 실시를 비롯해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 두발에 대한 제한과 단속이 강화되면서 학생 두발자유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으며 위원회에 관련 진정이 접수되어 위원회는 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학생 두발제한 및 단속으로 인한 문제는 중·고등학교 일반의 관행과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두발의 강제단속을 지양하고 민주적 합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두발제한 규정을 정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각 시·도 교육감에게 두발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의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두발제한과 단속을 할 것, 각급 학교의 두발제한과 관련된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감독기관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두발 관련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할 때 학생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각급 학교에 두발규제를 최소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촛불시위·두발규제 인권위에 묻다

고등학생에 대한 '두발 규제'와 '촛불집회 금지조치' 등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S고 3학년 A군은 최근 '4월 들어 학교측에서 분위기 단속 등을 이유로 이발기계를 학생부 교사들에게 나눠주며 머리카락 길이를 검사하라고 해 대규모 단속이 이뤄졌다'며 "이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인권침해"라

학생들 "집회·신체 자유 침해" 진정

며 진정을 제기했다. A군은 "교과 2년여 동안 이발기계로 적어도 10번은 밀린 경험이 있다"며 "머리카락 길이 제한 조치는 학생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은 것인 만큼 폐지하거나 최소한의 동의 절차를 거쳐 관련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이모(20)씨는 "서울시교육

청과 교육부 등이 학생들에게 7일 열린 내신등급제 항의 촛불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거나 원천 봉쇄한 것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교육부 등이 집회 참가가 마치 범죄행위나 일탈행위인양 여기면서 처벌 운운했다"며 "민주국가를 표방하고

집회결사를 보장하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13일 인권위에서 개최하는 공청회를 거쳐 이달 안으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발 규제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인터넷 모임인 'idoo.net'은 14일 서울 광화문 등 전국 각지에서 두발 자유를 요구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영운기자 daingp@hk.co.kr

자살학생 추모

서울 광화문 시거리에서 7일 300여명의 고등학생들이 내신위주 입시제도 반대 및 자살학생 추모 집회에 참석해 촛불을 밝히고 있다. 김주성기자



한국일보 2005.5.9. A8면

(14)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법무부는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행위의 비범죄화와 과태료 부과·징수의 통일성,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이하 법률안)을 마련하고 2005년 1월 입법예고 하였다.

위원회는 법무부 법률안과 같이 과태료 제도를 규율할 법률의 입법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법률안이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행위의 비범죄화라는 과태료 일반법 제정의 주된 입법취지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법률안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과도한 과태료 상한액 규정,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중복적 조사권 부여,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를 통한 인신구속 등의 규정이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의 효율성에만 치중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법률안 재검토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법무부장관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 조사권, 관허사업의 제한 및 감치제도에 대한 일부 요건만을 수정하여 2005년 8월 30일 이를 국회에 제출하였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15) 민간보험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개선 권고

민간보험이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2005년 1월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경상북도 칠곡군 소재)의 화재 사고를 계기로 차별의 심각성이 사회문제가 되었다. 특히 화재와 같은 대형재난에 대한 보장책이 필요한데도 정신 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여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민간보험의 장애인 관련 실태와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직권조사 등을 바탕으로 보험 관련 법제의 개선 및 필요한 정책지원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정신적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확립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규정으로, 국가의 장애인 보호 책무에도 반하므로 상법을 개정하여 이를 삭제할 것, 민간보험의 장애인 차별 방지 및 구제를 위해 최소한 보험업법에 보험자의 불합리한 행위를 금지하고 감독관청이 이를 시정조치할 근거를 마련할 것,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장애인시설 등을 신체손해 배상 특약부 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심화할 수 있는 장애관련 공동계약심사기준을 개선하고, 개별 보험계약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보험상품의 약관·특약, 보험인수기준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할 것, 그리고 이러한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정책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재정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소관 부처에 각기 분산되어 있는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정책 조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하였다.

법무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있고, 금융감독원장도 구체적인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있지만, 위원회의 권고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장애인 심사기준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16)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

법무부는 2004년 9월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요건을 완화한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05년 5월 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하였다.

위원회는 구조요건 중 ‘피해자의 생계유지 곤란’을 삭제하고, 유족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며, 구조금의 지급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하지만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충실한 보장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회복 비용, 위로금, 휴업·휴직·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부양상실금이 구조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회복 비용은 장해 여부와 관계없이 구조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 또 유족에 대한 치료·상담비용 및 위로금은 순위와 관계없이 구조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요건을 삭제하고, 범죄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구조금의 지급으로 가해자의 이익이 증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증이 있으면 구조금 전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울러 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수를 기준으로 범죄피해자의 피해 상황과 정도에 대한 통계자료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무부장관은 2005년 9월 23일 위원회의 권고를 당해 개정안에 반영하기 어렵고 향후



정책수립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회신하였고, 국회는 2005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17)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권고

「건강가정기본법」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2003년 12월 29일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가족의 개념 조항과 관련하여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 법은 가족과 가정의 개념을 혼인 및 혈연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어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혼인·혈연·입양에 기초하지 않은 가정형태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누구나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서 정의한 가족 및 가정의 개념을 지지·옹호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어 판단기준과 행위규범으로 삼고, 이에서 벗어난 가족 및 가정 형태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해 이들을 다르게 대우하려고 할 수 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혼인·혈연에 기초한 가족 및 가정 형태를 정상으로 여기고 그 외의 가족 및 가정형태를 비정상으로 간주하여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차별해왔다. 오늘날 이혼·사별이나 미혼부모로 말미암아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재혼가족, 동거가족, 공동생활가족, 단독가구 등 다양한 가족 및 가정 형태가 출현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및 가정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하여 이를 벗어난 가족이나 가정 형태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다양한 가족 및 가정 형태를 인정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적 추세다.

이에 위원회는 가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된 이 법이 혼인·혈연·입양관계에 한정된 가족이나 가정 형태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족으로서 가정을 구성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도록 개정할 것을 2005년 10월 10일 여성가족부에 권고하였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18)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표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2005년 8월 26일 김재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해왔다.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의 지나친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을 아예 못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위원회는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는 부정적인 면을 감안하더라도 대상 게임물의 내용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도 아니고 덜 제한적인 규제방법을 찾을 수 있으므로 이는 과잉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청소년의 진정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지라도 이 게임 이용의 확실적인 통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규정된 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 보장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온라인 게임 제공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면서 형벌의 필수적인 구성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할 수 있고, 청소년의 이용 환경이나 지나친 이용 가능성 등에서 온라인 게임을 다른 게임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특정 게임물 제공자에 대한 차별로도 볼 수 있다. 나아가 인터넷의 특성과 청소년의 교육환경 및 인터넷 문화 등을 고려할 때에 국가의 일률적인 규제를 입법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할 것이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 이용에 대한 일정한 제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게임 산업계 자체적으로 기술적 대안과 합리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가정과 학교의 감시,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 및 입법적 지원 등 적절한 상호보완적 조치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으로도 개정안과 같은 의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개정법률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의견표명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19) 반인도적 범죄 및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05년 9월 이원영 의원 등 146인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해왔다.

이에 위원회는 특례법안의 내용과 함께 기왕에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과 관련된 이행입법의 추진 상황을 검토,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정지할 특례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특례법안의 일부 규정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가 그전에 의견표명한 취지에 부합하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이행법률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례법안의 내용에 대해, 위원회는 공소시효 배제 범죄의 범위를 제한하고, 공소시효 정지 범죄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며, 공소시효 정지기간을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보다 더 장기의 소멸시효 기간을 인정하며, 특례법안이 이미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특례법안은 위원회의 의견표명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고,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2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개정 권고

헌법 제27조 제1항은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권리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공정한 재판의 절차적 보장은 당사자의 출석과 변론의 기회를 제공하여 충실한 공격·방어를 전개할 수 있도록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요구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3항(d)에서도 형사상의 죄를 결정하는 경우에 그 재판에는 본인이 출석하여 변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당사자에게 사전에 적법한 방법으로 공판절차를 통보하고 출석을 요청할 것을 의미한다. 즉, 당사자에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통보와 출석 기회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불출석 재판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공판에 출석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중요하다. 공판 출석을 위해 당사자에게 공판일시, 장소, 내용을 충분히 통보하고, 출석 요청을 통한 출석 기회 보장은 필수적인 적법절차이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도 당사자에게 공판에 대한 사전 통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피고인의 소재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을 인정하고 있다. 이 불출석 재판은 피고인이 공판에 대한 사전통보를 전혀 받지 못해도 공판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공개된 법정의 법관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므로,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인정돼야 한다. 위원회는 그 같은 엄격한 기준에 비취 위의 제23조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이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2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공무원 가입범위 규정 개선 의견표명

2005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노동부는 2005년 10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였다. 시행령안은 공무원노조법에서 위임한 노동조합 가입범위, 교섭대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시행령안 내용 대부분은 근원적으로 법률 제정과정에서 지적되어온 문제와 관련이 있어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했다. 그러나 시행령안 내용 중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화한 규정 중 일부 내용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노동기본권의 핵심적 요소인 단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보았다.

즉, 시행령안은 공무원노조법에서 근로자인 공무원 중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으나 이를 조례, 규칙 등 하위법령 등에 서도 실질적으로 다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원리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와 재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내용에 대해 시행령에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22)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의견표명

위원회는 2005년 12월 26일에 열린 제26차 전원위원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양심의 자유 보호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2001년 위원회 설립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은 총 9건이었다. 그 내용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제해줄 것’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하여 의견표명을 요청해줄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04년 10월 18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 윤모(24)씨와 최모(23)씨는 “매년 700여 명의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고, 현재의 결정으로 2005년에 1,000명 이상의 병역거부자들이 처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시급히 요구해달라”는 개인 청원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내기도 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임종인 의원과 노회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부인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배경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한국 내 양심적

인권위,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종교적 신념 등 이유)

국회·국방부에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키로

▶ 관계기사 14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환)가 26일 이란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키로 했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본지 12월 14일자 1면)

인권위는 "병역의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민의 필요적 의무인 이상 양심적 병역 거부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 세계인권선언 등을 판단의 준거로 삼았다"며 "양심의 자유는 국가 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헌제의 제도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와 그로 인한 형사처벌'과 '단순한 병역의무의 이행' 사이에 양자택일식 해결 방법론"이라며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보상황과 관련, 인권위는 "독일과 대만의 대체복무제 도입은 안보 위협이 있는 시기에 도입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대체복무제를 도입

할 경우 인정 여부를 공정하게 판정할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며 "대체복무기간은 초기 단계에서는 현역복무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추후 국제적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의 영역은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인간 보호에 필요한 봉사과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 중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병역과 징집을 거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병역법 제4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백발한 기자

keysm@joonqang.co.kr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의뢰하여 그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2005년 10월에는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무제도 도입 및 도입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그 결과,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우리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양심에

중앙일보 2005.12.17. 1면

반하는 행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권)'가 포함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체복무의 인정여부를 공정하게 판정할 기구가 있어야 하고, 대체복무의 기간은 초기 단계에서는 현역복무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추후 국제적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며, 대체복무의 영역은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보호에 필요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 중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였다.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있고, 위원회의 권고 이후에도 대체복무제도는 여전히 도입되지 않고 있으나 관련 논의가 사회각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위원회는 2005년 한 해 동안 세 건의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였다. 이는 선택의정서의 성안, 국제인권조약 가입(유보철회 포함)과 이행,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을 위한 정부보고서 작성에 관한 것이었다.

(1)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성안을 위한 제2차 실무회의 관련 의견

외교통상부는 2004년 12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성안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인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인지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유엔인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의 선택의정서 성안을 위한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고, 정부가 향후 유엔인권위원회의 관련 회의에서 사회권의 이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지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유엔인권위원회 실무그룹 제2차 회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사회권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justiciability)이 인정된다고 보고, 개인통보제도 도입이 사회권의 국내 실현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사회권규약상의 모든 권리에 대한 침해가 개인통보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회권위원회가 개인통보 업무의 심사 기관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사회권규약의 선택의정서 협약 문안 채택을 위한 국제회의가 진행 중에 있고, 외교통상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협의 과정에 임하고 있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1조의 유보 철회 및 이행에 관한 권고

한국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 제21조(가)의 국내 이행을 유보하고 있고, 아동의 입양에 관한 규정 제21조 전반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아왔다. 특히 아동권리위원회는 국내 입양이 미진한 상황을 개선하고 「1993년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대한 헤이그협약」에 가입하여 국제적 입양에 있어 아동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보호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7호, 제25조에 따라 아동권리협약과 아동입양 관련 국내 법령 및 정책을 검토하여, 입양 관련 민법 등을 개정하여 아동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심사 후에 입양을 허가하도록 하고, 아동권리 협약 제21조(가)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아동권리협약 제21조(나), (다), (라), (마) 및 동 협약 제7조, 제12조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입양 관련 제도를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 아동의 의사 존중 원칙,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 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헤이그협약에 가입할 것을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3)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6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표명

여성부와 외교통상부는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8조에 따라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민국이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입법, 사법, 행정의 각종 조치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이 협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작성 지침 및 지난 제3, 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를 기준으로 하여, 이번 제6차 정부보고서가 대한민국 여성의 인권현실을 반영하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정부보고서 작성 지침을 따랐는지, 또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한 결과를 보고서에 담았는지, 정부보고서 제출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판단하였다.

검토 결과, 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차 정부보고서는 법제도의 시행 및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고,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에 있어 당면한 문제점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우려 및 권고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여 기술하지 못하였으며, 전체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자료가 부족하고 장애여성, 노인여성, 이주여성 등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 및 정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여성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와 충분히 협력하지 못하였으며, 베이징에서 채택된 12개 행동강령의 이행과 관련된 정책을 적절히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성부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차 정부보고서의 최종안을 마련하면서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3. 인권상황 실태조사

위원회는 2005년 한 해 동안 17건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위하여 약 7억원의 예산을 지출하였다. 2005년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주거빈곤층, 한센인, 국내 탈북자, 미등록 외국인, 청소년 출소자, HIV 감염인, AIDS 환자, 노숙인, 장애인, 장애아동 등 조사대상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1) 개발사업지역 세입자 등 주거빈곤층 주거권 보장 개선방안을 위한 실태조사

위원회는 2005년 5월 주거빈곤층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거지는 세입자 등 주거빈곤층의 주거불안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실태조사의 최종 보고서에는 주거권의 개념 및 내용, 개발사업의 주거권 침해 내용 및 실태, 외국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등을 담았다. 보고서는 개발사업에서 주거권 보호를 위하여 개발사업지역 내 모든 거주민에 대한 적절한 주거대책 의무화, 행정대집행 및 명도집행 절차에 있어 사전적 조치 규정, 민간개발사업 지구 내 세입자를 포함한 모든 개발사업지역의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와 소득에 따른 차등 임대료 부과체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책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

[표 2-1-2]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현황

연번	과 제 명	연구수행자	비고
1	개발사업지역 세입자 등 주거빈곤층 주거권 보장 개선방안을 위한 실태조사	(사)한국도시연구소	완료
2	한센인 인권 실태조사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
3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	(재)국제평화전략연구원	"
4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전북대 총장	"
5	청소년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연구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본부	"
6	사업장 감시시스템이 노동인권엔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7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하대 총장	"
8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성공회대 산학협력단	"
9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10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건국대 산학협력단	"
11	학령기 장애학생 통합교육 현황 실태조사 연구	한국재활복지대	"
12	인권 관련 정부 공식통계에 대한 실태조사	새사회연대	"
13	전·의경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천안대 산학협력단	"
14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연구	광주대 산학협력단	"
15	진정직업자격 등 고용차별 판단기준에 관한 외국 판례 조사	법률사무소 이안	"
16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성공회대 산학협력단	"
17	단전·단수 등으로 인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2) 한센인 인권 실태조사

위원회는 한센인 인권보호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과거의 한센인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예비조사, 한센병과 한센인에 대한 국가정책, 한센 환자와 병력자 및 그 가족이 겪은 사회적 차별, 한센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 한센 병력자의 의료·생활시설 실태, 관련 법령 및 한센인 정책 전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한센인 인권실태조사 중간보고회의 2005.10.6.

하였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실태조사에 따라 한센인 인권침해의 역사와 현실을 파악하였고, 한센병 관리제도와 한센인 의료서비스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한센인 생활실태와 복지정책을 분석·정리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센인 특별법안을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추후 한센인 인권 보호증진 방안에 대하여 권고할 때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3)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

위원회는 2005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탈북자 입국과정, 교육과정 및 정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북자의 인권문제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는 우선 선행 연구 성과를 기초로 하여 문헌 분석 방법에 따라 기본 연구를 시작했다.

다음으로 500명의 탈북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50명에 대한 심층면접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문제 제기와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탈북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일부 실현 가능한 방안을 학술적 차원에서 제언의 형식으로 종합·정리하였다. 더 나아가 독일의 역사적 경험 사례와 우리 사례의 비교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대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위원회는 연구 결과를 통하여 국내 입국 탈북자의 인권의식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인권의식을 묻는 질문에서 탈북자의 절반가량은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적지 않은 수는 답변하지 않거나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하면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인권관은 처음에는 소극적 차원에서 사회나 타인으로부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사회에 정착하면서부터는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적극적 차원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위원회는 또한 연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향후 탈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더 발생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하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탈북자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것과 탈북자의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제도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할 계획이다.

(4)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

위원회 출범 이후 외국인 관련 분야에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 실태조사’(2002년),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인권 실태조사’(2003년), ‘외국인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2004년)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에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 2005.7.28.

미등록 외국인(undocumented foreigners)은 사증, 취업허가, 거주허가 등 출입국 관련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미등록 이주자(undocumented migrants)', '비합법 이주자(irregular migrants)'로 불린다. '불법체류 외국인(illegal aliens)'이라고도 하지만 '불법'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범죄자'로 간주하도록 오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계와 국제기구에서는 이 용어를 잘 쓰지 않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은 전체 체류 외국인의 25%에 달하는 18만 8천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상시 합동단속 체제를 가동하면서 강력하게 단속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심심찮게 인권침해 논란이 벌어지곤 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보호, 그리고 강제추방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실태파악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주요 국제인권법상의 기준'과 '여러 인권 선진국의 법제와 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단기·중기·장기적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등록 외국인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5) 청소년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연구

위원회는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수용 경력이 있는 청소년,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수용

경험이 있는 성인 재소자, 청소년 출소자의 사회복귀에 중요한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교사, 또래학생,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고용관계자, 청소년 출소자를 위한 시설 운영자 또는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개별면담 및 집단면담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사회적 차별 때문에 출소 청소년이 재범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청소년 출소자의 재범 유발 요인으로는 사회적 낙인을 끄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동시에 가족의 냉대와 불화, 소년원·소년교도소 동료와의 어울림 및 경제적 어려움 등도 주요 재범 유발 요인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출소자가 경험한 사회적 차별 영역을 크게 사법절차 및 집행과정, 고용 및 직장 생활, 학교교육으로 구분해보면, 먼저 사법기관인 경찰·검찰·법원에서 경험한 차별로, 청소년 재소자는 재범 조사·처리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것(75.0%), 폭언이나 폭력(73.0%), 말할 기회 박탈(59.5%),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지 않음(54.1%), 타인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52.7%) 등을 지적했다.

한편, 출소 경력으로 인해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해고당한 청소년 출소자는 11~13%로 나타났다.

교육현장에서 경험하는 차별도 심각했다. 청소년 재소자가 출소 후 아예 복학하지 않은 경우가 45.8%에 달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나이가 많기 때문(40.8%)이 가장 많고, 학교공부를 따라갈 수 없어서(36.6%),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28.2%)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교에서 입학을 허락해주지 않거나(25.3%), 교사(15.5%)와 학생(14.1%)의 불공평한 대우, 경제적 빈곤(19.7%) 등으로 복학하지 못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복학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취급을 당했다거나 중요 역할 배제, 엄한 교칙 적용 등 학교생활에서 겪은 차별 형태는 일반 응답자들의 선입관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 출소자를 포용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기회를 제공하며 정부나 관련 기관의 지지, 경제적 지원, 취업 지원, 인권교육 등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청소년 출소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사업장 감시시스템이 노동인권 에 미치는 영향 실태조사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각종 사업장에서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해 근로자의 노동 감시 등 통제가 확대되거나 심화되고 있고, 노동과정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확대되어 근로자 정보인권과 노동권이 제약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각종 사업장의 전자 감시시스템 활용 상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될 경우 향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보호 정책 개발 및 법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전자감시 시스템이 갖는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노사 모두 부족한 실정이며 현행법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감시시스템이 남용되고 있고, 노동조합의 대응 여부와 사용자의 노력에 따라 전자감시시스템 도입 및 활용 수위와 방식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전자기술의 활용이 업무의 효율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면보다 근로자의 근무조건 악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는 전자기술 활용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러한 규제 방안에 전자기술 설치부터 감시 자료의 활용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7)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위원회는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HIV 환자 및 AIDS 환자(이하 HIV 감염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HIV 감염인 등 16명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와 HIV 감염인 255명에 대한 설문조사, 비뇨기과 및 대장항문외과 전문의 136명에 대한 우편 설문조사, 서울지역 24개 보건소의 HIV 감염인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실태 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HIV 감염인의 인권실태와 HIV 감염인 인권침해의 원인 분석, 국내 법·정책에 대한 분석과 외국인 HIV 감염인 정책 비교 등을 검토한 결과, HIV 감염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대중홍보 및 보건의료인 교육, AIDS 예방정책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개선 방향,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복지서비스 내실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HIV 감염인의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

(8)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위원회는 2005년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에 걸쳐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주거권, 건강권, 노동권 등 사회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노숙인의 인권상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노숙인들이 직접 느끼는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 노숙을 경험했거나 현재 노숙인 생활을 하고 있는 노숙인 6명이 조사계획, 조사실행, 조사결과 정리 등 거의 모든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기에 적합한 심층면접 방식과 컴퓨터 및 탈(脫)시설 불안정 주거거주 노숙인에 대한 방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태조사는 노숙인의 인권상황을 기본적 생존권, 주거권, 건강권, 노동권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노숙인의 인권침해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그아울러 노숙인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의 노숙인에 대한 정부 지원책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노숙인의 인권상황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숙인 문제의 본질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과 노숙인 인권침해 양상이 다양한 영역에 걸쳐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으므로 노숙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정비 및 준수, 행정 조치, 정책적 프로그램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노숙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견해를 정리하여 관계부처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예정이다.



(9)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위원회는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조건부 미신고 장애시설의 인권상황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미신고 복지시설에서 불거지는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의 성과 및 향후 지원방안’을 참고해 신고 하거나 신고할 예정인 조건부 미신고 장애시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여 그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본인 스스로 입소를 결정한 경우가 22.1%, 본인이 직접 자신의 재산을 관리한 경우가 14.2%, 시설 내 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48%로 나타나는 등 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울러 시설 운영자의 인권의식 저조, 시설 생활환경이 열악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실태조사는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의 구체적인 인권확보 방안으로 생활시설 입·퇴소권 보장, 복지서비스의 다양화와 관리감독체계의 확립, 바우처 제도 및 현금 급여의 도입과 구체화, 생활인 인권의 절차적 보장, 시설서비스의 최소 기준의 법제화, 사회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등을 제안하였다.

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추가 수렴하고 관련부처의 최근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10) 주민등록번호 사용 현황 실태조사

위원회는 2005년 8월말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로 빈번한지 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법정 서식과 민간 서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지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주민등록번호가 어느 정도 수집·활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시 형사·사법, 교육, 기업·노동, 의료, 조세, 기타 등 영역별로 주민등록번호가 수집되고

활용되는 현황을 분류하여 검토하였으며, 각 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필요성과 사용 실태 및 중요 양식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주민등록번호의 범용현상이 적법한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법정 서식과 민간 서식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모든 영역에서 그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다른 대체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수집·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활용이 적절한 법적 규제 없이 자율에 맡겨져 있는 점이 이러한 광범위한 수집·활용에 일정 부분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주민등록번호제도의 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견해를 정리하여 행정자치부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할 예정이다.

(11) 학령기 장애학생 통합교육 현황 실태조사

위원회는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학령기 장애아동 통합교육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학령기 장애아동 통합교육 현황을 파악·분석하고, 통합교육의 개선방안 제시, 통합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아동의 교육권 개선을 모색하고자 함이었다.

실태조사를 위해 먼저 관련 국내외 문헌 고찰, 국가의 제도와 정책, 통계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중앙 및 지방 교육행정가, 학교관리자, 교사, 부모, 학생 등 총 17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5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현장 관찰, 초·중·고 교사, 학부모, 학생 1,9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 현장조사를 하고, 통합학급 교사와 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2개월간 일기형식의 자기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실태조사는 일반교원의 장애 인식과 통합교육 책무성 개선, 교원 양성 및 배치 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조정,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운영 등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위원회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장애아동의 교육권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12) 인권 관련 정부 공식통계에 대한 실태조사

위원회는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정부(대법원, 헌법재판소 포함)의 인권통계 현황을 파악하고 인권의 시각에서 재조명하여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지표 또는 항목을 시정하고,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 중심의 통계 및 지표 개발을 목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인권 분야 전반을 체계화한 종합인권통계 체계를 수립하고, 인권의 시각에서 인권 관련 통계를 조정·지원·협력하며, 인권지표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국민의 인권 존중,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하였다.

(13) 전·의경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위원회는 전·의경의 인권 실상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전·의경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초조사 결과, 전·의경에 대한 구타 및 가혹행위, 사적 제재(制裁), 성적 괴롭힘, 음성적인 금전 각추럼 행위 등의 인권침해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시위진압 등 격무로 인한 피로 누적, 열악한 내무반 생활, 부족한 편의·복지시설, 왜곡된 조직문화와 아울러 미흡한 인권 교육으로 인하여 인권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조사는 이와 같은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무실 등 생활공간의 개선, 노후시설의 전면적인 신·개축, 내무실의 소단위화와 ‘침대형’ 개선, 복지혜택의 현실화(PC방 설치, 영양사 배치 및 식비와 급여 대폭 인상, 생활필수품의 면세혜택, 자격증과 학점 취득 등 자기 개발 혜택 지원 등), 근무 및 휴식의 철저한 보장, 의료체계의 개선을 통한 의료권의 실질적인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언을 내놓았다.

위원회는 향후 전·의경 인권보호법의 제정, 전·의경 인권보호 전담기구의 설치, 전·의경 전문상담관제의 상설화, 전·의경 징계 영창제도의 폐지 여부, 전·의경 계급제의 폐지 여부,

경비전문 특기경찰의 신설 여부, 광역시 관할 지방청의 기동대와 전경대의 통합운영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14)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연구

위원회는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돌보는 아동복지시설이 인권 기준에 맞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실시하였다.

연구는 문헌 연구, 전국 70여 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아동복지시설 방문 실지조사 그리고 전문가 회의로 이루어졌다.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아동양육시설용 97항목,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용 85문항, 아동일시보호시설용 59문항, 아동보호치료시설용 91문항으로 구성된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가 개발되었다.

이번에 개발된 인권평가지표의 특징은 복지시설의 운영자나 실무자가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하여 아동에게 좀더 인간다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인권평가지표의 문항과 답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것과 위원회법상 조사대상인 아동복지시설의 유형별 특성에 맞게 개발되었다는 점이다.

개발된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는 시설아동의 인권에 대한 진지한 관심의 출발점으로서, 시설아동 인권의 내용에 관한 인식의 변화, 시설아동의 인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 구조를 촉구하는 정책변화, 시설아동의 인권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설 직원의 근무 여건 변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다.

(15) 진정직업자격 등 고용차별 판단기준에 관한 외국 판례 조사

위원회는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 고용 차별을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기본 개념이 되는 진정직업자격(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고용의 영역에서 해당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나 요건의 개념을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 ‘진정직업자격 등 고용차별 판단기준에 관한 외국 판례 조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실시하였다.

조사의 주된 연구내용은 미국, 캐나다, 영국과 호주의 진정직업자격 관련 법조항의 내용과 특징 분석, 각국의 주요 차별사유별 법원 판례 수집과 그 내용 및 의의 분석, 각국의 진정 직업자격 관련 법원 판례에서 공통적인 합의 도출, 외국사례 분석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는 것이었다.

이 조사에서 발견된 주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모든 나라에서 진정직업자격이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된다는 점이었다. 고용주는 문제의 진정직업자격이 없다면 해당 사업의 정상적 운영이나 해당 직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행이 위태로워진다는 점과 문제의 진정 직업자격이 해당 직무의 본질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고객의 선호나 사회적 통념 등은 진정직업자격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없었다.

이 조사는 외국의 진정직업자격 법령 및 법원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는데, 그중 하나는 차별사유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함을 감안하여 진정직업자격이 인정되는 차별사유를 법에 특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국의 진정직업자격 법리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에는 우리 법제 및 사회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16)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인권위는 군대 내 인권상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2005년 9월부터 약 3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육군훈련소 인분사건에 이어 전방부대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군대 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군대 내 인권상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다. 연구팀은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대대급 39개 부대의 장병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병사들의 인권상황에서는 통신의

자유,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일과 휴식의 권리, 사생활의 자유, 월급, 의식주 및 환경권, 의료권, 차별, 휴가제도, 권리의식, 소원수리 등의 항목으로 조사하였고, 장교의 인권상황에서는 장교 자신의 인권실태에 대한 의식과 장교들이 생각하는 병사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의식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이전의 조사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을 군기라고 생각하는 병사의 비율도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구타를 당하거나 목격해도 병사 대부분이 못 본 척하거나 참고 넘어가고 있으며, 구타 등을 당한 이후 탈영이나 자살을 생각한 경험도 20%에 이르는 등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폭력의 위험이 상당히 잔존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려를 거둘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 외에도 군대 내 인권상황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대 내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군인기본법의 제정 및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및 제도 확충 등 여러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17) 단전·단수 등으로 인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전기, 수도, 가스 단절로 인한 생존권 침해에 따른 진정 및 정책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위원회는 2005년 11월말부터 한 달간 단전·단수 등으로 인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전기, 수도, 가스 공급을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존권 침해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국가가 사회적 권리로 보장해야 할 최소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는 관련법 검토와 외국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최소공급량 및 공급금액을 설정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단전·단수 정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4. 북한인권 사업

(1) 추진 배경

2003년 4월 16일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이 상정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이 결의안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일부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 2005.4.21.

받았다. 국제사면위원회 등 국제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여러 번 제출했고, 국내에서는 북한인권 개선 및 탈북자 보호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특히 2004년과 2005년에는 유엔 인권위원회와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다시 상정·통과되었고, 미국에서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입국한 새터민의 정착 과정에서 인권 침해 및 차별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이런 가운데 위원회는 국회와 시민사회 일각으로부터 북한인권사업을 전개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북한인권 개선 및 새터민의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진정도 접수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탈북자를 포함한 북한인권 실태 및 국내외 동향 파악과 자료 수집 등을 시작으로 위원회의 북한인권연구사업을 시작하였다.

(2) 활동 사항

위원회는 북한인권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주로 북한의 인권상황,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 북한인권 개선방안, 위원회의 역할 등이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자유권, 사회권 등에 걸쳐 전반적으로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움을 인정하였다. 북한인권 관련 국

내외 동향에 대한 논의에서는 유엔과 국제비정부기구, 한국·중국·미국·일본 등 관련국의 북한인권 정책이 두루 언급되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함께 북한인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또 북한인권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어떤 인권이 우선이나(가령 생존권이 우선이나, 자유권이 우선이나), 북한인권을 한반도 평화나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지어 접근할 것이냐, 한국정부와 국제사회는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느냐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하나원에서 열린 새터민 간담회 2005.7.14.

북한인권과 관련한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국정부는 물론 북한과 국제사회를 향한 적극적인 역할,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연구조사와 한국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에 관한 자문, 북한인권을 다룰 자격과 근거가 없다는 의견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큰 의견들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간담회는 북한인권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북한인권 관련 기본입장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 이어 9월 하순부터 전원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 관련 기본입장 수립을 목표로 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북한인권 논의 자체의 민감성과 복잡성, 그리고 위원회가 북한인권을 다룰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둘러싼 문제 등으로 인해 논의는 2006년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4년 10월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미국의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미국 내 각계의 북한인권 동향 및 견해를 파악하고 미국 내 북한인권 관련 기관과 교류협력관계를 모색하고자 3명의 대표단이 5월 24~31일 미국을 방문하였다. 위원회 대표단은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태소위원회, 방위포럼재단(Defense Forum Foundation), 허드슨 연구소, 인권감시협회



(Human Rights Watch), 입법친우회(Friendship Committee on National Legislation) 등 정부, 의회, 비정부기구의 북한인권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 내 북한인권 관련 동향과 인권 개선 방안, 그리고 상호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또 2005년 11월 3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북한의 인권상황과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과 주요 동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북한인권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약자들의 인권을 중심으로 한 문제 중심의 접근(issue-based approach)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권상황 파악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북한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위원회는 또 새터민의 인권상황에 관심을 갖고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사업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새터민들 중 일부는 입국 직후 조사 과정에서 비인격적 대우, 거주지 생활 과정 중 직장에서 차별, 학교생활에서 따돌림, 사생활 침해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인권 상황과 국제협력 국제세미나 2005.11.3.

5. 청문회·토론회 운영

위원회는 2005년 한 해 동안 법령·정책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관련하여 4건의 청문회와 5건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같은 청문회와 토론회는 법령·정책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사회 여러 분야 관계자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위원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위원회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경우도 있다.

(1) 신원조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위원회는 신원조사제도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여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2005년 1월 18일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신원조사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청문회에서는 신원조사제도의 법률적 근거 및 실시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이후 전문가들이 신원조사의 위헌성과 외국의 신원조사 제도, 신원조사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배우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 임용이 취소된 피해자의 사례가 발표되었다.



신원조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2005.1.18.

위원회는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2005년 2월 14일 국회의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사대상자를 한정하고, 조사항목을 조정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표 2-1-3] 청문회 및 토론회 개최 현황

연번	방식	주 제	일 시	토 론 내 용
1	청문회	신원조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1. 18	· 신원조사 실시 근거와 현황 · 신원조사의 위헌 여부 · 외국의 신원조사제도 · 신원조사로 인한 피해사례 등
2	청문회	비정규 근로 관련 입법안에 대한 청문회	3. 16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3	청문회	난민의 인권보호를 정책개선 방안	7. 1	·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 및 국제법상 한국의 난민 보호의무 · 난민인정절차 ·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 문제 · 난민인정절차와 처우 개선에 대한 방안
4	청문회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10. 19	· 양심적 병역거부의 실태와 현황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연대회의의 입장 ·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관련 국방부의 입장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
5	토론회	주민등록번호제도 이대로 좋은가?	4. 6	· 개인식별 번호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고찰 · 정보화시대 주민등록번호의 의의와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갱신 타당성과 오남용 ·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6	토론회	학생 두발제한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 토론회	5. 13	· 학생인권 차원의 두발문제 · 학생, 교사, 교육부관계자,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함께 참가하는 토론
7	토론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정보열람 발급허용, 어떻게 볼 것인가?	6. 20	· 보험회사의 질병정보 이용의 사회적 위험성 ·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방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활용과 인권
8	토론회	한센인 인권보호 증진 방안을 위한 한·일 양국 토론회	7. 12	· 일본 내예방법 위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경위와 의의 · 일본 후생노동성의 협의성과와 한센병보상법, 한센병 진상규명을 위한 대처 · 한국의 한센인 현황, 실태 및 향후 과제
9	토론회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과 인권	10. 19	· 공공기관의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 사이버 인권침해의 해결책으로서의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 · 인터넷언론의 실명제에 대한 견해

(2) 비정규근로 관련 입법안에 관한 청문회



비정규근로 관련 입법안에 대한 청문회 2005.3.31.

위원회는 2005년 3월 16일 ‘비정규근로 관련 입법안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이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2004년 9월 10일 마련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하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의 관련 쟁점에 관하여 노동부,

경제단체 및 노동자단체의 견해와 함께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장체험 증언도 청취하고자 하였다.

청문회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고용의 안정과 시장의 유연성, 임금차별과 노동생산성의 관련성, 노동3권의 보장 정도, 사용사유제한과 기간제한의 장단점, 차별적 처우 금지의 규정 내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연공급의 상관관계, 파견 허용 업종의 제한방식,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규제방식, 파견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확보방안 등 다양하고 첨예한 쟁점에 대한 청문위원의 질문과 진술인의 답변이 이어졌고, 근로현장에서의 차별 사례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1인과 파견근로자 1인이 증언했다.

청문회를 통해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정부, 경제단체 및 노동자단체의 견해 차이를 좁히기는 어려웠지만, 위원회는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의 핵심 쟁점을 재확인하고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성숙시킬 수 있었다.

(3)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에 대한 청문회

위원회는 2005년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과제에 대하여 6월 중 난민문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후, 7월 14일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에 대한 청



문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1992년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년, 이하 난민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년)에 가입하였으나, 2001년에 1명을 난민으로 인정한 이후 아직까지 난민 인정 사례가 없다.

위원회는 유엔 및 국제사회의 난민인정 절차와 난민에 대한 사회적 처우가 난민협약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관심을 기울이며, 향후 난민 관련 법령과 정책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를 검토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청문회를 통해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난민보호에 대한 의무, 난민인정 절차에 있어서 이의신청기구, 면접 및 통역과정, 강제송환금지 원칙과 출입국관리법의 관계, 인도적 사유에 따른 체류허가 등의 문제와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로서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장복희 교수(가톨릭대), 법무부 출입국관리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서울사무소 대표, 황필규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후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난민인정자 2인과 난민인정을



청문회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2005. 7.14.

거부당하고 출국명령을 받은 자 1인의 증언을 통해 실제 난민신청자가 고국에서 경험하는 박해의 정도 및 난민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 겪는 어려움과 한국정부에 기대하는 점 등에 대한 구체적 의견도 들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청문회 및 전문가 간담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난민인권 개선에 관한 정책을 권고할 예정이다.

(4)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입장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 19일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를 개최해,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조회하고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하였다.

청문회는 조영황 인권위원장이 주재하고, 위원회의 정책위원회 소속 인권위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전원규 선병국장(병무청), 이석태 공동집행위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2005.10.19.

원장(연대회의), 최운 인사국장(국방부)으로부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홍영일 공동대표(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모임), 정창인 연구위원(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임태훈(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활동가), 조남현 대변인(자유시민연대), 이재승 교수(국민대 법대),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대) 등 진술인들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위원회는 이 청문회에서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5년 12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5) ‘주민등록번호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위원회는 2005년 4월 6일 주민등록번호제도와 관련하여 정부부처 담당자, 학계 및 인권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석하여 문제점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주민등록번호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제도 도입 당시부터 제기돼온 위헌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



토론회 '주민등록번호제도 이대로 좋은가?' 2005.4.6.

라도, 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출생, 혼인, 출산, 사망, 주소, 학력 등 141개 개인정보 사이의 연결고리 기능을 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누출되는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한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순차적으로 누출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민간부문의 경우에도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조사 결과, 조사대상 1,042명 중 26.6%의 응답자가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돼 회원가입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주민등록번호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주민등록번호 사용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과 폐지 후 대안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위원회는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의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6) 학생 두발제한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에 대한 토론회



토론회 '학생 두발제한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
2005.5.13.

위원회는 학생과 아동인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몇 가지 현안을 검토해 오던 중에 학생의 두발제한과 과도한 단속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 두발제한의 인권적 쟁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2005년 5월 13일 '학생 두발제한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 대부분은 학생의 두발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였으나, 보장의 범위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위원회는 토론회 결과 등을 토대로 2005년 6월 27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각 시·도 교육감에게 두발 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각급 학교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두발제한과 단속을 할 것, 강제단속을 지양하고 두발 관련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할 때 학생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7)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정보 열람·발급 허용,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

위원회는 2005년 6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정보 열람·발급 허용,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가입자 동의를 얻은 민간보험사에 대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진료내역 자료를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해옴에 따라 위원회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내역을



당사자가 아닌 민간영역에서 활용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 건강권 등 개인의 기본권과 밀접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다양한 여론 및 전문적 견해를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다.

토론회에는 규제개혁기획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 및 보험협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각계의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정보 열람·발급 허용의 인권적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2005년 8월 민간보험회사의 공단 진료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 중이던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 대하여 본 건이 국민 인권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큰 반면, 이와 관련한 객관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8) 한센인 인권보호 증진 방안을 위한 한·일 양국 토론회

위원회는 2005년 7월 12일 일본의 한센인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초청해 ‘한센인 인권보호 증진 방안을 위한 한·일 양국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일본의 한센인 관련 국가배상소송, 한센병 보상법, 한센병 문제의 진상규명에 대하여 도쿠다야스유키(徳田靖之) 변호사, 노마아키라(野間啓) 변호사, 아유쿄마치코(鮎京眞知子) 변

호사가 각각 발표하였고, 정근식 교수(서울대 사회학과)가 한국의 한센인 실태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박영립 변호사와 장완익 변호사가 토론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일본의 한센인 관련 국가배상소송과 보상법 제정과정, 그리고 이후의 변화된 상황과 한국의 한센인 현황과 실태 및 향후 과제를 점검해보고, 한센인의 인권보호 증진방안을 모색하였다.



한센인 인권보호 증진방안을 위한 한·일 양국 토론회
2005.7.12.

위원회는 향후 한센인 인권보호 증진방안에 대한 권고에 토론회 결과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9)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과 인권에 대한 토론회

위원회는 2005년 8월 19일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과 인권 토론회 2005.8.19.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게시판 등을 이용할 때에는 필명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상에서의 비방, 명예훼손, 인권침해 등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취지의 인터넷 실명제가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제한하며 실명확인에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게시판 운영자(ISP)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 및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한 전반적 재고의 필요성에는 동감하였으나 인터넷 실명제 형태의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일부 참석자들은 실명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며 개인의 명예 등 다른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을 역설하였고, 다른 참석자들은 실명제가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상당한 정도로 제한할 것이며 인터넷의 인권침해는 대부분 실명의 공간에서 벌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관계기관의 정책추진의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6. 각종 위원회·협의회와 연구포럼의 구성 및 운영

(1) 정책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외에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 제1항), 인권에 관한 법령·정책 등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소위원회로 ‘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원래 ‘제1소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었는데, 2005년 8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의 개정으로 정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정책위원회는 2005년 한 해 동안 위원장인 최영애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정인섭 위원, 최금숙 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활동했고, 총 20회 개최되어 의결안건 30건, 논의안건 18건, 보고안건 8건 등 총 5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정책위원회는 전원 출석과 전원 찬성으로 인권 관련 법령·정책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전원위원회의 논의 없이 직접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바, 이에 따라 정책위원회는 2005년의 인권 관련 법령·정책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중 10건을 직접 의결하였다.

(2)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2항), 2004년 9월 15일 이러한 협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명위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

장급 이상) 63명 및 민간 위촉위원 35명으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2005년 6월 23일부터 이틀간 제1차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인권NAP의 개요, 인권NAP 권고안 작성 추진 현황 및 그 이행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이후 교육분야(2005년 7월 27일), 법무분야(2005년 9월 5일), 군대인권분야(2005년 9월 15일), 노동분야(2005년 10월 20일 27일) 총 5회에 걸쳐 사안별 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3)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1차 회의 2005.12.13.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는데(「국가인권위원회법」 제15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은 이러한 자문기구로 정책자문위원회와 실무자문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2005년 11월 1일 사회 원로급 18명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1기 정책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정책자문위원회는 2005년 12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은희 전 여성부장관을 자문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같은 달 22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2005년 말에 활동을 시작한 정책자문위원회는 향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위원회의 주요 현안과제 등에 대해 자문위원의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활발한 자문을 수행하여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국제인권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2005년 7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 제3항). 이에 따라 정책위원회는 국제인권 분야의 전문가 및 활동가 5명을 국제인권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국제인권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국제인권전문위원회는 2005년 12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2005년 말 직제 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제인권팀의 사업계획 작성 후 제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5) '사회권 포럼'의 발족 및 운영

위원회는 2005년 10월 26일 사회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권 포럼'(회장 정강자 상임위원)을 발족하고 제1차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사회권 포럼은 9명의 외부 운영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매월 사회권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정기적인 발표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사회권 포럼은 2005년 10월 26일 '사회권과 국가의 의무'를 시작으로 '헌법과 사회권', '국제사회가 보는 한국 사회권의 현실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3차에 걸쳐 사회권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의 발표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개별적인 사회권 관련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사회권 포럼은 위원회 내·외부의 사회권 관련 자료의 축적 및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 인권논문 공모

위원회는 2002년부터 인권지식기반 확충과 인권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인권문제 초기 연구자(대학생, 대학원생), 인권시민단체 관련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인권논문공모사업을 벌이고 있다. 위원회는 2005년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군대와 인권, 여성과 인권, 외국인과 인권, 장애인과 인권이라는 네가지 주제로 인권논문을 공모하였고, 접수한

2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인권 지향성, 주제의 독창성, 논리적 일관성, 연구방법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심사한 끝에 3편의 우수상과 4편의 가작을 선정하였다.

위원회는 2005년 12월 10일 우수상에 선정된 <경합하는 가치로서의 ‘국가안보’와 ‘개인의 안전’> (정유진, 오사카대학교 문학연구과 석사과정), <국제인권법 중심의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 논의에 대한 고찰> (오시진, 고려대학교 법학과), <중국 내 탈북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와 강제송환> (이해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 대하여 상패와 상금 각 200만원씩을, 가작에 선정된 <여성인권의 실현과 법적 규제> (홍성수, 영국 런던정경대(LSE) 대학원), <이주노동자들의 언어인권에 대한 생태론적 고찰> (박휴용,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대학원), <이주노동자협약 가입을 위한 정책 제언> (박미경, 한양대학교 대학원), <해외 입양인의 인권 보호> (박희정, 건국대학교 법학과)에 대하여 상패와 상금 각 100만원씩을 시상하였다.

제 3절 평 가

2005년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사형제도,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법률·정책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였다. 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에 노력한다는 제2기 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맞추어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의견을 표명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벌였다.

또한 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와 국제인권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위원회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인권NAP 권고안의 이행을 지원함과 아울러 인권 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권 포럼을 발족·운영하여 사회권 관련 자료의 축적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일부 주요 인권정책 현안의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시의성을 상실한 경우도 있었으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권정책 과제에 비중이 적었고, 법령·정책 등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006년에는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새롭게 선포할 비전과 미션, 그리고 이를 구체화할 5대 목표에 따라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편된 팀 중심의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정책분야의 행동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와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 고자 한다.

제 2 장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처리

제1절 개 요

위원회는 위원회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와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진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한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상담과 진정 접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면·전화·인터넷·서면 등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거주지 자유가 제한되는 구금 시설 수용자들을 꾸준히 방문하여 인권에 관한 상담과 진정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05년 32,351건이라는 상담과 진정을 접수·처리하였으며 국민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으면서 평생 그들과 소외 속에 살아온 한센인들과 그 가족들을 찾아가 인권순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위원회는 대표적인 한센인 거주지인 소록도와 칠곡 농원을 찾아가 현장 인권상담 센터 운영, 지역공동체 토론회 실시, ‘청소년과 함께하는 인권현장’ 프로그램과 한센인 인권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찾아가는 상



담과 진정 접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권순회 상담용 버스를 구입하였고 아울러 질 높은 인권서비스 제공의 견인차라 할 수 있는 인권전문상담원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였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지역순회 인권상담센터 운영

2005년에는 한센인 집단촌이 있는 소록도와 칠곡지역을 방문하여 상담 및 진정을 접수하고, 한센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토론회 개최, 한센인과 비한센인이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식사, 청소년과 함께하는 인권현장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다.

현장 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총 216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이 중 125건을 진정으로 접수하였다. 소록도의 경우, 상담부스 운영과 함께 방문상담을 동시에 실시하여 몸이 불편한



한센인의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였으며, 공감하는 상담으로 내담자들의 해원(解冤)은 물론 상담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칠곡지역에서는 위원회 상임위원이 직접 상담에 참여하는 등 위원회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애썼다.

지역공동체 토론회로 말미암아 해당 지역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내의 주요인사 및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센인 문제 및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지역별 100여 명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한센인 문제를 직접 듣고, 대안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참가자들이 한센인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는, 자연스러운



교육의 장이 되었다. 그리고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대안을 지역 내에서 실행하여 지역 내 한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타의에 의해 세대간 단절을 경험한 한센인들은 「청소년과 함께하는 인권현장 프로그램」 참가 청소년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통해 심리적 위로와 치유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었으며, 한센인들과 직접 접촉하고 함께 활동한 청소년들에게는 인권친화적 감수성을 계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

위원회는 2001년 출범 이래 9만여 건의 인권상담과 진정 및 안내를 처리하면서 국민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관의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 구제에 대한 선례를 집적하였다. 그러나 위원회의 역할과 임무, 권한에 대해 국민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못해 위원회의 권리구제 기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독립기관인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분명히 밝히고 위원회법 및 위원회에 대한 공무원 및 공공영역 종사자들의 이해를 높이며 일반 국민에게는 위원회법에 따라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원들에게는 법 적용의 범례 및 기준을 제시하여 법 운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을 발간하였다

위원회법 해설집은 정인섭 교수, 김엘림 교수, 정연순 변호사를 책임집필자로 해서 11명의 법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해설집에는 위원회법 조문별로 지난 4년간 위원회의 운영 실제, 결정 선례, 헌법재판소 및 국내 법원의 관련 판례, 정부 내 다른 기관과의 비교, 그간 국회에 제안한 법률안의 내용, 외국 및 국제기관의 사례 비교, 국내외 학자들의 이론적 주장이 망라돼 있다.

3. 면전진정 접수

면전진정은 위원회법 제31조에 따라 시설 수용자가 위원회 위원이나 소속 직원과 만나 직접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이나 소속 직원이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는 제도로서, 시설 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지금까지 면전진정을 신청한 기관은 구금시설이 대부분이며, 2004년을 기점으로 면전진정 신청건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금시설의 경우 면전진정 제도가 수용자들에게 충분히 인지되어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신보건시설, 장애인 시설 등을 포함하는 다수인 보호시설에서는 면전진정을 거의 신청하지 않고 있다. 이는 면전진정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시설 관계자들의 무관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앞으로 위원회는 다수인 보호시설의 면전진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할 계획이다.

[표 2-2-1] 연도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건(월평균))

구분	2001~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 계
신청	1,243 (89)	2,615 (218)	3,514 (293)	3,383(282)	10,755 (215)
처리	1,104 (79)	2,600 (217)	3,385 (282)	3,459(288)	10,548 (209)

※처리 = 진정 + 상담종결 + 철회

4. 진정접수

2005년에는 총 5,617건의 진정사건이 접수되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1,249건 (36.3%)이 증가한 수치다. 이는 사형제 폐지 권고, 비정규직 관련 권고 등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위원회가 권리구제기관으로서 국민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아진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경로에 따른 진정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인터넷 진정건수가 1,397건



(24.9%)으로 2004년과 비교해 305%나 증가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진정접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2-2] 경로별 진정접수 현황

(단위: 건(%))

연도 \ 경로	방 문	면 전	전 화	우 편 팩 스	인터넷	계
2001.11~12	247(30.8)	5(0.6)	203(25.3)	310(38.6)	38(4.7)	803(100.0)
2002	445(15.9)	553(19.8)	177(6.3)	1,442(51.7)	173(6.3)	2,790(100.0)
2003	555(14.5)	1,129(29.6)	76(2.1)	1,760(46.1)	295(7.7)	3,815(100.0)
2004	1,670(31.1)	1,274(23.7)	122(2.3)	1,844(34.4)	458(8.5)	5,368(100.0)
2005	732(13.0)	1,168(20.8)	157(2.8)	2,163(38.5)	1,397(24.9)	5,617(100.0)
총 계	3,649(19.8)	4,129(22.5)	735(4.0)	7,519(40.9)	2,361(12.8)	18,393(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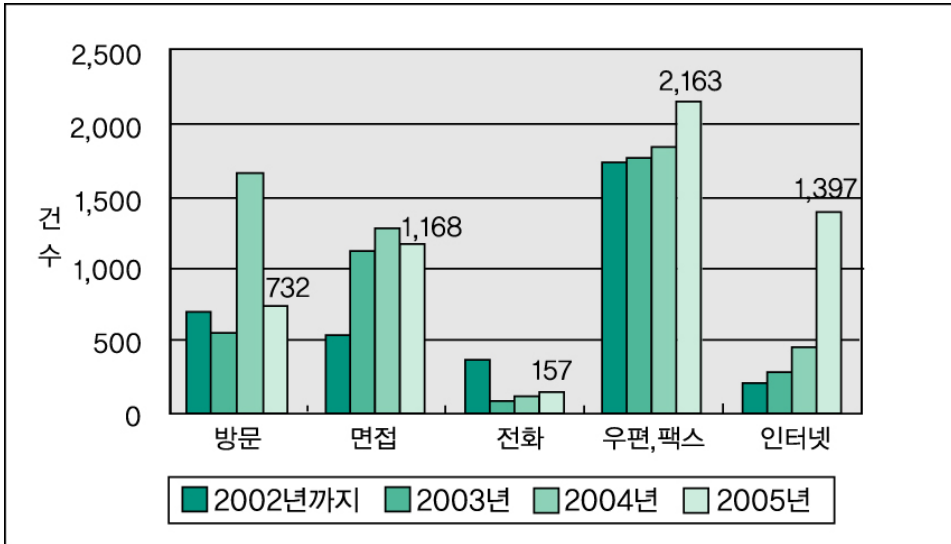
[표 2-2-3] 연도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연도 \ 구분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 타	계
2001	619(77.1)	53(6.6)	131(16.3)	803(100.0)
2002	2,214(79.4)	136(4.8)	440(15.8)	2,790(100.0)
2003	3,041(79.7)	358(9.4)	416(10.9)	3,815(100.0)
2004	4,627(86.2)	389(7.2)	352(6.6)	5,368(100.0)
2005	4,199(74.8)	1,081(19.2)	337(6.0)	5,617(100.0)
총 계	14,700	2,017	1,676	18,393

2005년에 접수된 진정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권침해 사건에 비해 차별사건이 대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통계는 차별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감수성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간 위원회가 차별문제를 꾸준히 홍보하고 여성가족부의 남녀차별 시정업무가 위원회로 이관, 차별 시정업무의 일원화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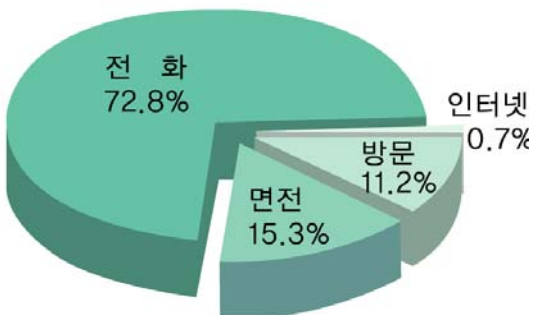
[그래프 2-2-1] 경로별 진정접수 연도별 현황



5. 인권상담

(1) 상담 현황

[그래프 2-2-2] 경로별 상담 현황



인권상담센터는 위원회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각종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는 부서다. 지난해 위원회는 9,136건의 상담을 실시하였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5.1% 증가한 수치로서 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상담 경로별 상담실시 통계를 살펴보면 상담 건수의 72.8%를 전화상담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화가 다른 수단에 비해 개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으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전화상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실의 설비 및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고, 상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표 2-2-4] 경로별 상담 현황

(단위: 건(%))

연도 \ 구분	방 문	면 전	전 화	인터넷	계
2004	856(14.1)	1,346(22.2)	3,798(62.7)	57(1.0)	6,057(100.0)
2005	1,021(11.2)	1,398(15.3)	6,652(72.8%)	65(0.7%)	9,136(100.0)
총 누계 (2001~2005)	3,356(14.3)	3,927(16.7)	16,052(68.5)	128(0.5)	23,463(100.0)

(2) 인권침해 상담

상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문의에서 구체적인 인권침해에 관한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 중에서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내용을 분석해보면 수사기관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수사과 관련한 상담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다수인 보호시설에 강제로 수용되었다는 내용도 크게 증가하였다. 검찰, 경찰의 수사방식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때까지 이런 상담은 앞으로도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정신보건시설 수용자의 인권침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2-5] 인권침해 내용별 상담 현황

(단위: 건(%))

유 형 연 도		2004년	2005년
총 계		2,160 (100.0)	3,205 (100.0)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특별사법경찰관리, 군검찰, 군헌병, 국군기무사령부	소 계	1,124(52.0)	1,472(45.9)
	불심검문, 부당압수·수색·검열·도감청, 과잉진압	69	100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총기, 장구 사용	213	257
	과도한 신체검사 등 인격권 침해	162	180
	편파, 불공정 수사	301	449
	불법 체포, 임의동행, 부당감금	82	72
	함정수사, 부당·강압 증거확보	20	35
	피의자 권리 미고지, 가족에 미통지	22	31
	접견·교통권 제한	2	3
	알 권리 침해	21	17
	공소권 남용	32	20
	전과기록 미삭제	4	4
	부당한 사건분류	8	7
	피의사실 유포	12	15
	의료권 방해·제한	24	25
	사회적 약자,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17	22
	기타	135	235
기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 계	636(29.5)	1,030(32.2)
	위법, 부당한 처분	144	260
	부작위 등 소극적 처분	137	221
	폭행, 가혹행위	23	51
	인격권 침해	95	133
	사생활 비밀 침해	55	113
	알 권리 침해	11	19
	공무원 부당 처우	25	37
	행정, 제도개선	55	37
	출입국 제한	36	23
	기타	55	136



유 형		연 도	2004년	2005년
구금·보호시설 (군 구금시설 포함)	소 계		128(5.9)	196(6.1)
	의료조치 미흡		41	46
	권리구제절차 제한		5	10
	서신 집필 제한		2	10
	부당한 조사, 징벌		6	10
	폭행, 가혹행위		23	38
	부당처우		30	40
	기타		21	42
다수인 보호시설	소 계		176(8.1)	347(10.8)
	강제수용		60	138
	폭행, 가혹행위		49	80
	외부교통권 제한		17	17
	의료조치 미흡		13	22
	강제노동		5	4
	인격권 침해		8	23
	시설, 환경문제		8	23
	기타		16	40
군사기관 (군 수사기관, 군 구금시설 제외)	소 계		96(4.5)	160(5.0)
	생명권 침해		12	9
	폭행, 가혹행위		23	49
	인격권 침해		7	7
	근무환경(의료조치 미흡 등)		6	32
	불합리한 행정제도		21	31
	기타		27	32

(3) 차별행위 상담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하소연하는 상담도 꾸준히 이어졌다. 장애, 성별 등 갖가지 사유로 차별을 당한 아픔을 토로하고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는 상담이 많았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 국가가 되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우리 사회의 의식과 관행에 여전히 깊이 내재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차별시정 정책 수립 및 집행이 요청된다.

[표 2-2-6] 차별행위 사유별 상담 현황

(단위:건(%))

행위주체 차별사유	국가기관(%)		법인/단체/사인(%)		교육기관(%)		기타(%)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2005년
	226(100.0)	293(100.0)	166(100.0)	518(100.0)	56(100.0)	86(100.0)	24(100)
장애	17(7.5)	27(9.2)	22(13.3)	53(10.3)	7(12.5)	7(8.1)	1(4.2)
사회적 신분	42(18.6)	65(22.1)	40(24.1)	71(13.7)	17(30.4)	21(24.4)	2(8.3)
출신국가	6(2.7)	10(3.4)	6(3.6)	10(1.9)	2(3.4)	1(1.2)	-
병력	4(1.8)	3(1.0)	13(7.8)	27(5.2)	-	1(1.2)	-
성별	8(3.5)	16(5.5)	11(6.6)	48(9.3)	6(10.7)	9(10.4)	1(4.2)
나이	22(9.7)	30(10.2)	22(13.3)	39(7.5)	2(3.6)	5(5.8)	1(4.2)
출신지역	6(2.7)	8(2.7)	1(0.6)	11(2.1)	-	-	-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12(5.3)	17(5.8)	6(3.6)	11(2.1)	1(1.8)	1(1.2)	1(4.2)
용모 등 신체적 조건	4(1.8)	9(3.1)	5(3.0)	12(2.3)	1(1.8)	4(4.7)	-
혼인 여부	1(0.4)	2(0.7)	3(1.8)	6(1.2)	1(1.8)	1(1.2)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2(0.9)	2(0.7)	2(1.2)	3(0.6)	2(3.6)	1(1.2)	-
종 교	-	2(0.7)	3(1.8)	3(0.6)	2(3.6)	5(5.8)	-
가족상황	5(2.2)	5(1.7)	4(2.4)	3(0.6)	2(2.6)	2(2.3)	-
성적 지향	-	-	3(1.8)	1(0.2)	-	-	-
출신민족	-	-	1(0.6)	-	-	-	-
임신 또는 출산 여부	2(0.9)	2(0.7)	3(1.8)	10(1.9)	-	2(2.3)	-
인종	-	-	-	-	-	-	-
피부색	-	-	-	-	-	-	-
학력, 학벌	2(0.9)	16(5.5)	3(1.8)	8(1.5)	4(7.1)	7(8.1)	-
성희롱	-	11(3.8)	-	145(28.0)	-	8(9.3)	16(66.6)
기타	93(41.1)	68(23.2)	18(10.9)	57(11.0)	9(16.1)	11(12.8)	2(8.3)



6. 안내 및 민원처리

위원회는 진정으로 접수되지 않더라도 민원인의 권익을 위하여 안내 및 민원업무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조사대상이나 진정접수 절차 등 단순한 안내 외에도 위원회가 권고한 각종 인권정책 등에 대한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처리한 안내 건수는 17,598건으로서 위원회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원회는 대국민 친절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표 2-2-7] 경로별 안내 및 민원 현황

(단위:건(%))

구 분	방 문	전 화	우편/팩스	인 터 넷	계
2001.11~12	129(7.0)	1,713(92.5)	10(0.5)	-	1,852(100.0)
2002	686(9.1)	6,357(84.1)	299(4.0)	216(2.8)	7,558(100.0)
2003	592(5.7)	7,930(76.7)	621(6.0)	1,197(11.6)	10,340(100.0)
2004	481(3.6)	7,971(64.2)	1,030(8.5)	2,943(23.7)	12,425(100.0)
2005	617(3.5)	9,471(53.7)	1,645(9.3)	5,865(33.3)	17,598(100.0)
누계	2,505(5)	33,442(67.3)	3,605(7.2)	10,221(20.5)	49,773(100.0)

제3절 평 가

2005년 위원회가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인권상담과 진정접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점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수인 보호시설 수용자 등의 진정 접수가 미미했던 점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위원회의 진정접수 현황을 경로별로 살펴보면 방문이 732건, 전화가 157건, 우편/팩스가 2,163건, 인터넷이 1,397건, 면전이 1,168건으로 전년에 비해서 10.4%가 증가했다.

이를 통해 양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한 대국민 인권상담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오랫동안 편견에 시달리며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살아온 한센인들을 방문하여, 상담과 진정 서비스를 포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한센인들의 인권 현 주소를 조명하고 공론화하여 국가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인권보호와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 도서·벽지주민,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인권에 취약한 계층을 찾아가 적극적인 상담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순회상담용 버스를 구입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법의 취지, 목적, 관련 판례 등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을 발간하여 일반 국민이 인권위원회의 상담과 진정 서비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정신보건 시설, 장애인 시설, 노인복지 시설 등의 면전진정 건수가 미미하였던 점, 위원회의 주요 업무인 인권상담을 사무보조원 신분의 인권전문상담원들이 수행하여 대외적인 공신력과 책임성 확보에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점 등은 다소 미흡한 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원회는 향후 이런 평가를 기초로 미흡한 점은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보완하고, 국민의 처지에서 더욱 신선하고 편리한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업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제 3 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제1절 개 요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수행하며,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피해자 등은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접수한 사건을 조사한 후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은 각하 또는 기각하고, 인권침해 행위로 인정되는 사안은 재발방지 및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2005년 위원회는 사안의 복잡성 및 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사건 처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전년도의 진정사건 처리 시스템 재정비를 통한 진정사건 처리 효율성 제고를 바탕으로 인권침해사건 처리 및 권리구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전년도 대비 사건 인용률이 70% 이상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위원회의 조사 구제 활동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됨에 따라 조사 초기단계인 사건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사 중에 분쟁의 쟁점 및 분쟁 당사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정하려 했다. 이를 통해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더 짧은 시간에 보다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사건의 조사 및 구제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인권 사안 및 유사 반복 진정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법적·제도적 권고를 이끌어냄으로써

위원회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확대하고, 동시에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2005년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표2-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199건이 접수되어 전년도에 비해 428건(9.3%)이 감소하였다. 진정 접수는 2004년 말까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다 2005년에는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종결한 사건 수는 4,117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754건(15.3%)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진정 처리 및 구제방법의 질적 향상에 따른 양적 처리실적의 둔화로 해석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유형별 현황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5년에 위원회가 조사, 구제한 인권침해 사건은 총 4,117건으로 2005년에 비해 1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2-3-2]와 같이 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고발 및 수사의뢰 6건, 법률구조 요청 2건, 징계권고 6건, 긴급구제 1건, 권고 156건, 합의종결 73건 등 인용처리 건수가 모두 244건이고, 그 밖에 기각 1,317건, 각하 2,362건, 이송 147건, 조사 중지 47건이다. 이는 2004년에 비해 인용 건수는 99건(68.35%)이 증가하고, 각하 건수는 944건(28.5%)이 감소한 것으로





비록 위원회의 양적인 권리구제 성과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지만, 인용사건 등을 통한 질적인 권리구제 성과는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3-1] 인권침해사건 처리유형별 현황

(단위:건)

구 분	접수	종결	인 용						기각 이하				조사중
			고발, 수사 의뢰	법률 구조 요청	징계 권고	긴급 구제	권고	합의 종결	기각	이송	각하	조사 중지	
2002년 이전	2,833	1,365	3	-	16	2	8	-	136	26	1,174	-	18
2003년	3,041	3,137	9	-	3	2	57	23	717	116	2,210	-	9
2004년	4,627	4,931	6	4	2	-	79	54	1,280	148	3,306	52	22
2005년	4,199	4,117	6	2	6	1	156	73	1,317	147	2,362	47	1,101
총 계	14,700	13,550	24	6	27	5	300	150	3,450	437	9,052	99	1,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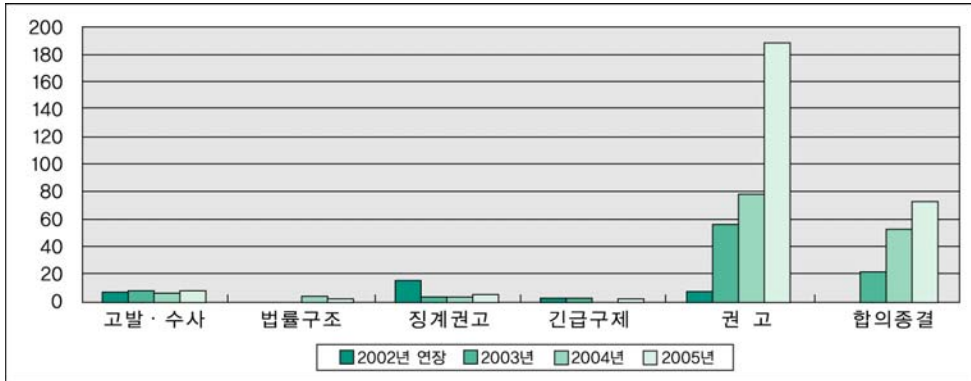
※ 종결건수 : 당해년도 접수 중 종결사건 + 이월사건 중 종결건수

[표 2-3-1]에서 보는 것처럼, 2005년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활동의 주요한 특징은 권고 및 합의종결을 통한 권리구제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권고는 진정사건의 피해자인 진정인 당사자에 대한 권리구제 효과뿐만 아니라 법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유사한 인권 침해를 당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효과가 있다. 또 앞으로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예방효과도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권리구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합의종결이란 조사과정에서 위원회의 개입 또는 주도로 진정사건의 당사자들이 갈등을 신속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위원회 권리구제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한다.

합의종결은 단순 폭언 또는 반말, 불친절, 사소한 업무상의 실수 등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되었다.

[그래프 2-3-1] 인권침해사건 처리(인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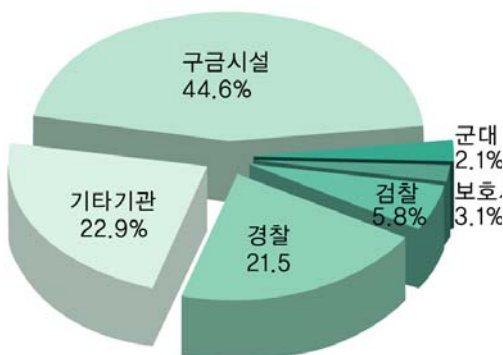
(단위: 건)



2005년 각하사건 2,362건은 진정 취하가 1,539건으로 65.2%, 다른 기관의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또는 종결된 경우는 274건으로 11.6%,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174건으로 7.4%, 위원회 조사 시효를 경과한 경우가 136건으로 5.8%를 차지하고 있다. 인권 침해 분야 진정사건의 대상 기관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표2-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금 시설 관련이 6,552건으로 전체의 4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국가기관이 3,373건으로

22.9%, 경찰이 3,166건으로 21.5%를, 군대와 보호시설이 각각 307건, 451건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프 2-3-2] 종결사건의 기관별 현황



2005년 한 해에도 인분사건 등으로 군대 내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실제 진정접수는 전체의 2.1%에 그쳐 군대 내 인권침해 구제 및 개선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3-2] 대상 기관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접 수	종 결	인 용							기 각 이 하				조사중
			수사 의뢰	고발, 징계 권고	긴급 구제	합의 권고	법률 구조	권고	합의 종결	기각	이송	각하	조사 중지	
검찰	851	786	2	-	2	-	-	15	1	163	10	589	4	65
경찰	3,166	2,841	6	24	2	-	1	70	97	799	51	1,767	24	325
기타기관	3,373	3,129	-	7	1	3	-	74	28	448	10	2,553	5	244
구금시설	6,552	6,165	1	3	-	1	5	103	15	1,876	363	3,740	58	387
보호시설	451	367	-	6	-	-	-	30	7	134	3	180	7	84
군대	307	262	2	-	-	1	-	3	2	30	-	223	1	45
총계	14,700	13,550	11	40	5	5	6	295	150	3,450	437	9,052	99	1,150

(2) 인권침해 진정사건 주요 조치 현황

위원회가 처리한 인권침해 분야 진정사건 중 고발, 수사개시 의뢰, 권고, 합의권고 등 인용 사건의 대상 기관별 주요 조치 현황은 [표 2-3-3]과 같다.

[표 2-3-3] 대상 기관별 주요 조치 현황

□ 검 찰

조치	사건명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징계권고	구속사실 미통지	유사한 사례 재발방지 위해 OO지청장에게 주의조치하고, 수사담당 직원 교양할 것을 권고	12.12	검토 중
권고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않은 지명수배	검찰청장에게 과잉 지명수배를 행한 피진정인들에 대한 주의조치 권고	1.10	수용
권고	고소사건 처리결과 미고지	고소인에게 고소사건 처분결과 고지를 소홀히 한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조치 권고	1.10	수용
권고	인격권 침해	조사과정에서 욕설 및 반말을 한 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 실시 권고	1.24	수용
권고	알 권리 침해	검찰청장에게 고소·고발 사건의 처분결과 통지서가 반송될 경우 반송된 통지서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아무 조치 없이 보관하고 있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	9.15	검토 중
권고	OO검찰청 방호원의 신체의 자유 침해	검사실 임의출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야기된 진정사안과 관련, 해당 검사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 조치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방호원과 청원경찰 등을 상대로 자체 인권교육 실시 권고	2.14	검토 중
권고	OO지검 특수부 수사관의 적법절차 위반	진정인이 임의 제출한 자료를 23일간 보관하면서 관련 규정에 의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작성 및 교부 등의 적법절차를 취하지 않은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하고 자체 인권교육 권고	6.21	검토 중
권고	결혼비자발급 불허에 따른 인권침해	법무부장관에게 현재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란 국적의 피해자가 이란으로 출국하여 결혼비자 발급을 신청하는 대신 사증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권고	8.31	검토 중



□ 경 찰

조 치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 결 일 자	이 행 현 황
고발	OO경찰서의 가혹 행위에 따른 인권침해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자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수사개시 의뢰하고, 단순가담자 및 지휘자에 대해 OO경찰청장에게 서면 경고할 것을 권고	1.24	수용
법률 구조	가혹행위	진정인이 기동중대 복무 중 당한 구타 및 가혹행위의 후유증으로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한변협에 법률구조 요청	10.10	검토 중
징계 권고	경찰서 폭행 등 가혹 행위	폭행 등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진정인에 대한 징계 및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1.10	대체 방안 수용
징계 권고	미성년피의자 조사와 관련한 인권침해	경찰청장에게 미성년 피의자 조사 시 주의 의무 환기시킬 것을 권고, 피진정인들에게 징계 및 주의조치 권고	11.28	수용
권고	교통사고 초동수사시 부당조치	1. 피진정인들에 대한 경고조치 권고 2.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1.10	수용
권고	유치장 수용자 처우 관련	유치인들에게 침구류 등 기초적인 생활용품을 적절히 지급할 것을 권고	1.10	수용
권고	적법절차 위반	적법절차 위반행위와 관련, 인권위 직원이 실시하는 인권교육 수강 권고	1.24	수용
권고	인격권 침해	유치장 내에서 반말 및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하도록 권고	1.24	검토 중
권고	체포사실 미통지	긴급체포 후 체포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피진정인을 경고토록 권고	1.24	수용
권고	순경채용 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한 알 권리 침해	경찰청장에게 순경채용시험 필기성적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관계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1.24	검토 중
권고	부안 핵폐기장 관련 인권침해	부안 방폐장 건설과 관련, 경찰의 집회 및 시위 등에 원천 봉쇄, 과잉진압, 강경대응, 불법연행, 집단구타 등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1. 행자부장관에게 경찰청에 대하여 경고조치 권고 2.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및 전북지방경찰청에 대하여 엄중 경고 조치 권고 3. 전북지방경찰청장에게는 폭력시위 미가담 피해자에 대한 치 료비 등 손해배상 권고	2.14	검토 중

조치	사건명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폭행 등 인권침해	강도 살인 등 피의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욕설·폭언 및 폭행·협박, 야간조사 등에 대해 당해사건 수사실무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한 경고 조치 권고	2.28	수용
권고	OO경찰서 알 권리 침해	개괄적인 이유를 들어 수사기록 전체에 대해 비공개 결정한 것은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해당 수사기록 중 진정인 제출서류 및 진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등은 공개(열람·등사)할 것을 권고	3.14	수용
권고	적법절차 위반	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 집행 시 피의자로부터 구속영장의 제시 여부 및 변호인선임권 등 구속에 따른 제 권리 고지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할 것을 권고	5. 9	검토 중
권고	적법절차 위반	피해자를 절도혐의로 조사하면서 이에 대해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부모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권고	6.21	수용
권고	직무유기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	보호시설 원장의 불법 감금, 폭행 등을 피하여 수용시설을 탈출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피진정인에게 권고	6.21	수용
권고	경찰서의 사생활의 비밀 등 침해	피해자를 차량 내부 거치대에 시감하여 호송하는 모습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권고	6.21	검토 중
권고	경찰관들의 인격권 침해	피해자가 경찰서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밀면서 욕설한 것에 대해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 및 자체 인권교육 권고	6.21	검토 중
권고	지명통보 해제와 관련한 인권침해	피의자가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에는 즉시 지명통보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진정인에 대한 조사 실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피진정인에 대하여 서면경고조치 및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7.25	검토 중
권고	수갑 조이기 등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8.16	수용
권고	경찰서 유치장 내 가혹행위 등	유치장에 수감된 피해자들의 소란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 필요 이상의 유형력을 사용한 데에 대해 피진정인에게 경고 및 주의조치 권고	9.15	수용
권고	경찰관의 인격권 침해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 권고	9.15	검토 중
권고	경찰관의 인격권 침해	진정인에 대해 불친절하게 처우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 권고	9.15	검토 중



조치	사건명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접견권 침해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36조 및 제37조 제3항의 규정을 행형법 시행령 제58조에 부합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	9.15	검토 중
권고	임의제출물의 압수 등 적법절차 위반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압수 절차 또는 임의제출 절차 없이 압수하고 반환하지 않은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할 것을 권고	9.15	검토 중
권고	미성년자 조사 시 적법절차 위반	미성년자 조사 시 적법절차(부모 입회) 위반에 대해 피진정인에 경고할 것을 권고	9.15	검토 중
권고	부당징벌	1. 경찰청장에게 대용감방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 행형 관련 법령에 맞도록 수용자 징벌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고, 일선 대용감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 해당 경찰서장에게 「유치인 징벌위원회 운영규정」을 행형 관련 법령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	9.15	검토 중
권고	부당한 출석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퇴근시간에 임박하여 진정인을 찾아가 갑자기 출석을 종용하면서 수갑을 꺼내 보이는 등 공포심을 유발한 것에 대해 피진정인에게 경고조치하고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10.10	검토 중
권고	시설과 관련한 인권침해	진정인이 불교교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10.10	검토 중
권고	현행법 체포 시 적법절차 위반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10.24	검토 중
권고	욕설로 인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에 대하여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10.24	검토 중
권고	욕설 등에 의한 인권 침해	조사과정에서 반말과 욕설을 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10.24	검토 중
권고	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유사행위 재발방지 권고	11.28	검토 중
권고	위법 수사	탐색조사를 한 피진정인에게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11.28	검토 중
권고	임의동행 시 적법절차 위반 등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미준수한 피진정인에게 경고	11.28	검토 중
권고	경찰의 인권침해	유사 사례 방지 권고	11.28	검토 중

□ 구금시설

조치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 결 일 자	이 행 현 황
법률 구조	교도소의 의료조치 미흡	피해자가 감기, 몸살, 기침 등을 지속적으로 앓고 있었고 이러한 증상을 수차례 호소하였음에도 의료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폐결핵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 법률 구조 요청	6.21	수용
권고	의료 관련 인권침해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단식 등 비상시의 의료지원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대한변협에 법률 구조 요청	1.24	검토 중
권고	부당처우	판결문에 ‘양은이파를 추종하는 자인 바’ 로 기재된 점을 이유로 조직폭력사범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진정인에 대한 조직폭력사범 지정을 즉시 해제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교도소장을 경고 조치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권고	1.24	수용
권고	조폭사범 임의지정 으로 인한 인권침해	해당 교도소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조직폭력사범 지정을 해제토록 권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단기적으로 「조직폭력사범 수용관리 지침」 제2조의 적용범위를 범죄단체구성죄 등에 엄격히 한정하고, 15조 및 제24조를 「수용자처우분류규칙」 과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개정하며 장기적으로는 동 지침을 폐지하여 행형법에 조직 폭력사범 특별수용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	2.14 제2소위	피해자에 대하여 조직폭력 사범에서 미해제, 나머지 대부분 수용
권고	부당조사	향후 징벌의결기간을 이유로 조사수용기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지 권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미결수용자가 관복을 입고 출정하는 경우에도 운동화, 구두 또는 고무신 등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권고	2.14	수용
권고	휴무일 실외운동 미 실시 및 접견권 제한 관련	1. 법무부장관에게 전국 교정시설에서 휴무토요일에 실외운동 및 접견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인력재배치, 교대근무제 개선, 교도관 인력증원,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 2.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휴무토요일 실외 운동 및 접견 실시에 필요한 교도관 인력 증원 협의 및 소요예산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	2.28	검토 중
권고	부당신체검사에 의한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 주의조치 권고	3.14	수용
권고	직권남용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주의조치 권고	5.9	검토 중



조치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 결 일 자	이 행 현 황
권고	교도관의 적법절차 위반	수용자들에 대하여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 혼계한 피진정인에게 인권교육 실시 권고	6.21	검토 중
권고	부당한 계구 사용	「계구의 제식 및 사용절차에 관한 규칙」 중 금속수갑을 뒤로 착용하는 경우 최장 사용시간을 규정하고, 특히 야간에는 사용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계구를 사용토록 규정할 것을 권고	6.27	검토 중
권고	인격권 침해	권한 없는 직원이나 수형자들이 수용자 거실 이름표를 볼 수 없도록 거실 이름표에 적절한 장치를 설치할 것과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6.27	검토 중
권고	부당처우	보호조치와 같은 침해적 행정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보호조치 대상자가 원할 경우 보호조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피치료감호자 처우규정」 제110조 등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	7.25	검토 중
권고	장례식 참석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법무부장관에게 귀류시행규칙 제9조의 '사실확인 및 지도보증서' 제출 시 방문 제출뿐만 아니라 교정질서 유지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케 권고	8.16	수용
권고	운동시간과 관련한 인권침해	조사 수용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운동을 불허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조사 수용자 처우 제한의 자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	9.15	검토 중
권고	의료조치 미실시	진정인에 대한 의료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권고	9.15	검토 중
권고	미결수용자에 대한 부당처우 등	법무부장관에게 전국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자 교육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9.26	검토 중
권고	직무유기로 인한 인권침해	자살우려자 지정·해제 시 정신과 전문의 참가 의무화, 자살사고 발생 시 사고경위 및 원인 등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가 포함된 별도의 조사팀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완할 것 등을 권고	9.26	검토 중
권고	에세이집 집필 불허	집필문서의 외부발송을 허용할 것 권고	9.26	수용
권고	시설과 관련한 인권침해	교도소장에게,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도 동절기에는 수용자에게 7일에 1회 이상의 온수목욕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해 일선 교정기관을 관리, 감독할 것 등을 권고	9.26	검토 중

조치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 결 일 자	이 행 현 황
권고	미결수용자 생활용품 지급 관련	행형법 시행령 제74조 및 수용자 생활용품 급여 규정을 개정하여 수형자와 동일하게 미결수용자에게도 수용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지급할 것을 권고	9.26	검토 중
권고	시설과 관련한 인권침해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별 거실 활용계획을 수립해 2006년 상반기까지 계획을 시행토록 권고하고 교도소장에게 조사기간 중 과도한 운동금지에 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에게 교육 실시 권고	10.10	검토 중
권고	수용자 처우에 관련된 인권침해	법무부장관, 시설장에게 특별귀휴 허가 또는 불허 시 그 결과만을 통지하지 말고 그 사유를 적시하여 수형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10.10	검토 중
권고	부당한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	법무부장관에게 가족 만남의 집 이용 대상자 선정 형기 산정 시 부정기형의 경우 단기를 그 기준으로 할 것을 명문화하여 전국 교정시설에 시달할 것을 권고	10.10	검토 중
권고	부당조사	법무부장관에게 징벌 혐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입법취지에 맞게 징벌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각 교정시설에 관련 지침을 시달토록 권고,	10.10	검토 중
권고	신입자교육과 관련 인권침해	교도소장에게 신입 수용자를 신입한 날로부터 3일간 신입자 거실에 수용하고 교육을 철저히 한 후 작업을 부과할 것과 향후 재발방지조치를 권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전국 교정시설의 신입자교육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여 행형법령에 따른 적절한 신입자교육 이행 권고	10.24	검토 중
권고	부당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	조사수용 중인 진정인에게 신문열람을 금지하여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 권고	11.28	검토 중
권고	조사수용자에 대한 운동 미 실시	소란, 난동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없는 조사수용자에 대해서는 운동을 허용토록 권고	11.28	검토 중
권고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	CCTV 모니터 감시 근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경고조치 권고	11.28	검토 중
권고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을 한국에서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권고	12.1	검토 중
권고	열악한 시설 및 처우 등과 관련한 인권침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호실에 대한 증축 및 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호실 적정수용인원을 현저하게 초과해 과밀수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대책 수립을 권고	12.26	검토 중



□ 보호시설 관련

조치	사건명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고발, 권고	병원 신체의 자유침해	환자 입·퇴원 과정상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 피진정인에게 환자 입·퇴원 절차 및 방법을 마련토록 하고 관련 지자체에 지도·감독 권고	6.21	검토 중
고발	정신병원 인권침해사건	입원 시 전문의 진단 없이 입원, 진단서 허위 작성, 작업비 집행과 관련 이사장의 횡령 배임 혐의 적발	9.26	검토 중
징계 권고	신체의 자유 침해 등	보호사가 환자를 30cm 자로 발바닥을 때린 것에 대해 주의조치 권고	4. 25	수용
권고	정신병원 입원절차 위반에 따른 인권침해	보호의무자가 입원수속을 회피하자 보건소 직원이 입원조치를 의뢰하여 진정인을 입원조치한 것에 대하여 감독기관장에게 피진정인 및 관계인을 경고조치하도록 권고	2.28	수용
권고	병원의 신체의 자유 침해	사전 동의나 설명 없이 입원환자를 동일 재단의 타 병원으로 전원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전원 관련 절차 및 방법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	3.14	수용
권고	병원의 신체의 자유 침해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병원 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기준을 마련토록 권고 2. 피진정인에게, 법적 기준 마련 시까지 CCTV 촬영범위 최소화, 입·퇴원 절차 개선, 국가인권위 진정함 이용 및 처리방법 개선 등 권고 3. 지도감독관청장에게 피진정인 경고토록 권고	3.14	수용
권고	병원의 시설 관련 인권침해	감독관청장에게 피진정인의 정신보건법 위반사항(허가병상 초과 수용 및 입원환자현황 허위보고)에 대해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	3.14	수용
권고	병원의 신체의 자유 침해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들의 퇴원 및 처우심사청구를 원활히 하고 입·퇴원절차 및 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하고 지도감독관청장에게 피진정인 경고조치 권고	4.6	수용
권고	정신병원의 시설과 관련한 인권침해	감독기관장에게 피진정인의 정원초과와 허가병상 초과 환자 입원 및 허위보고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에게 샤워장과 화장실의 CCTV의 촬영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4.25	수용

조 치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 결 일 자	이 행 현 황
권고	신체의 자유 침해 등	환자치료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전화통화를 제한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전화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	4.25	수용
권고	정신과의원 신체의 자유 침해	입·퇴원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	4.25	검토 중
권고	격리 및 강박에 따른 인권침해	통풍 및 환기가 잘 안되고 악취가 심한 격리실에 진정인을 수용하고 격리 및 강박 지침의 주의사항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직무교육 등 예방대책 권고	6.7	수용
권고	정신요양원 등 신체의 자유 침해	환자들에게 적절한 작업치료비 지급 권고하고,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감독 및 과태료 부과 권고, 퇴원을 원하는 환자들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토록 권고	8.16	검토 중
권고	수용환경과 관련한 인권침해	정신보건법 제45조의 요건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진정인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	8.16	검토 중
권고	정신병원의 과도한 격리, 강박 등에 따른 인권 침해	감독기관장에게 격리·강박조치를 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정신병원장에 대하여 경고토록 하고 피진정인에게 환자들에 대한 입·퇴원 절차 준수, 과도한 격리·강박 개선방안 마련, 인권교육 실시 권고	8.16	검토 중
권고	전화사용 제한 등과 관련한 인권침해	수용자의 전화통화를 제한한 피진정인을 경고조치할 것과 수용자의 전화통화 제도를 개선토록 권고	8.31	검토 중
권고	시설과 관련한 인권 침해	허가병상 이상 초과 금지, 6개월 계속 입원 시 심사 후 입원기간 연장사유 통지, 편지열람의 경우 진료기록 등에 기재할 것을 권고	8.31	검토 중
권고	정신과 시설의 신체의 자유 침해	추후 환자의 격리·강박 시 최소한의 환자 인권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 및 격리·강박 지침 준수토록 하고 시설종사자에게 직무교육 권고	9.12	검토 중



조치	사건명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직권남용에 따른 인권침해	환자의 격리·강박 시 정신보건법령을 준수토록 하고 감독기관에 경고조치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 권고	9.26	검토 중
권고	정신과 시설의 시설 및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에게, 격리 및 강박은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치료목적과 관련 없는 일률적인 전화 제한을 중단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등 권고	9.26	수용
권고	시설과 관련한 인권침해	장기 계속 작업치료자들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여부를 재확인하여 통원치료 등으로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환자들에 대하여는 퇴원 조치할 것을 권고	9.26	검토 중
권고	신체의 자유 침해	정신보건법제 45조 등을 위반한 피진정인에게 추후 환자의 격리 및 강박 시 최소한의 환자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 및 격리·강박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시설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권고	9.26	수용
권고	병원의 시설과 관련한 인권침해	감독기관의 장인 OO군수에게 피진정기관의 의료인수 미달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	10.17	검토 중
권고	강제수용에 따른 인권침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입원신청을 하지 않아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 권고 등	11.7	검토 중
권고	정신병원 가혹행위 및 처우 관련 인권침해	강박과정의 부상, 전화·편지 제한 및 검열, 허가병상수보다 많은 환자 입원, 계속입원심사 서면통지 미 이행 등에 대해 피진정인에 대한 행정조치 및 재발방지 권고	11.7	검토 중
권고	병원 시설과 관련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의 허가병상 초과 환자입원 및 의료인수 미달 사실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	11.21	검토 중

□ 군 대

조 치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 결 일 자	이 행 현 황
권고	번호인접권 침해	1. 국선번호인 선임사실을 송달·고지하지 않은 부하직원(군사 법원서기)과 번호인접견요청을 받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헌병대 형무담당관에 대해 각 서면경고 권고 2. 국선번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절차 등 제반사항에 대해 직원교육 실시 권고	2.28	수용
수사 의뢰	가혹행위에 따른 인권침해	군복무 중 구타, 폭언, 따돌림 등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정신 장애에 이르게 된 것이라 판단, 해군참모총장에게 피진정인 수사 의뢰	6.21	검토 중

□ 기타 기관

조 치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 결 일 자	이 행 현 황
권고	중국인 배우자 자녀초청 불허 관련 인권침해	OO출입국관리소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증발급 허가 권고	2.28	수용
권고	공공도서관 무인좌석 발급기 관련 인권침해	국립중앙도서관장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입력 대체방안 마련, 불필요한 CCTV 장비 회수 등 인권침해 방지조치 권고	2.28	검토 중
징계 권고	시의회 직원남용에 따른 인권침해	시의회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진정인을 정보누설·공직기강해이자로 시의회 회의록 및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명예훼손 및 신문상 불이익을 입혔다는 진정에 대하여 시의회 의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 요구토록 권고	3.14	검토 중
권고	시립도서관의 개인정보 관련	도서관 홈페이지에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변조한 피진정인에게 경고조치 권고	3.14	검토 중
권고	중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인권침해	피해 학생의 담임과 교감은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사과할 것, 교장은 정기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	3.14	검토 중
권고	우편요금 체납자에 대한 거래정지 관련	본인 동의 없이 개인 거래내역 조회 및 계좌정지 조치를 취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서면 경고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권고	3.28	수용



조치	사건명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지방국세청 감사 관련	‘감사관 주의서신’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행정감사 결과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준수할 것을 OO지방국세청장에게 권고	3.28	검토 중
고발	출입국보호과정에서의 폭행사건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사건발생보고 소홀 등의 책임이 있는 보호실 담당직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	4.6	공익요원 (불구속가소) 직원 (불문경고)
징계 권고	출입국보호과정에서의 폭행사건	부상으로 탈진 쇼크상태에 있던 진정인을 의료조치하지 않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다시 단속장으로 이동하여 방치한 현장지휘 책임자를 징계하도록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권고	4.6	수용
권고	병무청의 직무유기에 따른 인권침해	병무청 홈페이지상 ‘재학생 입영신청’ 제도와 관련, 병역의무자 본인 여부 확인 및 부모 등 대리신청의 경우 그 사유 및 본인동의 여부 등에 대한 정밀확인 절차를 갖추도록 권고	4.6	검토 중
권고	부당 인사조치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공로연수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에도, 본인 동의 없이 진정인들을 총무과로 대기발령한 것과 관련, 진정인들에게 적격한 직위를 부여하도록 해당 도지사에게 권고	4.6	검토 중
권고	저질 쌀 공급으로 인한 인권침해	정부양곡 관리 담당자 및 관리자 등에게 주의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	4.25	수용
권고	출입국보호실 시설처우 관련	과밀수용 발생 억제, 하루에 한 번씩 운동할 수 있도록 실외 또는 실내 운동장 개방, 여성 외국인의 보호업무는 여성직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권고	4.25	검토 중
권고	스마트카드 학생증 강제 발급	개인정보보호규정 마련 등 개선조치 이행,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	5.9	검토 중
권고	행정자치부 사생활 관련 인권침해	정보공개 결정 통보 시 개인비밀번호를 삭제할 수 있도록 권고	5.9	수용
권고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 단속 과정의 인권침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행사, 특히 단속·연행·보호·긴급보호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	5.9	검토 중

조 치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 결 일 자	이 행 현 황
권고	정보공개 거부와 관련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에게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할 것과,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장에게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각급 행정기관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5.9	수용
권고	강제퇴거 부당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의 입국규제 해제를 권고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보호일시해제나 관할 사무소에 이송하여 체류자격 변경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재량권으로 법집행을 할 것을 권고	5.23	수용
권고	지방노동사무소 외국인 사업장변경신청 불허	피진정인에게 외국인 사업장 변경신청 상담 시 외국인에게 사업장 변경신청 해당사유에 대한 설명과 안내 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센터 상담원에 대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5.23	수용
권고	사증 미발급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과거 불법체류를 이유로 사증 발급을 불허한 것은 법무부가 진정인을 비롯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시 입국규제 조치를 면제하겠다고 공표한 것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증 발급을 허가할 것을 권고	6.7	수용
권고	OO대학 직원의 인격권 침해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포함한 조리종사원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탈의실 등을 동영상 촬영 및 녹음 한 행위 등에 대해 서면경고 및 자체교육 권고	6.7	수용
권고	부당한 사무분장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인이 담당팀장과 욕설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다툼 일에 대해 법령 절차에 없는 ‘과 대기’ 로 70여 일간 근무토록 한 행위에 대해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하고 자체 인권교육 권고	6.13	수용
권고	격리 강박에 따른 신체의 자유 침해	약 17시간 동안 격리·강박하면서 매시간 맥박, 혈압 등을 체크한 것 외에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교육 권고	6.13	수용
권고	사회봉사명령제도 개선 관련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집행기관의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감명령 집행 준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	6.21	수용
권고	실업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인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내에 교육을 받고 있어 실업인정일의 변경사유에 해당됨에도 실업인정일보다 이틀 후에 출석하였다는 이유로 4주간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	6.27	수용



조치	사건명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철도공안에 의한 인권 침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진정인에게 약 5분간 수갑을 채워 자술서를 쓰게 하는 등 철도공안의 직무범위에서 벗어난 피진정인에게 권고	6.27	검토 중
권고	행정처분에 따른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부동산 중개업법」 제23조의 규정은 헌법 제11조 및 제15조가 보장하는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관련 규정 개정 권고	6.27	검토 중
권고	직무유기에 따른 인권침해	동명이인의 진정인에게 변론기일 통지서를 반송받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재판에 출석하게 한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 권고	7.4	수용
권고	부당한 인사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고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언론에 인사조치 사실을 공표한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	7.11	수용
권고	대학도서관 지문인식 시스템 설치	피진정인에게 지문인식시스템 철회 및 개인정보보호조치를 권고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전국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에 대하여 실태 파악 후 개선조치 이행을 권고	7.25	검토 중
권고	수사권 남용	체포 시 신분증을 미제시하고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를 수사하면서 과도하게 수갑 사용한 것에 대해 경고조치토록 권고하고 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자 수사 시 사용하는 수사장비의 취급요령과 사용기준 및 교육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권고	8.16	검토 중
권고	불법체류자 밀고 강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담당직원 주의조치 권고	8.16	검토 중
권고	공사현장 안전대책 미비	안전시설 미비로 행인이 교량에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교량설계 시 처음부터 안전난간 등의 시설을 반영하고 철저한 안전감독 등 권고	8.16	검토 중
긴급구제	의료조치 미흡	진정인의 건강상태로 보아 수술이 시급하다고 보고 보호일시해제 긴급 권고	8.19	검토 중
권고	사회복지시설 내 CCTV 설치 등	시설 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시행 및 노조원에 대한 차별대우 중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개정, 직원 인권교육 등 권고	8.31	검토 중

조 치	사 건 명	조 치 내 용	의 결 일 자	이 행 현 황
권고	학교급식 관련 지문날인 강요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집적·도용될 수 있는 지문인식기와 같은 시스템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8.31	수용
권고	직권남용에 따른 인권 침해	인터넷에 실명으로 반성문을 게재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9.12	수용
권고	신용불량등록예고 통지 미흡	국세청장에게 체납자료 등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기 전 체납자가 체납정보 제공사실을 인식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권고	9.26	검토 중
권고	사직서 작성 강요	피진정인이 자신의 정당한 권한을 넘어 피해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것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피진정기관에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을 권고	10.17	검토 중
권고	의료조치 미흡	법무부의 보호외국인규칙상의 보호외국인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은 보호담당 직원을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 직무 교육토록 권고	11.7	검토 중
권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성 폭력 관련 피해자 조사 시 과거 성 전력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향후 재발 방지토록 권고	11.7	검토 중
권고	폭행 등에 의한 인권 침해	보호조치 일시해제하고 소송진행 중 강제퇴거 집행을 유보할 것 등 권고	11.14	검토 중
권고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의 인권침해	외국인을 고용한 업소단속 및 외국인의 주거단속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등 권고	11.21	검토 중
권고	욕설로 인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에게 폭언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진정인에게 직접 사과할 의향을 물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주의조치토록 권고	11.21	검토 중
권고	직무유기에 따른 인권침해	정책관행 개선	12.12	검토 중



징계 권고	직권남용에 따른 인권침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점에 대해 징계조치 권고	12.26	검토 중
징계 권고	신체의 자유 침해	진정인을 정신병원의 폐쇄병원에 입원토록 결정하고, OO병원에 안내한 국립OO병원장 및 관계자를 서면경고토록 권고	12.26	검토 중

2. 검찰·경찰·군 관련 주요 인권침해 조사·구제

(1) 경찰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 홍모씨 등은 2002년 4월 21일 체포되어 ○○경찰서 폭력계와 강력계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 밤샘조사 등 강압수사를 받았고, 현장검증 당시 이동 중인 차 안에서도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경찰의 가혹행위와 자백 강요에 따라 자신들이 저지른 강도강간 사건 외에 자신들이 저지르지 않은 강도살인, 강도치사 등에 대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피진정인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에 대해 5~7회 밤샘조사를 실시한 점, 1회의 조사출감시간이 윤○○씨의 경우 무려 최장 36시간 이상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과도한 밤샘수사가 있었고, 수사과정 중에 수갑을 채우고 무릎, 정강이, 가슴, 이마 등을 구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자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고, 단순 가담자 및 지휘자에 대해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서면 경고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청장에게 밤샘조사 관련 제도 개선 및 자체교육 실시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기관은 관련자들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관련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한편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취했다.

(2)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는 1999년 1월부터 2003년 1월까지 해병대 하사로 복무하던 중 선배 하사관들

에게 몽둥이와 전투화로 머리 등을 폭행당하고 거의 매일 욕설과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을 당하였으며, 전역 후에도 폭행에 대한 악몽과 불안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외상후성 정신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피해자가 복무 중 부대 내에서 선배들에 의해 구타, 폭언, 따돌림, 왕따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점과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정신장애는 군복무 중 당한 가혹행위에 기인한 점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해군참모총장에게 현역 군인인 피진정인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총장에게 민간인인 피진정인들에 대해서는 가혹행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으며, 국방부장관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피해자 소속부대에 기관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3) 구속사실 미통지로 인한 인권침해

○○지방 검찰청 소속 피진정인은 2005년 6월 피해자를 무고혐의로 구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등에게 구속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조사 결과, 피진정인이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하여 가족 등에게 구속의 이유, 일시 및 장소 등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해당자를 주의조치하고 수사담당 직원들을 교양할 것을 권고하였다.

(4) 미성년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만 17세)는 2005년 3월 6일부터 8일까지 ○○경찰서에서 성폭력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온 다음날 자살하였다. 이에 진정인과 가족들은 피해자가 자살한 후에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조사하면서도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경찰의 조사가 피해자의 자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진정해왔다.



조사 결과, 피진정인들은 조사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 등에게 피해자의 연행, 체포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약 22시간 조사를 받고 석방되기까지 보호자나 변호인 등의 조력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밤샘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전국 경찰서 일선 경찰관들에게 미성년 피의자 조사 시 주의 의무를 환기시킬 것을 권고하고, 해당 지방 경찰청장에게는 피진정인들에 대해 징계 및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진정인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5) 부안 핵폐기장 관련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집회신고 절차를 거쳐 부안 방사능핵폐기장 건설 반대 집회를 진행하던 중 피진정인들이 집회 및 시위 등을 원천 봉쇄하고, 집회 참석자들을 불법 연행하면서 집단 구타하는 등 과잉진압하고, 여성 시위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을 한 것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피진정인이 시위 진압과정에서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물리력을 행사 하였고,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압수수색을 하고, 방패 불법사용 등 경찰장구에 대한 관리, 운용을 소홀히 했으며 경찰 지휘통솔상의 문제 등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채증조를 운용하면서 주민들의 불법행위만을 채증하여 사법처리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 점과 집회 시위 금지, 통행권 제한 및 지나친 불심검문 등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한 점 등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경찰청에 대하여 기관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과 전북지방경찰청에 대한 엄중경고 조치를 권고하고, 전북지방경찰청장에게는 폭력시위 미기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권고하였다.

(6) 결혼비자 발급 불허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인과 이란 국적의 피해자는 2004년 6월 대한민국에 혼인 신고를 하고, 2004년 12월에는 쌍둥이 자녀를 출산하여 진정인의 호적에 등재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법적 체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결혼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진정인과 피해자의 사실혼 및 법률혼 관계가 인정되고, 혼인 신고 당시 피해자가 모국에서 결혼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진정인과 피해자의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였으면서도 이란 정부가 발행한 결혼 증명 서류의 별도 제출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사증 발급을 거부한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해 진정인과 피해자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및 결혼과 가정에 관한 권리(헌법 제36조) 등 인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현재 한국인과 혼인하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란 국적의 피해자가 이란으로 출국하여 결혼비자 발급을 신청하는 대신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7) ○○경찰서 직무유기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

이 사건은 2005년 2월 피해자들이 ○○수양원을 ‘탈출’하여 ○○경찰서로 찾아가 수양원의 불법감금, 폭행사실을 신고하면서 “수양원에 돌아가면 원장이 우리를 죽인다. 집에 보내달라”고 호소하였음에도 피진정인이 자신들을 수양원으로 돌려보내 수양원 원장에게 폭행 등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시설 관리자들의 가혹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시설을 탈출하여 보호요청을 하는 상황이라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규정된 바와 같이 다른 보건의료 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의 합당한 보호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어떠한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3시간 30여 분 만에 이들을 다시 수양원으로 돌려보냄으로써 피해자들이 감금 및 식사 중단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상관에게 각각 경고,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휘체계 구축, 직원 교육 및 관내 미인가 수용시설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8) 순경채용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한 알 권리 침해

피해자는 2004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순경채용시험에 응시한 후 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에 3~4회 전화를 걸어 성적 확인 절차를 문의하였으나 경찰청 민원실에서는 성적은 비공개라고 답변하였고, 시험 실시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도 경찰청의 방침대로 문제지와 성적은 정보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를 통해 피진정인은 관련 규정 및 필기시험 등 성적 공개 시 면접시험의 공정성 등 시험 전반에 대한 불신과 민원제기의 우려로 비공개 결정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경찰종합학교를 포함한 다른 국가기관에서 필기시험 성적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험 전반에 대한 불신을 준다는 구체적인 우려가 없고, 수험자에게는 재시험 준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시험시행에 따른 절차적 편의성보다는 순경채용시험 응시자의 필기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및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권의 권리 침해가 더 크므로 순경채용 필기시험 성적을 공개할 것과 시험성적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험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9) 여의도 농민시위 관련 조사 및 구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005년 11월 15일 여의도 농민시위와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꾸려 12월 23일까지 서면진술요구 등 관련 기록조사, 진압기동대 설치 조사,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 각 방송사 취재자료 입수 및 사실조화,

수차에 걸친 현장조사(여의도공원) 및 검증(기동대 참여) 등 종합적인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경찰의 과잉진압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전용철 씨와 홍덕표 씨의 사망원인이 경찰의 진압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경찰 장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강제해산 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



농민사망사건 관련 현장검증을 하고 있는 조사관들 2005.12.19.

하도록 「경찰장비관리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사건 당일 현장을 촬영한 각종 언론사 영상자료, 피해자 진술 등 자료에 따르면 방어용 장비인 방패를 공격용으로 사용하고, 단순 가담자나 저항을 포기하고 도주하거나 쓰러진 사람들에게 대하여 발길질을 하거나 방

패와 곤봉을 이용하여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시 응급처치 등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여성 및 노인들을 방패로 가격한 행위가 인정되었다. 해산 대상 집회라 하더라도 주최자에게 종결 선언 요청을 하고, 자진해산 요청을 한 뒤에 이를 듣지 아니할 경우 3회 이상 해산명령을 내린 후에야 직접해산을 실행에 옮기도록 돼 있으며, 해산·검거 시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강제해산을 자제하고 철저한 채증으로 사후 사법조치를

“농민 사망, 과잉진압 탓”

인권위, 검찰에 ‘경찰 폭력’ 수사 의뢰

서울청장 등 징계 권고도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농민시위에 참가했다가 숨진 전용철(43·충북표(68)씨의 사망 원인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경찰총장에게 전세와 홍씨의 사망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날 밤 5시에 열린 전원위원회를 마친 뒤 “전씨는 방패에 때밀려 넘어지면서 후두정부(뒀머리)에 충격을 받고 넘어진 상태에서 경찰봉 등으로 폭행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홍씨는 방패로 얼굴과 뒷목을 맞아 경추(목·등뼈)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장비 사용 규칙에 따르면 방패의 날을 세우거나 위에서 내리찍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패로 밀 때에도 몸통 부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경찰이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또 경찰은 해산 시위자 검거 과정에서 주최자에게 종결 선언을 요청하고 3회 이상 해산명령을 내린 뒤 검거하도록 한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날 경찰청장에게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차장·경비부장을 경고하고, 서울형기 단장 등을 징계하도록 권고했다. 경찰 수사 의뢰와 관련,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경찰총장에게 가해 부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 수뇌부 경찰 등 과인이 예상된다. 경찰은 농민 사망사건 이후 경찰청장의 경찰 등을 요구하는 농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인권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인권위와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후속 조치를 말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인권위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인권위가 해당 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면 피진정 기관은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백일천 기자
keysm@joongang.co.kr

중앙일보 2005.12.27. 2면

하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시위대를 검거할 목적으로 경찰력을 투입하였음이 인정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두 농민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부대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경찰청장에게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경비부장을 경고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을 징계하며, 중대장 등 지휘책임자 및 실제 가혹행위를 한 부대원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징계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이 권고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 및 기동대장에게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3. 구금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1) 교도소 내 의료 관련 인권침해 구제

2003년 9월 29일부터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던 피해자가 같은 해 10월 4일 식도 출혈로 사망하여 단식 과정과 응급처치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는 천공을 동반한 급성화농성 충수돌기염에 의한 급성복막염으로 사망했음이 확인되었다. 또 교도소 내 집단단식으로 인한 혼란한 상황에서 정확한 병증을 찾지 못하고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집단단식으로 인한 혼란상황에서 정확한 병증을 찾지 못한 사정을 감안하되 독자적 판단으로 외래진료 기회를 박탈한 공중보건의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수용하여 경고 조치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여 사법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다.

(2) 미결수용자에게도 생활필수품을 지급토록 관련 규정 개정 권고

미결수용자에게 생활용품을 자비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장모씨가 ○○구 치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법·지침 등을 개정하여 미결수용자에게도 수형자와 동일하게 수용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조사 결과 행형법 제20조는 기결·미결을 불문하고 모든 수용자에게 생활용품을 급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 법규인 행형법 시행령 제74조는 “소장은 수형자에게 화장지, 칫솔, 치약, 비누 기타 생활용품을 급여한다”고 규정하여 급여대상을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형자로 한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법무부훈령인 「수용자 생활용품 급여지침」 제4조는 “급여대상을 수형자로 하고 미결수용자는 자비부담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구치소를 포함한 일선 교정시설에서는 위 훈령에 따라, 수형자에게는 생활용품을 지급하고 있으나,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생활용품에 대해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자비부담이 불가능한 자(영치금 1,000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었다.

위원회는 미결, 기결 구분 없이 최소한의 생활용품을 지급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생활필수품을 지급하는 데 예산부족 등이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도 되지 않고, 무죄로 추정받는 미결수용자가 유죄가 확정된 수형자들보다 오히려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해 목욕 및 운동권 관련 권고

지정 목욕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주에 목욕을 실시하지 않는 것과 목욕일에는 운동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모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했다. 위원회는 ○○교도소장에게는 동절기에는 7일에 1회 이상 온수목욕을 보장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는 수용자가 7일에 1회 이상의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일선 교정기관을 관리·감독할 것, 여건이 되는 교정시설에서는 목욕을 실시한 날이라도 운동을 실시할 것,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시설개선 및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수용자의 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가 전국 50여 개 교정시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도소(기결수), □□교도소 등 13개 시설은 동절기의 경우 목욕일이 공휴일일 때 그 주에 목욕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고 △△서울구치소, ◇◇교도소 등 6개소를 제외하고는 계호근무준칙에 따라 목욕 해당일에는



수용자의 당일 운동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위원회는 행형법 시행령상의 최소한의 목욕횟수는 지켜져야 하며, 특히 동절기의 경우 온수목욕 시간은 수용자들이 온수를 사용하여 제대로 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이고 공휴일이 언제인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공휴일 해당 주의 인력 배치조정, 해당 수용자를 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용자의 온수목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행형법 시행령 제9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의 수용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목욕과 운동은 병행되어야 할 것이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개별 소에 인력·시설부족 등으로 목욕 실시일에 운동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이는 목욕 실시일마다 발생하는 상시적인 문제이므로 전국 교정기관을 책임지는 법무부가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4) 에세이집 집필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개선 권고

수용 경험담 등을 담은 에세이집을 출판하려고 집필 내용을 외부에 발송하였으나 교도소에서 행형법 시행령상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외부 발송을 불허한 것에 대해 진정이 접수되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피진정인의 조치는 행형법 및 행형법 시행령을 근거로 한 조치이고,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진정인이 집필하게 된 동기 및 그 기재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볼 때, 그 목적이 교정 질서를 저해 또는 다른 수용자들을 선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집필 내용도 수용자 처우 등에 대한 진정인의 주관적인 느낌을 기재한 것이고 다소 부정확하거나 감정적 또는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이 작성한 집필문서의 외부 발송을 허가해주도록 권고하였고 해당 교도소장은 이를 허가하였다.

4. 기타 기관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1) 정신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구제



위원회는 다양한 유형의 진정이 여러 번 접수되고 있는 충북소재 ○○정신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해 2005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해당병원 이사장 등 20여 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리감독 기관인 충청북도 도지사에 대해 행정처분할 것 등을 권고하는 한편 정신보건시설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법 및 그 시행령과 관련 정책·관행 등의 개선을 권고하였다. 직권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입퇴원 과정 및 계속 입원심사에서의 인권침해

2002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의 환자 입원서류를 조사한 결과, 두 병원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 결정 권한이 없는 사회복지사, 일반 공무원, 경찰 또는 보호의무자로 볼 수 없는 마을 이장, 목사, 전처 등의 동의로 입원시키거나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킨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환자 입원 결정 시 의사의 진단 없이 단순 서명만 있는 상태에서 입원시키거나 환자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류에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으며 의사가 진단했다는 서명이 없는데도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보호의무자에 대한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입원조치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신병원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퇴원 결정이 난 환자들에 대해 퇴원시키지 않고 있다가 한 달여 만에 재입원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부당한 격리 및 강박

○○정신병원은 환자를 격리·강박 조치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시행하거나 의사 지시서에 조치 사유, 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조치 과정에서 혈압·호흡 등을 체크하지 않는 등 환자 보호에 주의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었다.

다. 작업치료 및 노동착취 등

국가인권위는 ○○정신병원 및 △△정신병원이 환자들에 대해 작업치료를 시행하면서 작업비를 2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특히, 식당 등에서 장기간 작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계속 입원 필요성이 의심되었다. 또한, ○○정신병원은 환자들에게 치료 목적이라 보기 어려운 작업을 시키고 작업비 명목으로 비영리 법인인 ○○정신병원 회계에서 지급한 행위와 관련, 업무상 횡령·배임죄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병원의 경우 입원 환자 중 김모(여·60세)씨를 2000년 4월부터 병원이 아닌 병원 이사장 모친 집에서 기거하게 하며 모친의 병수발을 들게 했는데도 2002년 7월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입원한 것으로 서류를 꾸미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왔을 뿐 아니라 김모씨의 입원진료비에 해당하는 정액급여를 건강관리공단에 청구해 조사 당시까지 26,451,3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교통 통신권 제한

○○정신병원과 △△정신병원 모두 전화 사용 제한 등 「정신보건법」 규정을 위반하고 정신질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2) 정신병원 환자에 대한 CCTV 설치 및 운영 기준 마련 권고

피해자는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평상시 한 달에 3~4회 술을 마시고 금단현상도 전혀 없음에도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대구 소재 ○○병원에 강제로 구금되었으며, 병원은 피해자가 받지도 않은 검사(ECG) 내역을 기록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했다. 또 환자의 입퇴원 경로가 적법하지 않고, 각 병실은 물론 화장실까지 CCTV를

설치하여 환자들을 24시간 감시하는 등 환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유 없이 서신 왕래를 제한하고 위원회에 진정을 방해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CCTV 설치 및 운영상의 문제점, 환자의 입퇴원 경로상의 문제점, 위원회 진정권을 방해한 일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설치규정이 없는 CCTV는 환자들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수집·가공·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CCTV 설치 사실 자체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위축효과를 야기하고, 또한 모니터 화면이 환자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병원 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피진정인인 병원에 대해 법적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CCTV 촬영 범위를 최소화하고, 입퇴원 절차를 개선하며 인권위원회 진정함 이용 및 처리방법 개선 등을 권고하였다. 또 지도감독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는 피진정인을 경고토록 권고하였으며 해당 기관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진정인을 경고하고,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다.

(3) 정신병원의 치료 목적의 강박 및 격리실 구조 개선 권고

정신병원 입원 중 통풍이 안 되는 등 환경이 좋지 않은 격리실에서 장시간 강박(몸을 움직일 수 없도록 천으로 만든 벨트 등으로 사지를 결박하는 것)을 당한 상태로 있었다며 김모씨가 충북 소재 ○○정신병원장 등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자해 방지를 위해 당시 진정인에 대한 격리 및 강박이 필요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격리 및 강박은 치료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치료 목적이라 해도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피진정인 등은 1시간마다 호흡 등을 점검하거나 혈액순환 등을 위해 수시로 자세를 변경해주는 등 보건복지부가 시달한 「격리 및 강박지침」에 규정된 최소한의 주의사항도 준수하지 않았으며, 지린내가 심하게 나고 통풍 및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의 격리실에 진정인을



수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정신병원장과 이사장에 대해 해당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과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격리실의 구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고, 해당 병원에서는 권고 내용에 따라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격리실 구조를 개선하였다.

(4) 공공도서관 무인좌석발급기 관련 권고

공공도서관 열람실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필수사항으로 요구하여, 이에 도서관 측에 시스템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도서관 시설물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기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한 21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2004년 7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개인정보 보호 실태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공공도서관이 무인좌석발급기를 이용해 시민에게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열람실 내에까지 CCTV를 설치해 촬영한 자료를 별도 규정 없이 관리·활용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디지털도서관 PC를 이용하는 시민의 이용행태를 모니터링 하는 등 임의적이고 과도한 방식으로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보관·활용하고 있는 등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립중앙도서관장 및 해당 도서관장들에게 △공공도서관 열람실 무인좌석발급기 이용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대신 개별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 대체 방안을 강구하여 실시할 것 △CCTV를 설치한 도서관의 경우(14개) 현재 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CCTV 장비는 회수하고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이에 관한 자체 규정이나 운영 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 △디지털 자료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PC 화면을 도서관 관리자가 임의로 모니터링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 △도서대출회원증에 회원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는 것을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고, 회원의 책임과 의무 및 규제 사항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도서관 관련 법규와 규정을 시민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는 방향으로 제·개정할 것 △전국 공공도서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할 것 등을 권고했다.

(5) 스마트카드 학생증 발급 관련 시정 권고

“○○대학교가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학생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특정 은행 계좌를 강제로 개설하도록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진정이 제기되어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 2000년에 △△시가 ○○대학교에 전자화폐를 이용한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을 요청하였고, ○○대학교는 대학 구내에 입주한 ◇◇은행의 협조를 받아 2002년 2학기부터 스마트카드 학생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이 ◇◇은행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학생들의 학생증 발급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적 전산자료(주민등록번호, 대학, 학과, 학번, 성명)를 ◇◇은행 전산부에 제공하였고, 은행은 이 자료를 다시 외주업체에 송부하여 학생증을 발급하고 있었다. 이 대학의 스마트카드 학생증은 학생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도서 대출 정보, 교통카드 사용내역, 전자화폐 관련 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고 향후 사정에 따라 출석 관리 등의 정보도 얼마든지 추가 저장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마트카드 학생증은 그 도입 및 운용 과정에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결되어야 하고,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대학교는 이를 도입하면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사를 묻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이 학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사실상 특정 은행 계좌 개설을 강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스마트카드 발급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학생증 발급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의 도입 및 외부 기관의 학생증 발급 대행에 따른 학생 개인정보보호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위원회는 ○○대학교 총장에게 스마트카드 학생증은 희망자에 한하여 발급하고, 비희망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학생증 발급 절차를 마련하며 학생들에게 이 같은 절차를 정확히 안내하고,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6) 병무청의 재학생 입영신청제도 개선 권고

병무청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재학생 입영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재학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입영 신청이 가능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님 등 타인에 의하여 입영신청이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조사를 통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재학생 입영신청제도 시행 초기에는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인증제를 도입, 시행하였다가 이후에 국민편익 차원에서 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본인 개인정보자료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대체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병무청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을 알면서도 국민편익 차원이라는 이유로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부모 등 타인이 재학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인터넷 재학생 입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병역법 시행령(제3조), 「재학생 입영(소집)연기 관리규정」(제9조) 및 「현역병 입영업무 예규」(제14조)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및 제22조(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피진정인인 병무청에 인터넷 홈페이지 재학생 입영신청 시 병역의무자 본인 신청과 취소신청권을 규정한 현행 법령의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7) 우체국의 부당한 거래내역 조회 및 지급정지 조치 시정 권고

○○국제우체국이 우편요금 체납 사업자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입금잔액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이에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이미 납기를 경과한 시점이어서 납기 전 정수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고, 우편요금을 체납하면 연체료가 부과되고, 국제우편대행사업자 담보금이 확보되어 있는 등 별도의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강제압류 조치의 실체적 요건 또한 결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국제우체국 및 지역 우체국 담당직원들은 우편요금 체납자에 대한 계좌추적 및

강제압류 조치를 먼저하고 우체국장 등 지휘감독자들에게는 추후에 보고하는 등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어서, 중대한 개인정보인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거래 중지를 결정하는데 따른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고 우체국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국제우체국장 및 담당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 국고 손실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엄중 경고하고, 향후 본인의 동의 없는 거래내역 조회나 지급정지 조치가 보다 신중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및 직원교육 등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정보통신부장관은 거래내역 조회와 지급정지에 있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직권 교육을 시행하였다.

(8) 지방자치단체의 직권으로 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한 사건에 대한 중재

진정인은 공무원노동조합 인천남동구 소속 조합원으로 2004년 11월 공무원노조의 파업과 관련하여 같은해 12월 피진정인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이 모든 소속 공공기관에서 노조



인천남동구청 공무원노조 대표자와 구청장이 위원회 중재안에 합의 2005.5.2.

홈페이지(www.ndu.or.kr)에 접속할 수 없도록 일괄 차단한 것은 통신의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진정을 제기 하였다.

위원회는 진정을 둘러싼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진술서를 조사한 결과, 양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상호 의견을 조정·합의함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인권

위원장 주재 하에 직권중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양 당사자는 노조 홈페이지에 실명이 거론된 글이 올라오면 관리자가 이를 익명 처리하며, 노조 홈페이지 관리자가 판단하여 비방,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피진정인 측은 노조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2005년 5월 2일자로 접속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 점차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성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중재(대안적 분쟁해결방법)를 통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양자가 만족할 만한 해결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리는 태일적 결정뿐만 아니라 조정, 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법도 유용한 문제해결 방법임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9) 출입국 보호 과정에서의 폭행사건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가. 단속과정의 폭행 및 부상자 방치

중국인인 피해자는 2005년 1월 단속과정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요원들에 의해 폭행, 전기충격 등을 당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단속과정에서 진정인의 안면부에 다발성 찰과상이 발생하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송된 후에도 탈진, 쇼크 상태가 지속되었고, 얼굴에 피가 많이 흐르고 있었던 점과 단속책임자가 진정인의 심각한 부상 상태를 인지하고서도 이에 대한 별도의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다시 차량에 탑승시켜

단속장소에 방치한 점을 확인하였다.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진정인의 부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료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되며,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는 물론이고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의무조차 방기한 인권침해행위로

판단되었다. 또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시 인권침해 논란이 없도록 단속 상황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녹화, 채증하도록 지시한 바 있는데, 피진정인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정확한 상처 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인권침해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에 위원회는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진정인의 심각한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보호를 일시 해제하는 긴급구제를 권고하였고, 해당 기관은 이를 수용했다.

나. 단속과정 폭행

우즈베키스탄인인 피해자는 2005년 1월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직원이 자신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수갑을 채운 채 쓰러뜨린 후 발로 머리, 가슴, 다리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피진정 기관의 공익요원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사실을 직원에게 보고하였음에도 직원은 피해자 및 폭행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강제퇴거 집행 때까지 보호외국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으며, 이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신체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격적 모독행위, 부당행위에 대한 보호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호외국인에 대한 관리·감독뿐 아니라, 보호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구제하는 역할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사건 발생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이 있는 담당직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직원에겐 불문경고 조치가 내려졌고, 공익요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10) 미등록 외국인 강제 단속 및 연행에 관한 법령 개정 권고

362명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들은,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 종료 후 해산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경찰이 포위한 상태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강제 단속을 실시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현재 출입국관리법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위반 용의자에 대한 각종 권한(조사, 보호, 강제퇴거, 용의자 신분



조서 작성, 통고 처분, 무기의 휴대 및 사용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연행의 권한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권한 행사 시 검사의 지휘나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과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하 사법경찰관리의직무법)」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갖고 있으며,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보호 조항을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위원회는 현행법에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강제단속 및 연행의 근거가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령 등을 개정해 미등록 외국인 등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연행의 권한과 요건·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특히 단속·연행·보호·긴급보호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 현장 책임자와 가스충 발포자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과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 담당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경찰서장에게는 당시 경찰 측 현장 책임자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5. 공청회 운영

(1)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위원회는 2005년 7월 1일 불량 만두소 사건, 연예인 병역비리 사건, 안상수 인천시장 굴비상자 사건 등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피해자, 법조인, 언론인,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문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박주선 전 국회의원과 김진홍 전 한샘식품 대표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경험한 피해사례를 발표하였고, 고려대 법학과 김기창 교수가 피의사실 보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표창원 경찰대학 교수, 박규택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검사, 김환수 서울

[표 2-3-4] 공청회 개최 현황

연번	방식	주제	일시	토론내용
1	공청회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7.1	·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피해 사례 · 언론의 피의사실 보도의 문제점 · 피의사실 보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2	공청회	정신과 시설 인권현황	11.30	· 정신과 관련시설 인권상황과 문제점 ·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 정신과 시설 인권보호 및 개선방안 · 정신보건시설 관련 법제 개선방향

고등법원 판사, 신현호 변호사가 토론하였으며, 이현중 문화일보 기자와 이재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언론의 피의사실 보도 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공청회를 통해 수사기관 및 언론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공판 전 피의사실 공표를 전면금지해야 하며 공소제기를 전제로 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유·무죄에 관한 피의사실을 공판 전에 공표하는 것만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피의사실의 전면금지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소지가 있어 예외적 인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위원회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2005.7.1.

(2) 정신과 시설 인권현황 공청회

정신보건 관련 시설 수용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위원회는



2005년 정신보건시설 수용자들의 인권현황을 파악하고, 수용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관행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대대적인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2005년 11월 30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리학자, 의사,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련 단체 대표 등 정신보건 관련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공무원들을 초청해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보호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실태조사를 책임진 중앙대 심리학과 현명호 교수가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정신과 관련 시설의 인권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동우 박사가 정신장애인의 인권현황과 보호방안에 대해 발제하였다. 이에 대해 부산대 대남병원 오성광 대표와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송응달 회장이 토론하고,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미경 교수가 정신과 시설 인권 개선방안의 측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찬진 변호사가 정신보건시설 관련 법제 개선 방향의 측면에서,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 조남권 과장이 정부의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 인권보호 대책을 중심으로 토론하였다.

공청회를 통해 정신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공공후견인제도 및 외래치료명령제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정신과 시설 및 관련 기구운용 개방을 포함한 계속 입원심사제도의 보완, 정신질환자 퇴원 후 관리 방안 모색 등 정신보건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정신보건시설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위원회의 역할 정립, 정신과 종사자 및 의과대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위원회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정신보건법 개정 및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신보건시설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시설의 인권상황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제3절 평 가

2005년 위원회의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구제 활동 성과는 처리건수에서는 4,117건으로, 2002년에 1,365건, 2003년에 3,137건, 2004년 4,931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던 양적 증가세가 다소 누그러진 경향을 보였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었다.

첫째, 2005년 진정처리 결과 인권침해를 인정한 사건은 244건으로, 2002년 29건, 2003년 94건, 2004년 145건에 이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무려 6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원회가 권리구제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진정사건 집중 처리기간을 설정하여 장기 미결사건 처리에 집중하고, 진정사건처리 시스템 재정비로 사건 처리 효율성이 높아진 데 따른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2004년에 이어 합의종결에 의한 사건 해결율이 꾸준히 상승(35%이상 증가)하고 있어 조사 초기단계나 사건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사 중에 조정을 통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한층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권리구제 실현의 가능성을 높였다. 앞으로 조정이나 대안적 권리구제 기법에 대한 연구 및 직원교육 등을 바탕으로 합의나 조정을 통한 권리구제 사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인권사안, 제도적·구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 실지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으로써 위원회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확대하고, 동시에 인권침해 행위의 사전 예방효과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진정사건 접수 건수가 약간 감소하였고 위원회의 권리구제의 질적 향상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위원회의 구제를 기다리는 진정사건의 수는 여전히 위원회의 조사 역량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고, 그 내용은 훨씬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위원회가 국민의 침해당한 인권을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 4 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제 1 절 개 요

위원회는 위원회법 제1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피해자 등은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등 19개의 사유를 이유로 하여 △고용(모집·채용·교육·배치·승진 등)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아울러, 2005년 7월에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005년 위원회는 1,081건의 차별행위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구제를 실시하여 55건을 시정 권고하고, 7건을 합의 종결하였으며, 116건을 조사 중 해결하였다. 아울러 주요 차별행위 권고사항에 대한 대국민 보도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인권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성차별·성희롱 시정업무 일원화 첫날 진정접수 광경
2005.6.23.

주력했다. 또한, 위원회는 차별과 관련하여 2건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용역사업을 추진하였다. ‘진정직업자격 등 고용차별판단기준에 관한 외국 판례조사’는 고용차별의 중요한 판단기준인 진정직업자격 요건이 외국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고용차별 관련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청소년 출소자에 대한 사회회적 차별 연구’는 소년원 및 소년교도

소에서 출소한 청소년들이 재사회화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차별을 조사하고 이를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1) 영역별 접수 현황

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2005년 말까지 차별행위 진정사건의 영역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017건 중 고용과 관련한 진정이 961건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하며, 재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분야의 진정이 395건(20%), 교육시설 등 이용 분야의 진정이 109건(5.4%)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별사건 접수 현황은 2005년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총 1,081건의 진정 중 고용과 관련한 진정이 503건으로 46.5%를 차지하며,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 분야의 진정이 270건(25%), 교육시설 등 이용 분야 진정이 56건(5.2%) 접수되었다. 고용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고용 영역은 총 503건 중 채용이 148건(29.4%), 모집이 90건(17.9%), 임금이 50건(10%), 해고가 45건(8.9%), 승진이 36건(7.2%)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영역은 총 270건 중 재화 이용 관련이 151건(55.9%), 용역 관련이 87건(30%), 상업시설 관련이 13건(4.8%)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 이용 영역에서는 총 56건이 접수되었는데 교육시설 관련 진정이 51건(91.1%)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한편 위 3개 영역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차별사건으로 분류된 기타 사건은 252건으로 총 진정사건의 27.4%를 차지하고 있다.

[표 2-4-1] 차별행위 진정사건 영역별 접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고용에서의 차별(961건)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395건)							교육시설 등 이용 차별 (109건)		기타
			채용	해고	모집	임금	기타	배치	승진	임금외 금품	퇴직	정년	교육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교육시설	직업 훈련기관	
접수	02년	189	18	10	6	17	5	1	9	6	1	0	1	30	3	2	2	0	1	7	3	67
	03년	358	54	61	21	26	9	14	11	4	6	3	0	29	2	0	1	1	0	14	3	99
	04년	389	22	17	51	12	34	18	9	4	5	3	0	40	10	2	1	0	1	24	2	134
	05년	1,081	148	45	90	50	86	17	36	12	10	3	6	151	87	9	13	5	5	51	5	252
	계	2,017	242	133	168	105	134	50	65	26	22	9	7	250	102	13	17	6	7	96	13	552
	구성비 (%)	100	12.0	6.6	8.3	5.2	6.6	2.5	3.2	1.3	1.1	0.4	0.4	12.4	5.1	0.6	0.8	0.3	0.4	4.8	0.6	27.4
총결		1,603	181	120	142	86	99	43	45	23	17	7	5	158	73	11	12	3	4	70	13	491
미결		414	61	13	26	19	35	7	20	3	5	2	2	92	29	2	5	3	3	26	0	61

※ 2002년 통계는 2001.11.26. ~ 2002.12.31. 접수된 사건을 포함한 수치임.

(2) 사유별 접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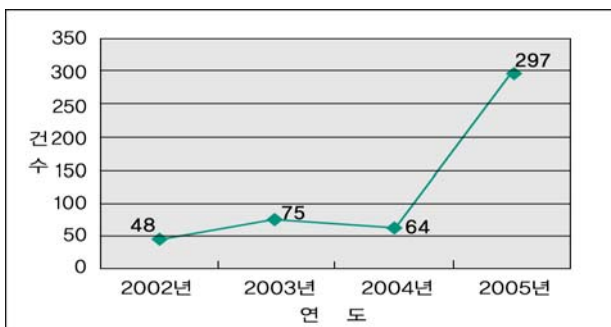
[표 2-4-2] 차별행위 진정사건 사유별 접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성별	성 희 롱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응모	혼인 여부	임신 출산	가족 상황	인종	피부 색	사상	전과	성적 지향	병력	학력	기타	
접	02년	189	11	2	6	33	7	48	5	20	－	2	2	－	1	1	1	4	7	4	10		25	
	03년	358	34	1	5	18	24	75	2	19	1	4	4	15	2	－	－	7	3	2	16	28	98	
	04년	389	25	－	8	54	57	64	6	10	－	6	7	4	4	－			7	1	7	12	117	
	05년	1,081	55	62	11	121	87	297	23	19	－	45	9	5	15	1	1	5	23	5	21	48	228	
수	계	2,017	125	65	30	226	175	484	36	68	1	57	22	24	22	2	2	16	40	12	54	88	468	
	구성 비 (%)	100	6.2	3.2	1.5	11.2	8.7	24.0	1.8	3.4	0.1	2.8	1.1	1.2	1.1	0.1	0.1	0.8	2.0	0.6	2.7	4.4	23.0	
총결			1,603	108	43	24	195	140	333	33	61	1	45	18	21	16	1	2	12	33	12	48	57	400
미결			414	17	22	6	31	151	3	7	0	12	4	3	6	1	0	4	7	0	6	31	68	

※ 2002년 통계는 2001.11.26. ~ 2002.12.31. 접수된 사건을 포함한 수치임.

[그래프 2-4-2]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관련 진정 현황



2005년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 사건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2005년 7월에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성희롱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62건의 성희롱 사건이 접수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 2004년과 비교할 때 용모 등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6건 → 45건)이 7배 이상,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1건 → 5건)이 5배, 학력(12건 → 48건) 및 사회적 신분(64건 →



297건)에 의한 차별이 4배 이상, 출신지역(6건 → 23건)·병력(7건 → 21건)·가족상황(4건 → 15건)·전과(7건 → 23건)에 의한 차별이 3배 이상, 성별(25건 → 55건) 및 장애(54건 → 121건)에 의한 차별이 2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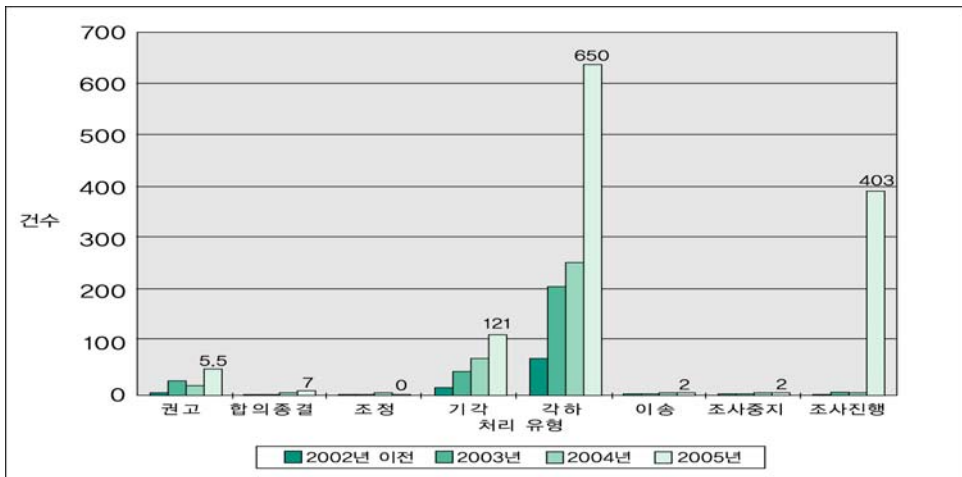
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2005년까지 사회적 신분 관련 사건은 484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하여 단일 사유별로 가장 많은 진정이 접수되었으며, 2005년에는 297건으로 전체의 27.5%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많은 사람이 사회적 신분을 주요한 차별 이유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이 쉽지 않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2.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1)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유형별 현황

2005년 차별행위 관련 진정사건은 총 1,081건으로 전년 389건에 비해 대폭(2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차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별행위와

[그래프 2-4-3]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유형별 현황



관련된 진정사건은 2005년 12월 말 현재 총 접수 2,017건 중 1,603건이 종결 처리(80%) 되었고, 414건이 조사 또는 검토 중에 있다.

종결 처리된 1,603건을 살펴보면 진정의 내용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인정되어 제도개선 또는 인권교육 등을 권고한 것이 114건으로 총 종결사건 대비 7%이고, 진정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 종결된 사건이 16건으로 1%, 사실이 아니거나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 등의 이유로 기각된 사건이 261건으로 16.3%를 차지했다. 그리고 조사대상이 아니거나 진정 후 취하한 경우 등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이 1,201건으로 총 종결건수의 74.9%를 차지하였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당사자들을 설득, 구제 조치가 이루어져 해결된 사건은 2002년 7건, 2003년 16건, 2004년 46건, 2005년 116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05년 조사 중 해결된 사건으로는 시간제 경마직원에게만 응시연령 제한을 두던 것을 철폐한 사건, 임신으로 인한 해외파견 취소를 철회하도록 한 사건 등이 있다.

[표 2-4-3]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 분	접 수	종 결	인 용			기 각 이 하				조사 중
			권 고	합 의 종 결	조 정	기 각	각 하	이 송	조 중 사 지	
2002년 이전	189	102	8	2	-	18	73	1	-	-
2003년	358	296	30	3	-	48	215	-	-	6
2004년	389	368	21	4	1	74	263	3	2	5
2005년	1,081	837	55	7	-	121	650	2	2	403
총계	2,017	1,603	114	16	1	261	1,201	6	4	414

※ 권고 : 재발방지 권고, 인권교육 권고, 제도·정책·관행 등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

※ 종결건수 : 당해년도 접수 중 종결사건 + 이월사건 중 종결건수

2005년 접수된 주요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제도개선 및 인권교육 등을 통해 시정을 권고한 사건이 55건, 조사과정에서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 피진정인 사이에



원만히 합의종결된 사건이 7건,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진정의 원인이 해소된 사건이 116건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 및 인권교육을 권고한 사건을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용모 등 신체조건이 12건으로 가장 많고, 장애 10건, 나이 7건, 성별 5건, 사회적 신분 3건, 학력 및 성희롱이 각 2건, 성적 지향이 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용모 및 신체조건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진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가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적 지향 및 성희롱과 관련한 차별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음을 시사한다.

[표 2-4-4] 차별행위 진정사건 사유별 처리 현황

조치유형 차별유형	제도개선 및 인권 교육 등 시정권고(55건)	합의종결(7건)
합계	55건(병합 포함)	
용모, 신체조건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인직 공무원 채용 시 키와 몸무게에 의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권고 등(12건)	-
장애	색각이상자를 채용에서 배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말 것 등을 권고, 결혼정보회사의 장애인 회원 가입 거절 관련 표준약관 등 개선 권고 등(10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등의 공사 실시 합의 등(2건)
나이	나이를 이유로 월드컵등반경기대회의 출전자격을 제한하는 차별행위 시정 권고 등(7건)	-
성별	남녀를 구별하지 않는 방법으로 출석부 번호를 부여할 것을 권고(5건)	-
사회적 신분	공무원 출신과 비공무원 출신의 경력산정 차별행위 개선 조치 권고(3건)	근무일수가 부족한 기간제 교사에게 퇴직금 지급(1건)
성희롱	부하직원에게 행한 성희롱에 대해 사과 및 인권교육 등 권고(2건)	대학교수 등이 성희롱행위를 인정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2건)
학벌·학력	교육공무원의 유학휴직 신청 시 자격요건을 국내 석사 학위 소지자로 제한한 규정에 대한 개선 권고(2건)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를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하여 방문교사 모집 시 차별하지 않기로 합의(1건)
성적 지향	동성애자단체 회원이라는 이유로 교육수당을 거부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 철저 권고(1건)	-
기타	마약류사범 등 특이 수용자가 출역할 경우 각서를 작성케 하는 관행 개선 권고(13건)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진정인이 2005년 10월 중순 모 방송 프로그램 개편부터 편성본부 특수영상팀 CG요원으로 복귀함(1건)

(2) 2005년 차별행위 진정사건 주요 조치 현황

차별행위에 대한 사유별 중요 진정사건의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4-5] 차별행위 진정사건 주요 조치 현황

□ 국가기관에 의한 평등권 침해

조치 유형	사건 명	조치 내용	의결 일자	이행 현황
권고	특이 수용자 작업지정 관련 평등권 침해	마약류 사범 등 특이 수용자가 출역할 경우 각서를 작성케 하는 관행 개선 권고	4.4	수용
	교사 유학휴직 시 시험 인정 제한	유학휴직 시 외국어능력 검정의 자격조건을 토폴시험으로 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이므로 개선 권고	8.1	검토 중

□ 성별 등에 의한 차별

조치 유형	사건 명	조치 내용	의결 일자	이행 현황
권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교육 시설 이용 차별	동성애자단체 회원이라는 이유로 교육수강을 거부한 행위는 차별행위이므로 재발방지 권고 및 감독기관장에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21	수용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인턴기간 중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여성인턴에게 추가 수련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권고	3.7	수용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남녀를 구별하지 않는 방법으로 출석부 번호를 부여할 것을 권고	9.28	검토 중
	성별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여학생 생리 시 결석을 일반결석으로 처리하는 것은 인권 침해로 피진정인에게 특별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	12.26	검토 중



□ 성희롱에 의한 차별

조치 유형	사건 명	조치 내용	의결 일자	이행 현황
권고	대학교수의 성희롱	성희롱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	9.13	수용
	○○기업 이사장의 성희롱	부하직원에게 행한 성희롱에 대해 사과 및 인권교육과 향후 예방조치 수립을 권고	12.13	검토 중

□ 장애 등에 의한 차별

조치 유형	사건 명	조치 내용	의결 일자	이행 현황
권고	색각이상을 이유로 한 공무원 채용 제한	색각이상자 모두를 채용에서 배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색각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	6.20	일부 수용
	병력을 이유로 한 용역 이용 차별	한센인에 대한 방문 정보화교육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므로 재발방지 권고	7.19	수용
	장애를 이유로 한 용역 이용 차별	결혼정보회사의 장애인 회원가입 거절 관련 표준약관 등 개선 권고	7.19	수용

□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조치 유형	사건 명	조치 내용	의결 일자	이행 현황
권고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공무원 출신과 비공무원 출신의 경력 산정 차별행위 개선 조치 권고	3.7	불수용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촬영을 원치 않는 진정인의 사진을 찍는 행위는 행복추구권 침해이므로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4.20	수용

□ 나이에 의한 차별

조치 유형	사건명	조치 내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대회 출전자격상 나이 차별	나이를 이유로 월드컵 등반경기대회의 출전자격을 제한하는 차별행위 시정 권고	4.20	수용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으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현행 응시 자격의 '18세 이상 28세까지' (8·9급의 경우) 규정을 개정토록 권고	10.18	검토 중
	공무원 유학 관련 나이제한	공무원 장기국외훈련 선발 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나 이제한 규정은 차별이므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	11.21	검토 중
	교육공무원 유학 관련 나이제한	교육공무원의 장기해외유학 대상자 선발 및 국제교육 진흥원 전입 선발 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	11.21	검토 중

□ 학력에 의한 차별

조치 유형	사건명	조치 내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교원유학휴직 신청 시 학력제한	교육공무원의 유학휴직 신청 시 자격요건을 국내 석사 학위 소지자로 제한한 규정의 개선을 권고	12.12	검토 중
	기술인력기준 평등권 침해	폐기물 전문 분석기관의 지정기준 중 기술인력기준에서 4년제 대학 관련 학과 이수를 전제토록 한 것은 학력에 의한 차별로, 관련 규정 개선을 권고	12.13	검토 중

□ 기타 사건

조치 유형	사건명	조치 내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권고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시 문신 확인	경찰공무원채용 시 문신자는 무조건 불합격 처리하는 규정 개정 권고	3.23	불수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점자 선거공보의 규격을 점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선거공보와 동일하게 규격화한 규정 개정 권고	3.28	수용
	「행정사법시행령」에 의한 평등권 침해	법에 명시된 행정사 자격시험을 전혀 치르지 않고 공무원 경력자들에게만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시정 권고	7.4	검토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평등권 침해	일반 사원의 임금 인상은 당월부터 적용하는 반면 산재 환자의 휴업급여 인상분을 다음달부터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관련 규정 개정 권고	7.19	검토 중



3. 평등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평등권 침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주로 행정기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약류 사범으로 ○○교도소에 수용되었던 장모씨는, 마약류 사범 등 특이수용관리대상 수용자에 대하여 작업을 지정하는 경우 “작업을 태만하거나 거부하지 않겠으며, 작업장 규율을 준수하고, 작업장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제출케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마약류 사범 등 특이수용관리대상 수용자에 대하여 작업을 지정할 때 각서를 쓰게 하는 것은 관련 근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서 작성의 규율위반 예방효과도 입증된 바 없으며, 각서 작성이 교정사고 예방 목적이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교정심리검사·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작업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등 별도의 조치로 해결할 문제이므로 이는 합리적 사유가 없는,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2005년 4월 4일 법무부장관 및 ○○교도소장에게 마약류 사범 등 특이수용자가 출역할 경우 각서를 작성케 하는 관행의 폐지를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당 교도소는 그러한 관행을 중지하였고, 법무부장관은 전국 교도소에 지시 공문을 보내 그러한 관행을 폐지할 것을 시달하였다.

4.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는 성 평등이라는 기초 위에서 모든 사회적인 영역에서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의 대상에는 특정한 성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행해지는 불평등한 대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기준이나 규칙

들이 특정한 성별에게 불평등한 효과를 낳게 하는 간접차별도 해당된다.

(1) 성별을 이유로 한 교육기관에서의 차별

성모씨가 ○○초등학교에서는 출석부 번호를 남학생에게는 1번부터 부여하고, 여학생에게는 남학생에게 번호를 모두 부여한 후 대략 30번부터 부여하는바,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에서 출석부 번호를 부여할 때 남학생에게는 1번부터 부여하고, 여학생에게는 남학생에게 번호를 모두 부여한 이후의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심어줄 수 있는 성차별적 관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초래되는 폐해는 학생관리의 편의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여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초등학교장에게 학생의 출석부 번호를 부여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당 초등학교장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철수는 1번 영희는 41번?

“출석부 女학생 뒷번호는 性차별”

인권委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남학생에게는 출석부 앞번호를, 여학생에게는 뒷번호를 부여하는 교육현장의 성차별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17일 성모(34·여)씨가 “대전 D초등학교의 출석번호가 남학생은 1번부터, 여학생은 41번부터로 정해진 것은 부당하다”며 7월 제기한 진정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교장에게 시정권고했다.

인권위는 “초등학교 출석부에서 여학생에게 뒷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유발할 뿐 아니라 남학생에게는 적극적인 자세를, 여학생에게는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할 수 있다”며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석부 번호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D초등학교는 인권위 조사에서 “출석번호의 성별 구분은 남녀 구



별관리 등 학생 관리상의 편리함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 학년도부터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름의 가나다 순이나 생년월일순 등 기타 방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출석번호 부여방식은 교장의 고유권한으로 학교마다 달라 일단 진정이 접수된 학교에 대해서만 시정권고를 내렸다”며 “교육현장 전반에서 성차별적 관행이 사라지도록 앞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한국일보 2005.10.18. a10면



(2) 성별을 이유로 한 경력인정 차별

황모씨는 교사로 재직하다가 의원면직 후 13년 6개월간 농업에 종사하였고, 이후 다시 교사로 복직한 여성이다. 복직 전 실제로 농업에 종사한 경력을 호봉확정경력으로 인정받 고자 하였으나, ○○도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공무원보수업무 편람」 에 의거, 진정인이 농지원부상 농업인이 아닌 세대원(업무집행사원)으로 되어 있는 등 실제 농업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농업종사경력을 인정하지 않은바, 이는 남성을 가장으로 여기는 한국사회의 실정을 고려할 때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교사 임용 전 농업종사 경력을 호봉확정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농업에 종사한 경력을 입증토록 하고 있고, 그 기준으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농지원부상의 소유자 및 농업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기준에 따르면 남성을 세대의 대표자로 당연시 하는 사회풍토로 인하여 실제와는 다르게 남성이 농업인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결국 여성의 농업경력 인정률은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어 성별에 따른 차별을 초래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육공무원의 농업종사 경력을 인정함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농업종사 경력인정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를 검토 중에 있다.

(3) 성별을 이유로 한 재화 이용 차별

이모씨는 공무원으로, 이혼 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학비수당을 수령하던 중 자녀 들이 도시에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원 주거지인 ○○에서 친척이 거주하는 △△로 이사함과 동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한바, 진정인의 소속기관에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이혼한 여자 공무원의 자녀만 자녀학비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학비수당을 장래에 지급받을 수

없음은 물론, 자녀들과 별거한 기간 수령하였던 전액을 소급하여 반납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모씨는 법원에 의해 친권자로 인정된 자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함에도 동일 호적과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요구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녀학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이혼한 여성공무원의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으려면 자녀가 동일 호적에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여야 하는 것은(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현행 호적제도상 부모 이혼 시 자녀가 아버지의 호적에 남게 되므로 이혼한 남성은 자녀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 자격을 갖는 반면 여성은 자녀와 동거해야 수급자격을 갖게 되어 실질적 양육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이혼한 여성공무원을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2005년 11월 7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가 아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 여성공무원에게도 자녀학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검토 중이다.

5. 성희롱에 대한 조사·구제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성희롱을 규제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는 달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고용뿐 아니라 재화·시설·용역·교육시설의 이용과 제공, 교육훈련 등에서의 성희롱을 대상으로 하므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피해를 한정된 것은 적절치 않으며 입법상의 오류로 보인다. 따라서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법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신모씨는 2004년 1학기에 ○○대학교 경영학부에서 한문교육과로 편입한 3학년 학생이고,



홍모씨는 동 대학교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조교수 신분인데, 신모씨가 기말고사 준비를 위해 사범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홍모씨가 따라 나오라고 하여 연구실로 따라갔다. 홍모씨는 소매 없는 옷을 입고 있던 진정인의 팔 등을 쳐다보며 아직 치르지도 않은 기말시험의 담당과목에 “F학점을 주겠다”고 말했는데, 늦은 시각에 학생을 불러 팔 등을 쳐다보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진정인은 이해할 수 없었고, 불쾌했다. 같은 해 여름에는 홍모씨의 연구실에서 개인면담을 하던 중 홍모씨가 “나의 예전 여자친구가 너보다 훨씬 예뻐다”는 말을 하였는데, 평소 예쁜 여학생을 좋아하고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한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던 차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니 자신을 여자, 성적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 불쾌했다. 신모씨가 홍모씨의 ‘경전강독’보강에 출석하였는데, 홍모씨는 수능능력시험 대리시험, 대리모, 본인의 불임경험에 대해 말하다가 “요즘 대학생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기의 난자를 파는데, 여자의 학벌이 뛰어나거나 얼굴이 예뻐수록 난자 가격이 비싸다. 신○○(진정인) 정도면 난자가격이 비싸겠는데”라고 말하였고, 홍모씨는 수업시간 중 학생들의 외모에 대해 자주 언급하였는데 신모씨를 직접 거론한 적도 여러 번 있어 그때에도 기분이 좋지 않았던 차에 이번에는 난자매매 사안에 신모씨를 거론하니 많은 학생들 앞에서 매우 창피하고 굴욕감이 들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으로 스승이 제자에 보이는 관심이 지나치고 자신을 학생보다는 여자로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아 수치스러웠는데, 신모씨는 홍모씨가 대자보 등을 통해 공개사과를 하고, ○○대학교 총장은 홍모씨를 징계조치하는 한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키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대학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에 대하여 성적 언급 및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교수의 직위를 이용하여 일반여성의 관점에서 심한 성적 굴욕감 또는 수치심을 준 것으로, 위원회법상 규정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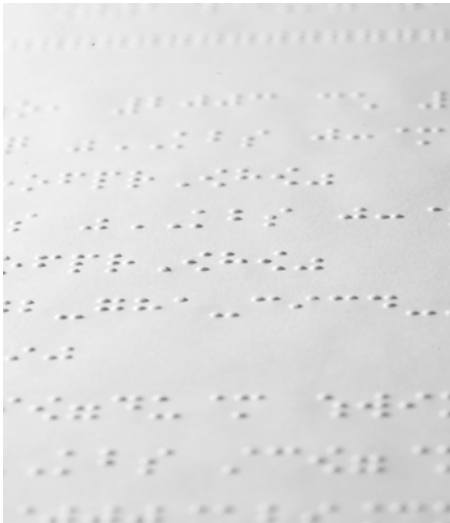
위원회는 2005년 9월 홍모씨에게 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고, ○○대학교 총장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홍모씨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하였고, 해당 대학교 총장은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6.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장애에 의한 차별은 장애를 이유로 고용·교육 등에서 배제하거나 구별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영역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임금 외 금품, 정년, 퇴직, 해고 등)과 재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등), 교육시설 등의 이용(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등)으로 구분되며, 위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행위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들을 배제·구별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차별행위로 본다.

(1) 점자선거공보 개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65조는 선거공보를 2매로 제한하고 점자 선거공보도 이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 관리규칙」 제30조는 일반 선거공보와 점자 선거공보의 규격을 길이 26cm 너비 19cm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글씨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목자에 비해 글씨 크기의 조정이 불가능하고 자음과 모음 하나하나를 독립적인 글자로 표시해야 하는 점자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위 규격에 따르자면 일반 선거공보의 내용을 그대로 점역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내용을 발췌하여 실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

「공직선거 관리규칙」 제30조는 일반 선거공보의 무게를 100g/m² 이내, 점자 선거공보의 경우는 120g/m²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점자지의 무게는 150g/m²임을 감안



할 때 이에 미치지 못하는 $120\text{g}/\text{m}^2$ 이내로 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가독성이 떨어지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제한이다. 따라서 일반 선거공보 내용을 발췌한 것이 아니라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간 표준 점자지 무게의 점자 선거공보가 제작될 수 있도록 위 규정을 개정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조사 결과, 점자는 그 특성상 일반적으로 목자의 약 3배 분량이 되고 종이가 얇을 경우 글씨가 지워지는 등 가독성의 문제가 있어 $120\text{g}/\text{m}^2$ 이상의 종이를 사용하고 있는바, 일반 선거공보와 동일하게 매수를 제한하고 무게를 $120\text{g}/\text{m}^2$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2005년 3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5조 선거공보 매수 제한규정에 대해 점자 선거공보를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직선거 관리규칙」 제30조 점자 선거공보의 무게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공직선거 관리규칙」을 개정했다.

(2) 색각이상을 이유로 한 공무원 채용제한

정모씨 등은 경찰·해양·경찰·소방직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격으로 색각이상자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원한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조사 결과,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별표5 ‘색맹(색약을 포함한다)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별표5 ‘색각이상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색각이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무원 채용을 제한하는

것과 교정직·소년보호직 공무원 채용 시 가성동색표 검사만으로 채용자의 신체적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2005년 6월 20일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에게 공무원 채용 시 색각이상자를 채용에서 모두 배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색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고,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직·소년보호직 채용 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색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및 소방방재청장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고, 경찰청장은 채용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3) 장애를 이유로 한 용역 이용의 차별

김모씨는 지체장애3급 장애인으로서, 2004년 12월 경 결혼할 배우자를 소개받고자 피진정인들이 운영하는 결혼정보회사에 각각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신체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회원 가입을 거절당하였는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장애보조기구전시회에 참석한 조영환 위원장 2005.4.20.

조사 결과, 결혼은 인간이 가정을 꾸리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를 가진 자 또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혼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기회가 제한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결혼정보회사가 신체장애인을 결혼에 부적합 또는 자격이 없다고 약관에 규정하여 신체장애를 이유로 하



여 회원가입자격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는 것이고, 신체장애를 이유로 혼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기회를 제한한 것이므로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이에 (주)○○ 대표이사 등에게 장애인을 결혼에 부적합한 자, 또는 결격사유 있는 자로 규정한 약관 및 규약을 개정할 것과 장애를 이유로 회원가입자격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 대표이사 등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4) 청계천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미흡

서울특별시가 추진한 청계천 복원에서 장애인 등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8월 네 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청계천 쪽에 설치된 보도의 폭은 1.5m이나 보도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 가로수가 있는 곳의 통행 가능 유효 폭은 60~70cm밖에 되지 않아 휠체어 등이 지나가기 어렵고, △청계천변 산책로의 바닥 마감재료가 바뀌는 곳에 석재분리대가 높게 설치되어 턱을 이루고 있으며, 교량 밑과 옹벽 수문 아래에 설치된 자연석 산책로의 요철이 심하고, 보도와 차도가 만나는 지점에 불필요한 돌말뚝(블라드)이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제1공구 출발지인 경사로에서 이어진 산책로는 각이 지고 흙이 파인 구조물로 하천과 맞닿아 설치되어 있지만 난간 등 안전시설이 없고,



청계천 거리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 실시 광경
2005.8.4.

△같은 구간 내에 있는 하천 횡단교량은 안전시설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 낮은 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산책로변과 연결된 상단 통행로는 그 높이가 높음에도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아울러 △제3공구의 고산자교와 신답철교 사이에 있는 경사로로 연결된 산책로는 상류 쪽과 건너편 모두 징검다리만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등의 이동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접근해 비장애인과 함께 체계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 보장에 지장을 주는 시설을 개선토록 권고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권고 사항 중 돌말뚝(볼라드) 및 산책로의 높은 턱을 제거하였고, 안전 펜스를 설치하였으며, 휠체어 교행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폭 일부를 확대하였지만, 가로수 문제, 하천횡단 교량 설치 및 난간 높이 조정, 자연석 바닥재 요철 부분은 개선하지 않았다.

7.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1) 대회 출전자격상 나이 차별

안모씨는 전국 장년부 클라이밍동호회 회장으로, 2004년 9월 ○○산악연맹이 국제산악연맹(UIAA) 주최 월드컵 등반경기(스포츠클라이밍)대회(이하 월드컵 등반경기대회)의 참가 자격을 만 28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월드컵 등반경기대회의 출전자격 부여를 독점하고 있는 ○○산악연맹이 선수들의 출전자격을 만 28세로 제한한 것은 만 29세 이상인 선수들이 공정한 선발과정을 통해 평등하게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2005년 4월 20일 ○○산악연맹회장에게 나이를 이유로 등반경기대회의 출전자격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산악연맹회장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2) 나이를 이유로 한 지방공무원 채용 차별

조모씨는 ○○도교육청이 2005년 제1회 9급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응시 자격 중 연령을 2004년에 ‘18세 이상 40세까지’로 하였다가 2005년에는 ‘18세 이상 28세까지’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2004년 공고를 참고하여 시험을 준비하던 ‘29세 이상 40세까지’에 해당하는 수험준비생의 응시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한 것이며,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채용기준으로 연령을 ‘18세 이상 28세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당해 업무수행에 필수적 요건으로 인정할 수 없는바, 공직선발에 있어 능력주의에 바탕을 둔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연령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2005년 10월 18일 ○○도교육감에게 9급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 28세까지’로 제한하지 않도록 「○○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도교육감은 위원회의 권고를 검토 중이다.

(3) 나이를 이유로 한 지방공무원 채용 차별

전모씨는 ○○남도교육청이 2005년 제1회 9급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응시 연령을 전산·식품위생직렬은 ‘18세 이상 45세까지’, 건축직렬은 ‘20세 이상 40세까지’로 정하고, 이와 달리 사서직렬만 ‘18세 이상 28세까지’로 제한하였는바, 사서직렬만 더 낮은 연령 상한을 정한 것과 연령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사서직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채용기준으로 응시연령을 ‘18세 이상 28세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인 연

령을 응시자격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도교육감에게 9급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 28세까지'로 제한하지 않도록 「○○○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도교육감은 위원회의 권고를 검토 중이다.

8.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일정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의 집단(학생, 공무원, 변호사, 기간제 교원 등)을 말한다.

(1)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강모씨는 생활체육전국스케이팅연합회(이하 연합회) 소속 직원으로 ○○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의 전신인 ○○시 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공무원들과 업무를 같이 하였음에도, 진정인은 공단 설립으로 신규 임용되면서 경력 산정에 공무원 출신에 비해 50%의 경력만이 인정되는 차별을 받았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의 신규임용 직원들의 경력 산정과 관련하여 공단의 전신인 지방자치단체 시민회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공무원과 연합회 소속직원이 업무를 같이 하였음에도 공무원 출신의 경우 시민회관에 근무 여부를 불문하고 100%의 경력이 인정된 반면 연합회 출신의 경우 계속근무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50%의 경력만 인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되었다.

위원회는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연합회 출신인 강모씨에 대한 고용차별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2) 민간기업 출신자에 대한 경력인정 차별

김모씨는 ○○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직원의 경력 환산에 있어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는 반면, 민간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퇴직 당시 종사원 수를 기준으로 60%나 40%만 인정하거나 또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 이는 공무원 경력자와 민간기업 근로 경력자 간 부당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경력인정제도는 현재 직무수행능력에 도움이 되는 경력에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기준은 입사 전후 업무의 실질적인 연속성·유사성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는바, 공무원 출신인지 또는 민간기업 근로자 출신인지가 경력환산을 달리할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공무원 또는 민간기업 근로자 경력을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하는 데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합리적인 경력환산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시장에게 ○○시 시설관리공단이 직원의 경력을 환산할 때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업무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3) 군복무 경력에 의한 고용 차별

이모씨는 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격을 ‘병역을 필한 자(병역 면제자 또는 면접시험일 전까지 전역예정자 포함)’로 제한하여 아직 군대에 갔다오지 않은 자신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는데,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군복무 경력이 경찰공무원의

“경찰시험 군미필 배제 차별”

인권위 개선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군미필자에게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경찰청장에게 응시자격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군복무 경험이 없는 군면제자와 여성도 군필자로 분류돼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데 군대를 아직 다녀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군미필자는 채용 후 휴직을 통해 병역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군복무 경험이 경찰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편더러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용시험을 통해 검증하거나 채용 후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해 10월 이모 씨(24)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남자의 경우 ‘군필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해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평등권 침해라며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병역 휴직으로 인한 결원상태가 치안상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병역 후 복직할 경우 재교육에 다시 예산낭비가 초래된다고 응시자격 완화에 난색을 표해왔다.

황인찬기자

경향신문 2005.10.5. 9면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병역휴직자 발생에 따른 치안서비스 공백 및 군복무 후 재교육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는 것이 군 미필자의 공무담임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공무담임권을 법률상 근거도 없이 '공고'에 의하여 제한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므로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을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을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로 제한하는 채용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권고를 검토 중에 있다.

9.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모, 인상, 머리모양, 모반, 흉터, 키, 몸무게, 체중, 체형 등의 신체적 특징과 체력 등의 신체적 능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다.

(1)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

한국일보

09월 28일 a10면

법무부 공무원 채용 때 신체제한 폐지·개선키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법무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소년보호직공무원 채용시 색각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몸무게 제한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법무부가 교정직

공무원 채용시 현재 1단계로 구성된 색각이상자 검사를 2단계로 분화해 1단계 미통과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키·몸무게 제한은 개선 여부를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알려 왔다"고 전했다.

김모씨 등은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원한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 시 업무수행에 대한 육체적인 능력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육체적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따라야 하는바, 일률적으로 키와 몸무게로 판별하는 것은 적합한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2005년 4월 11일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무원 채용 시 키와 몸무게에 대한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각각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소년보호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으나, 교정직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았으며, 소방방재청장은 권고안을 수용하였다. 경찰청장과 건설교통부장관은 검토 중에 있다.

(2)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시 문신 확인

신모씨는 우측 허벅지와 좌측 종아리의 문신으로 인해 2004년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신모씨는 “이 문신은 15세 때 새긴 것으로, 현재 많이 후회하며 6회에 걸쳐 문신제거술을 받았음에도 의료기술의 한계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인데, 이를 이유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며, 경찰공무원 채용 불합격 기준으로 흉터가 있는 자를 규정한 것 또한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경찰공무원 임용시험 기준에서 문신의 위치 및 노출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문신이 있는 자에 대하여 불합격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은 업무의 필요성을 넘어서서 문신한 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잘못하면 노출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을 차별적인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공무원 채용 시 키, 몸무게 제한은 평등권 침해라는 권고결정 브리핑 2005.4.12.

이에 대하여 경찰청장은 문신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 등을 감안하여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보기 흉하지 않은 문신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찾겠다고 답했다.

10.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임모씨는 김모씨가 한센병을 앓은 경력이 있으나 현재는 활동성 임상증후군이 없어지고 증상의 진행이 정지된 한센병력자로서, ○○체신청장이 시행하는 장애인 방문 정보화교육 사업과 관련하여 2004년 9월 교육을 받고자 신청하였으나, 2회 교육 이후 김모씨가 한센병력자임을 알게 된 강사는 피해자에 대한 교육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한센병력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현재는 활동성 임상증후군이 없어지고, 증상의 진행이 정지된 한센병력자에게 그 병력을 이유로 교육을 거부한 것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체신청장에게 장애인 방문 정보화교육 사업 실시과정에서 한센병력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보문화진흥원장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11. 기타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기타 진정사건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인간의 침해사건, 법령제도 개선, 입법제판, 재산권, 회사, 기타 단체, 기타 진정 등 7개 영역으로 나뉜다.

기타 진정사건의 접수 및 처리유형은 [표 2-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676건의 진정 접수 중 1,639건을 종결 처리하였는데, 종결건수를 기준으로 권고가 21건으로 1.3%이며, 기각은 72건으로 4.3%이다. 한편 각하는 1,529건으로 91.2%를 차지하였다.



[표 2-4-6] 기타 진정사건 처리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 분	접 수	종 결	인 용		기각 이하				조사중
			권 고	합의 종결	기 각	각 하	이 송	조사 중지	
2002년 이전	571	389	2	—	6	381	—	—	2
2003년	416	364	3	—	20	341	—	—	1
2004년	352	505	10	—	33	459	3	—	1
2005년	337	381	6	5	13	348	6	3	33
총 계	1,676	1,639	21	5	72	1,529	9	3	37
비율(%)		100.0	1.3	0.3	4.4	93.3	0.5	0.2	

12. 간담회·토론회 운영

2005년 위원회는 차별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차별시정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전문가 및 활동가의 차별시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건의 간담회와 2건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 성적 소수자 차별 전문가 간담회

위원회는 2005년 6월 22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사회적 약자의 차별실태 파악 및 차별 기획조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라는 제목으로 8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관련 전문가 및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발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성적 소수자의 인권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와 트랜스젠더의 성별을 법적으로 정정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가 함께 논의되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군대 내 인권문제를 다룰 때

[표 2-4-7]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현황

연번	구분	주 제	일 시	토 론 내 용
1	간담회	성적 소수자 차별 전문가 간담회	6.22	· 성적 소수자 인권에 대한 접근법 · 군대 내 성적 소수자 인권문제
2	토론회	고용상의 차별 판단기준, 판단절차 및 입증방법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	6.29	·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의 판단기준 및 절차상의 쟁점 · 고용차별금지의 경영상 함의
3	간담회	학벌에 의한 차별 전문가 간담회	6.30	· 국가 및 민간부문에서의 학벌 차별실태 및 해소방안
4	"	장애인 교육권 전문가 간담회	7.1	· 장애인 교육권의 침해 실태와 정책
5	"	이주여성의 차별 전문가 간담회	7.7	·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와 대책
6	"	고용상 나이차별 전문가 간담회	7.15	· 고용상 나이차별 실태와 차별금지정책
7	"	정보격차와 사회적 차별 전문가 간담회	7.22	· IT분야의 불평등과 해소 정책의 문제점
8	"	혼혈인 차별 전문가 간담회	7.28	· 혼혈인 차별실태와 시정 방안
9	"	고용상의 학력차별 전문가 간담회	7.29	· 학력 및 학벌차별의 법적 규제의 타당성
10	토론회	장애인 보조견 활성화 토론회	11.9	· 장애인 보조견 사용의 국내외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성적 소수자 문제를 포함시켜야 함을 지적하였고, 그 밖에 청소년 성적 소수자의 차별실태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과 성적 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인권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2) 고용상의 차별 판단기준, 판단절차 및 입증방법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

위원회는 차별 판단기준 및 절차에 있어서 외국의 사례와 국내의 차별 판단기준 및 절차상의 문제점을 비교하고, 차별시정제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경영학적 관점에서 기존 차별 시정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고용차별의 피해자 범위를 수습 중인 자 등을 포함하도록 넓히는 문제 △진정 직업자격 요건을 ‘합리적 이유’기준에 포함시키는 문제 △현재 「고용평등법」에만 있는 간접 차별 개념을 다른 차별사유 영역에도 적용하는 문제 △고용주에게 간접차별의 책임을 묻는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또한 고용차별 금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참가자들은 비용 증가라는 부정적 영향 못지않게 인력 활용의 효율성 제고와 같은 긍정적 영향도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차별시정을 위해 고용평등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기업에 고용통계정보 구축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3) 학벌에 의한 차별 전문가 간담회

위원회는 학벌사회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학벌차별의 판단기준을 규정하며 학벌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를 모색하기 위해 ‘학벌에 의한 차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학벌문제가 나타나는 독특한 사회적 조건과 학벌 차별이 사회적 차별로 전개되지 않는 프랑스 사회의 특징을 비교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참가자들은 학벌에 의한 차별이 심각한 ‘사회적 차별’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조화한 차별인 까닭에 사회적 차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학벌차별을 중요한 사회적 차별로 규정하고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가자들은 이를 위해 학벌차별을 예방할 합리적인 인적 자원 평가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4) 장애인 교육권 전문가 간담회

위원회는 장애아동의 교육권 침해실태를 파악하여 그러한 문제를 해소할 정책 방안을 강구하며 침해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기획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활동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의 절대적 부족 △학교의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장애아동의 교육기회의 배제 △장애아동에 대한 반강제적 취학 유예에 따른 교육기회의 박탈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교사들의 소양 부족 △「특수교육진흥법」의 형식적 운용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통합교육에 대한 지원체계의 부실로 인해 실제적인 통합교육은 없고 물리적인 통합만 있는 현실, 장애학생에 대한 직업 교육 및 치료교육은 없이 교과교육만 있는 상황 등을 지적하면서 「장애인교육지원법」 및 「특수교육진흥법」 등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관련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5) 이주여성의 차별 전문가 간담회

위원회는 국내로 이주한 외국 여성들이 일터 및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 및 인권침해 상태를 파악하고 해당 차별의 시정과 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 발제자들은 인신매매를 통해서 또는 우편주문 신부 신분으로 국내로 이주한 여성들이 기지촌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지적하며 이들이 겪는 차별 및 인권침해 상태를 소개하였다. 또한 발제자들은 불법체류 중인 이주 여성노동자들 중 결혼한 여성들이 겪는 의료 및 육아 문제와 국적 취득 문제 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으로서 간담회 참가자들은 인신매매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관련 국내법의 개정, 차별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국제결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정부 및 위원회에 촉구하였다.

(6) 고용상 나이 차별 전문가 간담회

위원회는 민간기업의 고용상 나이차별 실태와 공무원 채용 시의 나이 제한 문제, 그리고 임금피크제와 나이차별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 전문가 및 인사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나이차별의 금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차별 금지 법령이 없고 정년을 법적으로 규제하지 못하여 중고령자에 대한 나이차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중고령자의 해고로 이어지는 나이차별을 극복하기 위하여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그러나 고령자의 나이차별에 대한 연공급제(호봉제)의 효과 등에 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한편 참가자들은 중고령자에 대한 나이차별과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청년층에 대한 나이차별은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7) 정보격차와 사회적 차별 전문가 간담회

위원회는 노년층 등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어 은행업무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정보격차가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고 멀지 않은 장래에 그러한 차별이 크게 부각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정보격차와 사회적 차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크게 두 가지 점을 강조했는데, 그중 하나는 정보 불평등 또는 정보격차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 분야가 시장 영역에 점차 포섭되어 그 공익성이 약화되면서 인권과의 친화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보는 사회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격차는 사회구조의 불평등 개선, 특히 교육구조의 불평등 개선 및 이를 통한 정보 수요의 개선을 통해서 극복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보격차는 이제 정보 소유가 아닌 정보 활용에서 발생하며 신자유주의로 인해 정보통신 분야가 시장 영역에 점차 포섭돼 사유화됨으로써 그 공익성이 약화되고 인권, 특히 문화적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8) 혼혈인 차별 전문가 간담회

위원회는 혼혈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특히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로 이른바 코시안이라고 불리는 혼혈인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편견과 차

별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해 혼혈인 단체 대표 및 전문가들로부터 혼혈인 차별의 실태 및 그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획조사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먼저 혼혈인 취업의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즉 혼혈인은 서류전형을



혼혈인 차별 전문가 간담회 2005.7.28.

통과해도 면접시험에서 모두 떨어지는 데, 이처럼 취업이 어려워 대부분의 혼혈인은 단순노동을 하고 있으며, 편견 때문에 혼혈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일탈하거나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많음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9) 고용상의 학력차별 전문가 간담회

위원회는 기업이나 기관이 고용결정에서 중시하는 학력 및 학벌을 차별사유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고, 학력과 학벌이 어떤 경우에 차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일부 참가자들은 학력의 경우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대학졸업 학력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학력 자체를 차별사유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학벌은 차별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기업측 참가자는 학력은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요소이고 학벌의 가치를 따지는 것은 경영자의 몫이므로 학력 및 학벌을 차별사유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기업이 채용 시 학력을 고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며 직무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력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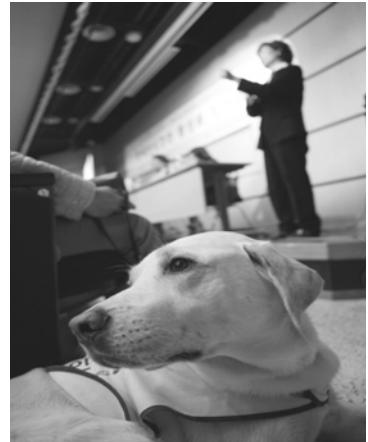


(10) 장애인 보조견 활성화 토론회

위원회는 현재 정부가 장애인 보조견의 육성을 전적으로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어 장애인의 보조견 사용이 활성화하지 않고 있다는 학계 및 인권단체의 주장에 주목하여 장애인 보조견 활성화를 위해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 참여한 외국인 발제자들은 자국에서 장애인 보조견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현황, 보조견의 육성 정책과 함께 장애인 보조견 사용자 차별에 대한 규제 실태를 소개하였다. 한편 국내 참가자들은 국내의 장애인 보조견 육성이 열악한 실태와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심각한 차별 실태에 관해 발제하고 토론하였다. 이들은 장애인 보조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장애인 보조견 사용자 차별금지법령의 제정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정부가 장애인 보조견 육성 기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입안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되고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장애인 보조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정책권고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장애인 보조견 활성화 토론회 2005.11.9.

제 3 절 평 가

2005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 여성부의 차별 시정 업무가 위원회로 일원화되면서 19개 차별사유 중에서 성희롱, 용모 등 신체조건, 성적 지향, 출신지역, 학력, 사회적 신분, 가족상황, 전과, 성별 및 장애에 의한 차별 사건이 대폭 증가 추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각종 차별문제가 일시에 광범위하게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용모 등 신체조건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다양한 차별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원회는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권고 등을 통해 피



해자를 구제하고 차별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둘째, 위원회법에 명시된 19개의 차별사유 중 사회적 신분에 대한 진정이 전년도 대비 215%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한 차

별문제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위원회 또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조사과정 중 당사자간 합의종결을 유도하여 진정을 조기에 평화적으로 해결한 사건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시간제 경마직원에게만 응시연령 제한을 두던 것을 폐지시켰고, 임신으로 인해 해외파견을 취소하였던 조치를 철회시키는 등의 성과를 올림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였다.

넷째, 진정사건도 아니고 직권조사도 결정된 바 없이 위원회가 청계천변 복원 공사에 대해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차원에서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것은 특기할 만한 점이다. 위원회는



청계천변 보도, 산책로의 턱, 자연석 등의 개선, 청계천변의 시발지, 교량 등의 안전시설 등에 대해 조사했고, 그 결과 관련 시설의 개선 또는 강화, 고산자교와 신답철교 사이 경사로에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다리 등을 설치할 것과 공공사업 계획단계에서 장애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등을 서울특별시시장에게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2005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고용 관련 영역의 차별사건이 여전히 가장 많이 접수되는 상황에서 '진정직업자격 등 고용차별 판단기준에 관한 외국 판례 조사'라는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 용역사업의 추진은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위원회법상의 차별 개념 모두 차별을 정의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은 주관적인 판단의 모호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실태조사는 이러한 모호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차별금지 법리를 발전시키면서 고용상의 차별시정에 관한 각종 판례와 지침들을 가지고 있는 영미법 국가들의 법령이나 판례 법리를 소개·도입하였다.

또한 해당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나 요건일 때에만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있다는 '진정직업자격(BFOQ·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진정직업자격 개념이 차별개념의 모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몇몇 영미법 국가들과 유럽연합의 판례 법리를 검토·분석함으로써 차별판단기준 정립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런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진정사건 처리에 역량이 집중되어 차별시정 업무에 대한 직권조사 및 실태조사의 적극적 활동이 다소 미흡하였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위원회는 2006년에 조직을 팀제로 전환하여 분위기를 일신함에 따라 차별시정 업무 총괄 기관으로서 차별사유별 차별판단지침을 마련하고, 관행적인 차별행위 진정에 대한 적극적 조사와 구제업무를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팀제 개편의 취지에 맞게 팀별 기능이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는 직권조사 및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차별 관련 정책·법령·제도·관행의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제 5 장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1절 개 요

인권은 자신의 권리를 깨달아야 누릴 수 있는 것이므로 인권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인권 교육은 그 자체로 하나의 권리라 할 것이다.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과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여 개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이 존중되고 여러 형태의 침해나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인식에서 인권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인권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인권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권교육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고, 인권NAP 권고안에 인권교육 분야를 포함시켰으며 사이버인권교육 기반의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학교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 인권교육 실천사례 공모 및 문예작품 공모, 교사 인권교육 역량 강화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공공분야에 대한 인권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검찰·경찰·교정공무원에 대한 인권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점차 일반 행정분야 공무원까지 그 대상을 넓히고 있다. 특히 2005년에는 군대 인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군 인권감수성 연수과정을 운영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그간의 업무경험 및 성과를 토대로 인권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인적·물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인권교육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

(1) 인권교육 제도화 추진

위원회는 인권교육의 법제화를 위해 국내외 사례 수집 및 간담회 개최, 국내 입법 동향 분석 등 기초작업을 추진하였다. 인권교육의 법제화는 학교·공공·시민사회 등 각 분야에 필요한 경우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화가 완료되면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원회는 학교부문 인권교육, 공직 종사자 인권교육, 시민사회 인권교육 등 대상별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인권NAP 권고안에 인권교육 분야를 [표 2-5-1]과 같이 마련하였다.

[표 2-5-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중 인권교육 분야 권고안

부문	국가정책방향	핵심추진과제
학교부문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증진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정규 교육과정과 모든 교과에 인권내용 체계적 통합·편성 ·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개발·보급 ·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교원양성·연수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 인권교육 연구기반 조성
공직 종사자	공직자의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해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공직종사자 교육훈련기관에 인권과목 및 인권과정 개설로 인권 교육 의무화 · 법 집행공무원 및 법률가 등 양성과정에 인권교육 강화 및 선발 시험에 인권내용 포함 · 효과적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 보급 · 군대 및 준군사조직에서 인권교육 활성화
시민사회	인권이 중심가치가 되도록 대중 홍보강화 및 각 분야의 인권교육 활성화	·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와 시민사회의 인권 교육 지원 강화 · 기업대상 인권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인권단체 및 평생교육기관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대중매체 및 인터넷을 활용한 인권홍보 강화와 언론인의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2) 사이버 인권교육 배움터 개통을 통한 상시적 인권학습 환경 조성

위원회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쉽고 인권에 대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 인권교육 배움터(<http://edu.humanrights.go.kr>)를 2005년 9월 15일에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 인권교육 배움터는 인권배움터, 인권지식터, 인권체험터로 구성되어 있다.

[표 2-5-2] 사이버 인권교육 배움터 구성

구 분	목 적	구 성 내 용
인권배움터	교수, 학습	공통전문교육(1) : 인권의 이해 선택전문교육(4) : 경찰과 인권, 검찰과 인권, 교도관과 인권, 행정과 인권 학교인권교실(5) : 교과서의 인권이야기, 사회적 약자의 이해, 노인인권, 아동권리의 이해, 아동인권
인권지식터	지식정보 제공	지식검색, 인권용어 해설, 인권지식 Q&A, 인권위 생산자료 제공
인권체험터	인권감수성 증진	인권전시관, 인권문예작품, 개인전시실



사이버 인권교육 배움터 <http://edu.humanrights.go.kr> 중 어린이 청소년 인권교실

또한 위원회는 사이버 인권교육 배움터를 활용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연수과정을 위탁운영(사회적 약자 이해과정, 아동권리 이해과정, 총 265명 이수)하였고, 장애차별 예방과정 및 성차별 예방과정을 개발하고 사이버 학습관리시스템 및 인권정보 DB를 보강하는 등 콘텐츠 및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 발전시키고 있다.

[표 2-5-3] 사이버 인권교육 배움터 방문 및 접속자 현황

항목 \ 기간	2005.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방문자 수	894	1,736	1,285	1,223	5,138
콘텐츠 접속현황	524	851	778	362	2,515

(3) 학교, 공공·시민 인권교육전문위원회 구성 및 인권단체·전문가와 협력 기반 마련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심의·의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인권교육전문위원회 및 공공·시민 인권교육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학교, 공공·시민 인권교육전문위원회는 학계, 관련분야 및 단체의 인권교육 전문가 등 외부위원과 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또한 인권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집행 및 평가 등 각 사업단계에서 인권단체 및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인권단체·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4) 인권교육의 개념 및 방향 정립

위원회는 인권교육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데 따른 혼란을 줄이고 인권교육과 인접교육과의 연계성, 차별성을 명확히 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인권교육의 개념 및 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교육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및 인권교육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수차례의 기획 회의를 통하여 인권교육은 인권감수성, 인권존중의 문화 정립 및 실천과 권리의식 함양 등이 다양하게 포괄되는 개념임을 천명하고 그 원칙으로 권리로서의 인권교육, 현장성과 맥락성,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이 함께하는 교육, 사회적 약자와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교육, 친인권적 교육환경을 통한 교육, 그리고 인권친화적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위원회는 본 연구 결과를 인권교육기본법(가칭) 제정 및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 등 인권교육 전반에 반영할 예정이며, 다양한 사회 영역과 시대상이 인권교육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인권교육의 개념을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역동적인 교육 방향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2.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1) 교원 인권연수과정 운영

위원회는 학교분야 인권교육 확대 방안으로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통합학급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과정을 운영하였다. 연수과정은 초등분야, 중등분야 각 2회씩 실시하고 관리자(교장, 장학관)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워크숍은 전체적으로 학습자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학습자 주도형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관리자 대상 워크숍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교육기간 내내 휠체어를 이용하게 하는 등 장애체험을 통한 인권감수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통합교육 관리자 워크숍 2005.11.10.

[표 2-5-4] 초·중등학교 통합학급 교원 및 관리자 연수과정

구 분	대 상	인 원	교 육 기 간	주요 프로그램
1차	초·중등 교사	67	2005.7.25 ~ 7.29	· 인권의 이해 · 소수자 인권의 이해 · 내 안의 차별과 이별하기 · 통합교육의 현실 · 나의 인권매뉴얼 등
2차	중·중등 교사	64	2005.8.1 ~ 8.5	
관리자 워크숍	교장, 장학관	32	2005.11.10 ~ 11.11	· 정서적·체험적 장애인 이해 · 갈등을 해결하는 평화 대화 익히기 · 희망찾기, 실천약속 만들기

(2)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

인권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 체험 활동 전개 등 친인권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4년 3월부터 2년간 대평(부산), 송도(인천), 오리(경기 성남), 쌍용(충남 천안), 의령(경남 의령)의 5개 초등학교를 인권교육 연구학교로 지정, 운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학교 운영



인권교육 연구학교 인권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생 교사 워크숍 개최(2.21~23), 학교별 보고대회(5~11월), 종합보고대회(12.6~7)를 개최하여 연구학교 운영 성과를 가시화, 체계화하였다. 위원회는 2년에 걸친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전 구성원(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인권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의 지역적 확산, 학교별 교과활동·재량활동·특별활동 등 다양한 인권교육 학습자료 개발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



(3) 초·중·고등학교용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자 해도 다양하고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교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학교 인권교육과정안을 마련해 학교 급별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오고 있다.

2005년에는 각 교육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용 인권교육 교재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를 보급하였고, 중학교용 <인권, 누구에게나 소중해요>, 고등학교용 <사람이 곧 하늘이다>를 발간해 2006년에 각급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표 2-5-5] <인권, 누구에게나 소중해요> 구성

대영역	세부 프로그램 제목	내 용
인권을 만들어낸 이야기	인권의 긴~긴 역사	인권의 의미와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
	인권 인물 사전 만들기	인권확립을 위한 역사적 인물 알기
	세계인권선언을 만든 그 날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 이해하기
	인권을 위한 기관을 찾아서	인권 관련 다양한 기관 이해하기
'자유권' 적 인권이야기	내 생각, 내 신념, 내 표현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해주세요	사생활에 대한 권리
	나의 종교	종교의 자유
	내가 만드는 참정권	정치 참여권
'사회권' 적 인권이야기	나의 일, 아르바이트?	근로의 권리, 노동권
	복된 삶을 위해	복지권, 사회보장권
	에듀토피아를 꿈꾸며	교육권, 교육의 자유
	밥과 함께 장미를	문화권
'집단권' 적 인권이야기	환경, 우리 모두의 것	환경권
	난민, 우리를 기억해주세요	난민의 구제받을 권리
	평화로운 지구를 원합니다	평화권

대영역	세부 프로그램 제목	내용
약자들의 인권이야기	우리 모두는 잠재적 장애인	장애인의 삶과 권리
	소외된 우리, 노인의 삶	노인의 삶과 권리
	노숙자의 고단한 하루	노숙자의 권리
	국제결혼 2세들의 이야기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2세들의 차별과 그들의 권리
	나는 이주노동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이주노동자들의 차별받는 삶과 그들의 권리
내가 만드는 인권이야기	내가 생각하는 인권	학생 스스로 인권에 대한 개념 정립하기
	나의 인권감수성은?	인권 친화적 태도에 대한 점검과 이해
	스스로 만든 내 인권선언	인권에 대한 선언을 통해 내면화
우리가 만드는 인권이야기	인권문제를 찾아서	주변의 비인권적 반인권적 문제 찾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인권문제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찰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	인권문제 개선방법 논의하기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인권문제 개선방법 실천 및 결과 보고하기

[표 2-5-6] <사람이 곧 하늘이다> 구성

단원	주제	내용
도입(1H)	사람, 인권, 인권교육	인권개념 이해, 인권교육 목표를 표현하고 프로그램의 흐름 파악
1(5H)	내 안의 하늘 찾기	인간의 존엄성·평등성을 역사, 문헌, 마음속에서 찾기
2(5H)	헌법 속의 인권규정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에 대해 알아보고 인권을 보호하고 지켜가는 방법 학습
3(5H)	현실과의 대화	현실 속에서 충돌하는 인권에 대한 적용 원리 학습
4(5H)	원탁토론 '어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인권 차원에서 살펴보기
5(5H)	소시오드라마 '인권'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역할극을 통해 인권문제를 내면화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권보호·보장 노력
6(5H)	우리가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인권세상을 만들기 위한 참여방안 탐구
맺음(1H)	인권 100%를 향하여	소감을 나누고 인권존중을 위한 각오



(4) 인권교육 실천사례·문예작품 공모

위원회는 2003년부터 인권교육 실천사례 및 인권 문예작품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인권교육 실천사례 공모사업은 학교 교육현장 및 인권 관련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의적인 인권교육 실천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보급하여 인권교육 확산에 기여하고, 시민단체 인권분야 현장 교육활동가들과 인권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여 인권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2005년에는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가자격을 중전 초·중학교 교원(개인)에서 기관 및 시민단체 활동가·단체로 확대하였고 공모 범위도 중전 위원회 교육자료의 활용 외에 인권친화적 교육여건 개선사례, 인권단체에서 운영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실천사례로 넓혔다.



그 결과 학교 19편, 시민단체 4편 등 총 23편의 실천사례가 접수되어 학교 부문과 시민단체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어린이들에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권감수성을 함양하고, 플래시·디지털 카메라 사진 등을 통해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인권교육 매체 개발 등을 위해 매년 인권 문예작품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문예작품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플래시·디지털 카메라 사진은 대상 제한이 없이 공모하고 있다. 2005년에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주제로 한 공모에 총 567편이 응모하였다. 인권교육 실천사례 및 문예작품 최우수상 수상작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5-7] 인권교육 실천사례 및 문예작품 수상작

인권교육 실천사례	인권문예작품		
	부 문	제 목	수상자
임명진(아산 도고중학교 교사) <인권이 숨쉬는 교실에서 쑥쑥 자라는 어린이> * 시민단체부문은 최우수상 없음	독후감	2더하기 2가 4인 까닭은?	선예은(인천 굴포초 5)
	편지	레이 팜 아저씨께	변찬은(원주 단계초 6)
		이주노동자 인권도 우리와 똑 같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김새롬(부산 덕포여중 2)
	동시	내가 좋아하는 태국아저씨	전대원(목포 북교초 3)
	표어	피부색은 다르지만 마음 열면 우리친구	이혜진(원주 단계초 6)
	그림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임경태(인천 남촌초 6)

3. 공공부문 인권교육 확산

(1) 공무원 교육기관 인권강좌 확산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 집행 공무원 등 공무원의 인권의식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법무연수원에서는 135개 교육과정에 인권과목을 정규화하였고, 경찰 관련 연수원에서도 54개 교육과정(247회)에 인권과목이 포함되는 등 법 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사회복지 인권지도자 과정(3박4일)이 개설되고 모든 사회복지 전문과정에 인권과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분야에서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위원회는 인권강사단 구성·운영을 통해 검찰·경찰·교정 등 법 집행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76회(경찰 48회 5,546명, 검찰·교정·출입국 등 28회 1,199명)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위원회 방문프로그램을 통해 총 12회 655명이 위원회를 방문하여 이들의 인권감수성 향상 및 위원회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기회로 삼았다.



한편 위원회는 위원회가 직접 운영하고 강의하는 형태의 인권교육으로는 인권교육의 저변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인권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을 인권교육 강사요원으로 육성하여 자체 인권교육을 전담토록 하고자 [표 2-5-8]과 같이 경찰·검찰·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인권교육 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이를 토대로 경찰청에서는 위원회의 인권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등을 활용하여 1004명의 자체 인권교육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일명 '1004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경찰종합학교에 4박5일간의 자체 인권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경찰 각급학교 교수요원 인권강사 양성과정 2005.6.27.

[표 2-5-8] 법 집행 공무원 등 대상 인권 연수과정

교육과정	인 원	교육기간	주요 프로그램
경찰 각급 학교 교수요원 인권강사 양성과정	20	2005.6.27 ~ 7.1	· 인권교육 관련 지식의 함양 · 인권감수성 및 인권옹호태도 강화 ·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문제 · 효과적인 인권교육 기법
검찰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29	2005.10.18 ~ 10.21	
교정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37	2005.10.11 ~ 10.14	
군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36	2005.12.13 ~ 12.16	· 인간, 인권 그리고 군대 · 인권영화 감상 및 느낌 나누기 · 내안의 차별 및 편견 벗어나기 · 내가 경험한 인권현장 · 군 관련 인권 쟁점 사례 등

(2) 군대 인권교육 추진

2005년에는 육군훈련소 인분사건, 전방GP 총기난사 사건 등 군대 인권이 주요한 사회적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2005.12.13.

이슈로 등장하였다. 위원회는 군대 내 인권신장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구성원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이 중요하다 보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군 인권교육을 위해 ‘군대인권교육 기본계획(3년)’을 수립하였고 수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15회(5,480명) 실시하였다. 특히 최초로 ‘군 인권담당자 연수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육·해·공군 인권전문상담관, 수사관, 교육담당자 등 36명을 대상으로 3박4일(12.13~16)에 걸쳐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군대 인권교육을 위해 군 인권교육 실무협의를 실시하였고, 군 장병(장교, 하사관, 사병) 양성 및 보수과정에 인권강좌 개설을 추진하여 2006년부터 [표2-5-9]와 같이 장병 기본권 과목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표 2-5-9] 군 인권교육 신설 현황

신설과목명	반영사항
장병 기본권	○ 양성과정 - 장교(사관학교, 3사교, 학군교) : 반기 1회 3시간 이상(학사장교는 2시간 이상) - 병, 준·부사관 : 2시간 이상 ○ 보수과정 - 고군반 : 2시간 이상 - 각군대학 : 4시간 이상 - 국방대(안보과정, 합참대) : 6시간 이상 - 부사관 중급 이상 과정 : 2시간 이상 - 대령 장군진급반, 무궁화회의 등 : 1~2시간 ○ 부대 교육훈련 시 반기별 1~2시간 이상 및 수시 기회교육



4.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1) 인권영화 제작 및 보급

가. 세 번째 인권영화 프로젝트 추진

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사전예방과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인권 문화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 2002년 <여섯 개의 시선>, 2004년 <다섯 개의 시선>에 이어 2005년에도 인권영화를 제작했다. 세 번째 인권영화 프로젝트는 홍기선, 김현필, 정윤철, 김곡·김선, 노동석, 이미연 6명의 감독이 참여하였고, 차별을 주제로 한 옴니버스 방식으로 35mm 극장 상영용으로 제작되었다(러닝타임 총 106분).

세 번째 인권영화는 그간의 인권영화 프로젝트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국민의 인권의식을 고양하고 우리 사회 일상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차별문제를 드러내고 나아가 사전예방 효과를 얻고자 한 것이다. 이번 영화에 담고 있는 이야기는 비정규직, 소년소녀가정, 이주노동자, 청소년 성 소수자, 피부색 및 인종차별, 고정화한 남녀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일상화한 차별문제다.

[표 2-5-10] 세 번째 인권영화 제작 현황

	나 어떡해 감독 홍기선 / 16분 40초 비정규직 차별문제에 대한 실제 사례를 극화		BomBomBomB 감독 김곡·김선 / 21분 청소년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실상에 관한 이야기
	소녀가 사라졌다 감독 김현필 / 22분 20초 전기로 체납으로 단전되어 촛불을 켜고 자다 화재로 사망한 소녀가장 선희 이야기		힘난한 인생 감독 노동석 / 15분 어린이들을 통해 우리 사회 피부색 및 인종차별 문제 지적
	잠수왕 무하마드 감독 정윤철 / 16분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우리 사회에 관한 이야기		당신과 나 사이 감독 이미연 / 15분 가정에서 불평등하고 고정화한 남녀의 역할 지적

나. 인권영화 <다섯 개의 시선> 보급



두 번째 인권영화 <다섯 개의 시선>은 2006년 1월 전국 18개 극장에서 개봉될 예정이며 향후 국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이라는 기획 취지에 따라 <다섯 개의 시선>은 극장개봉을 끝내고 DVD 및 비디오 출시, 공중파 TV 및 케이블 TV 방영, 인터넷 상영, 모바일 서비스, 국내외 영화제 초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급될 계획이다.

한편 <다섯 개의 시선>은 제작 직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각급 교육기관의 교재와 공무원 교육용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표 2-5-11] <다섯 개의 시선> 국제영화제 초청 현황

영화제 이름	시 기	장 소	비 고
제6회 전주국제영화제	2005. 4.	한국 전주	
제24회 밴쿠버 영화제	2005. 9.	캐나다 밴쿠버	
제10회 부산 국제영화제	2005. 10.	한국 부산	
제49회 타임즈비엔프라이런던영화제	2005. 10.	영국 런던	
제19회 싱가포르국제영화제	2006. 4.	싱가포르	
제8회 서울여성영화제	2006. 4.	한국 서울	<언니가 이해하셔야 돼요> 초청
제22회 LA아시안퍼시픽 영화제	2006. 5.	미국 로스앤젤리스	

다. 인권 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 보급



<별별 이야기> 중 - 그 여자네 집



<별별 이야기> 중 - 낮잠



<별별 이야기> 중 - 동물농장



인권 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는 2005년 9월 전국 16개 극장에서 개봉되어 언론과 문화예술계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제작 취지에 맞게 일반 국민이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극장개봉을 시작으로 비디오 및 DVD 출시, TV 방영, 인터넷 상영, 각종 영화제 초청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다. 또한 각급 학교의 수업시간, 대학교의 인권강좌 시 수업용으로 활용, 청소년 문화제, 대학교 문화축제 등에서 꾸준히 상영되고 있으며, 2006년에는 다양한 보급경로를 통해 접근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표 2-5-12] <별별 이야기> 국내외 영화제 초청 현황(2005년 12월 현재)

영화제 이름	시 기	장 소	비 고
제6회 전주국제영화제	2005. 4.	한국 전주	한국영화의 흐름
제24회 밴쿠버영화제	2005. 9.	캐나다 밴쿠버	경쟁부분 초청
제17회 자그레브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2005. 10.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경쟁부분 초청
제8회 강릉인권영화제	2005. 12.	한국 강릉	폐막작 상영
제6회 장애인영화제	2005. 10.	한국 서울	폐막작 상영
제3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2005. 11.	한국 서울	<육다골대녀> 초청상영
부산인권문화제	2005. 11.	한국 부산	개막작 상영
제10회 원주인권문화제	2005. 12.	한국 원주	폐막작 상영
제4회 대구·경북 장애인인권영화제	2005. 12.	한국 대구	개막작 상영



<별별 이야기> 중-사람이 되어라



<별별 이야기> 중 - 자전거 여행



<별별 이야기> 중 - 육다골대녀

(2) 인권만화 제작 및 활용

가. 인권만화집 <사이시옷> 제작



위원회는 ‘차별’과 ‘인권’의 문제를 담은 인권만화집 <사이시옷>을 제작하였다. <사이시옷>은 2002년 <십시일反>에 이은 두 번째 인권만화집으로 손문상, 이애림, 장차현실, 홍윤표, 오영진, 정훈이, 유승하, 최규석 8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2006년 1월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나. 인권만화 <십시일反> 활용

2002년 위원회가 기획·제작한 인권 만화책 <십시일反>은 2003년 8월 초판 5,000부를 시작으로 2006년 1월 현재 17쇄(총 69,500부)를 발행, 2년 가까이 일선학교 등에서 인권홍보 및 교육용으로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

[표 2-5-13] 인권만화집 <사이시옷> 내용

작가	제목	내용	비고
손문상	비정도시 등	비정규직	만평, 극화
이애림	그는	성적 소수자	극화
장차현실	여배우 은혜	장애	극화
홍윤표	이상한 나라의 흥대리	직장 내 차별 등	극화
오영진	새대가리	청소년	극화
정훈이	해리포터와 호구왔다 마법학교	청소년	극화
유승하	축복	비혼모	극화
최규석	창	군대와 차별	극화



(3) 인권사진집 <어디 핀들 꽃이 아니라> 제작

현장기록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인권현실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사진’



매체의 장점을 살려,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문화적 접근을 시도한 두 번째 사진집 <어디 핀들 꽃이 아니라>를 제작하였다.

<어디 핀들 꽃이 아니라>는 위원회법에 명시된 차별 유형 중에서 비정규직, 장애, 국제난민, 중국동포, 보호시설의 정신 장애인, 산간벽지의 여성들, 조손(祖孫)가정의 아이들을 주제로, 김문호 김중만 노익상 박여선 성남훈 이갑철 이규철 임종진 최항영 한금선 10명의 사진작가와 공선옥 방현석 이문재 조병준 4명의 글 작가가 참여해 제작되었다.(2005년 12월 현실문화연구 간행)

[표 2-5-14] 인권사진집 <어디 핀들 꽃이 아니라> 작가별 내역

작가명	제 목	내 용
김문호	기대어 선 가족들	장애인 가족들이 모든 짐을 떠맡고 있는 현실을 기록
김중만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내일이다	다양한 직종에 걸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표현
노익상	촌 여자의 굽이굽이 이야기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산골 벽지 여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박여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던진 질문	정규직 노동자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현장을 기록
성남훈	엄마, 저어 오네에	한 초등학교 분교에 다니는 아람이를 통해 부모 없이 할머니에게 맡겨져 자라는 조손(祖孫)가정 어린이의 현실을 소개
이갑철	촌아 울지 마	초등학교는 폐교되고, 남은 사람은 오직 노인들뿐인 농촌의 심각한 소외 현상에 주목
이규철	유민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코리아드림을 찾아 가리봉동에 밀집해 있는 중국동포들의 삶을 다루고 있다.
임종진	그곳엔 우리의 누이들이 산다	한국으로 시집온 아시아 여성들의 애환과 희망을 담았다.
최항영	두 개의 벽, 두 개의 문	아프리카 지역에서 입국한 ‘검은’ 난민 신청자들이 머물고 있는 보호 시설을 찾아 인종차별의 현실을 담고 있다
한금선	꽃무늬 몸뻐, 막막한 평화	한번 입소하면 쉽게 나가지 못하는 보호시설의 정신장애인들의 일상을 통해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4) 인권 포스터 활용



위원회는 2004년 차별을 주제로 한 16점의 포스터를 제작하였다. 포스터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단 한 장에 압축하여 함축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시각적 효과가 뛰어나고, 장소의 제약이 없어 2차적 활용도가 높아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

2005년에는 광주일곡도서관, 전주국제영화제, 부산민주공원 등에서 전시되어 많은 사람의 시선을 끌었으며, 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인권> 뒷면 표지에 월별로 게재하고 일선학교에서 전시 및 수업자료용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5) 월간 <인권> 발간

위원회는 2003년 8월 위원회 활동 홍보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정기월간지 <인권>을 창간해, 그동안 위원회 소식과 우리 사회의 주요 인권현안을 취재, 기고, 인터뷰, 만화, 사진 등의 형식으로 제작해 배포했다. 월간 <인권>은 인권 전문가(335), 시민단체



(413), 도서관(3,338), 국가기관(10,625), 언론(1,184), 기타(8,827), 정기구독신청자(3,899) 등을 대상으로 매월 약 29,000부를 발송했다(2,000부는 배움터 방문객 및 직원 등에 배포). 또한 위원회는 웹진 <인권>으로 온라인을 통한 인권홍보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시각장애인의 인권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를 제작했다.



[표 2-5-15] 월간 <인권> 주요 내용

호 수	특집(기획)	인권이 만난 사람	기타 주요 기사
2005.1월호 (통권 17호)	"너, 몇 살이냐?"	『독색평론』 발행인 김종철	길에서 만난 세상 - "한국 죽겼어요"
2005.2월호 (통권 18호)	인권과 기념일이 만날 때	하자센터 조한혜정 교장	세계의창 - '외교'만 있고 '인권'은 없다
2005.3월호 (통권 19호)	호주제, 폐지를 기념함	간디학교 양희규 교장	직원수기 - 성폭력 피해자의 또 다른 상처
2005.4월호 (통권 20호)	정신과 시설의 인권	이돈명 변호사	시선 - 편견이 불치병이다
2005.5월호 (통권 21호)	다시, '인권'이 기준이다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김동춘 교수	길에서 만난 세상 - "보안 관찰법은 낮이고 높거든"
2005.6월호 (통권 22호)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세진이 엄마 양정숙	휴먼필 - 흑룡강성에서 온 여자
2005.7월호 (통권 23호)	성차별 · 성희롱 이제 국가인권위로 오세요	한울노동문제연구소 하종강 소장	길에서 만난 세상 - 코시안, 그리고 그의 엄마들
2005.8월호 (통권 24호)	말 속에 담긴 인권	사진작가 박영숙	휴먼필 - 피부색과 돈
2005.9월호 (통권 25호)	무척 '식상한' 명절이야기	재심으로 간첩 누명 벗은 함주명	세계의창 - 시각장애인과 버스기사가 맞잡은 손
2005.10월호 (통권 26호)	차상위 계층, 가난의 바깥에서 떠돌다	일반학교 최초 시각장애인 교사 공광우	길에서 만난 세상 - 내 몸에 자유를 허하라!
2005.11월호 (통권 27호)	대한민국의 성적 소수자들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박원순	세계의창 - 장애현실, 아 직도 배가 고프다
2005.12월호 (통권 28호)	우리도 버스를 타고 싶다	민가협 임기란 여사	현장 - 아이들, 인권과 친구 되다

(6) 인권 광고 캠페인 전개

위원회는 2004년 일반 국민의 차별감수성을 제고하고 인권을 홍보하기 위해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 없는 세상이 보입니다’라는 주제로 TV 캠페인을 제작, 방영했다. 2003년 위원회가 기획·제작한 인권사진집 <눈.밖에.나다> 중 ‘Another Korean’에 실린 1세대 혼혈인들의 사진을 배경으로 “단지 피부색이 다를 뿐, 나는 한국인”이라는 혼혈인 배기철씨의 독백을 얹어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광고는 높은 호소력으로 광고 포털사이트(www.tvcf.co.kr)에서 네티즌들이 뽑은 베스트광고 1위에 선정(2004.12.27~2005.1.31 현재)되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미디어 다음’에 ‘인권위 TV광고 잔잔한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고, KBS 2TV <VJ특공대>에도 광고내용과 광고에 출연한 배기철, 안성자, 박근식 등 혼혈인의 삶이 보도되었다.

위원회는 2005년에도 2004년에 진행한 TV 캠페인을 연이어 전개함으로써 신규 제작비용을 절감하고 연속 노출을 통해 캠페인 효과를 높였다. 또한 총 1,828개의 광고작품이 출품된 CF 전문 광고제 ‘TV CF AWARD 2005’에서 ‘공익 광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는 위원회 광고의 질적 우수성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

(7) 위원회 홍보 브로슈어 제작

위원회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활동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소개하는 브로슈어를 2004년에 제작해 배포했고, 2005년에는 국문판 1,000부를 업데이트 제작해 배포했다. 브로슈어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국제회의 등) 참가자와 인권 교육 수강자를 대상으로 배포했으며, 해외 인권기구 방문 시 위원회 홍보자료로 활용됐다.

5.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 홍보

위원회는 2005년 한 해 동안 총 180건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 보도자료는 언론사



사회부(64곳), 논설위원실(19곳), 시민단체(215곳) 등에 배포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및 정부부처 등에도 배포되었다. 2005년의 경우 위원회 활동 경험에 축적되면서 권고에 대한 단순 질의보다 우리 사회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인터뷰 요청이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 건수는 2004년 179건이었으나 2005년에는 230건으로 늘었다. 안정된 브리핑 제도 도입을 통해 위원회 활동과 권고의 의미 등을 심층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홍보 기회를 확대했는데 2005년에는 총 24회의 주요 사안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됐다. 이 밖에 외국 언론기관 및 해외 인권단체에 위원회 활동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중요 보도자료를 영어로 번역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

2005년의 경우 위원회의 축적된 자료를 활용한 기획홍보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신문>과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길’(7~9월, 10회), <동아일보> ‘한센인 인권’(6월, 2회) 등 언론사와의 공동기획 추진, MBC라디오 <여성시대> ‘위풍당당 영자씨’(7월, 4회), <내일 신문>, <우먼타임즈> 기획대담 등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관련 기획홍보를 추진했다. 한편 지역순회 인권활동 과정에서 지역 언론 기고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또한 위원회는 KBS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순천KBS라디오 <시사 레이더> 등에 ‘인권브리핑’ 고정 코너 진행을 통해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홍보하기도 했다.

제3절 평 가

2005년에는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인권교육 수요가 검찰·경찰·교정 등 법 집행 분야에서 군인, 일반 행정공무원, 다수인 보호시설 등 각 분야로 확산되는 등 인권교육이 활성화하였다.

위원회는 각 분야의 인권교육을 뒷받침하고 활성화하고자 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인권교육 분야 권고안 마련, 군대 인권교육 기본계획(3년) 수립, 사이버 인권교육 개통·운영 및

콘텐츠 확충, 인권교육개념 및 방향 정립, 학교 및 공공·시민인권교육전문위원회, 인권단체·전문가 등과 협력기반 구축 등 인권교육의 체계적·종합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였다.

또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법무부, 국방부 등 각 기관과 협의해 해당 기관의 교육과정에 인권과목 개설을 추진하는 등으로 자발적 인권교육 체제가 마련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교사, 경찰, 군인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직접 운영하면서 학습자 주도의 참여형 교육을 통해 인권교육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인권교육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특히 그간 인권교육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군대 인권교육을 위해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최초로 '군 인권담당자 연수과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으며 군 양성·보수과정 내에 인권강좌가 개설되도록 하는 등 군 인권교육을 활성화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평가된다.

한편 교원연수와 학교관리자(교장·장학관) 워크숍을 연계 운영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함으로써 인권적 관점의 통합교육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2년간 인권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한 결과,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인권교육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다양한 인권교육 학습자료 및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인권교육에 관한 현행 법제도와 조직으로는 인권교육의 확산과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보며 따라서 인권교육의 확산 및 지원을 위한 법제화, 전문적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원의 설립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한편 사이버 인권교육은 이용자를 유인할 수 있는 콘텐츠의 보강 및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본다.

공공부문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권강사 양성과정에 심화과정을 도입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군대 인권교육도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심화해야 하고, 일반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인권교육 체계를 갖추는 것도 위원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사업은 2005년 한 해 동안 인권



영화 <세 번째 시선>, 만화 <사이시옷>, 사진 <어디 핀들 꽃이 아니라>를 개발했다. 인권 영화 <세 번째 시선>은 인권프로젝트의 세 번째 실사영화이며, 만화와 사진은 각 두 번째 프로젝트이다. 인권영화 <여섯 개의 시선>으로 시작된 인권문화 프로젝트는 새로운 발상과 기획력의 성과라는 초기의 호평에 머물지 않았다. 일회적 반짝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신뢰감을 확보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널리 인권교육 및 홍보에 사용될 콘텐츠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콘텐츠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물량적으로도 확보해야 할뿐더러 그 내용과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기획하여 향후 몇 년 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문화 아카이브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2005년 9월, 2년간에 걸쳐 제작된 인권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가 개봉되었다. <별별 이야기>를 시사회를 통해 본 일선교사들이 관람 자체가 인권교육이 되겠다는 판단을 하여 개봉 당시 극장에서 인권수업을 실시한 초중고가 늘어나기도 했다. <여섯 개의 시선> (2003년 11월 국내개봉)은 2005년 1월 일본 개봉에 이어 프랑크푸르트 주빈국 행사에 초대받아 독일 전역을 돌며 상영되었다. <다섯 개의 시선>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월드프리미어로 상영한 후 2006년 1월 개봉을 앞두고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 호평을 받았다. 2003년 여름에 발간된 <십시일反>은 2005년 한 해도 꾸준히 쇄를 거듭하여 발간되는 등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재로 사용되었으며 학생들에게 감상문 숙제 도서로도 인기가 높았다.

또한 차별감수성 제고를 위한 TV캠페인을 하고 위원회 소개 브로슈어를 제작해 배포했다. 또한 발간 3년차에 들어선 월간 <인권>도 인권 현장, 인권 현안분석, 인권 정보 등을 담아 국민의 인권감수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다.

또한 2005년 한 해 동안 위원회의 활동 및 결정내용을 신속하게 보도자료로 작성해 언론 기관과 시민단체에 배포함으로써, 위원회의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언론기관과 함께한 기획보도로 다양한 언론홍보를 추진했다.

제 6 장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제 1 절 개 요

위원회 탄생의 모태가 된 1993년 유엔 비엔나 회의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은 그 운영 원칙 중 하나로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지역단체 및 민간단체와 협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정신을 반영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는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을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적인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권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2005년은 한국사회의 주요 인권 현안으로 떠오른 비정규직 관련 법안 문제,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른 북한인권 문제, 장애인 인권, 인분 사건으로 불거진 군대 내 인권문제 등에 대해 인권단체의 활동이 특히 두드러진 해였다.

위원회로서도 2005년은 제2기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인권단체와의 협력강화를 천명하며 실질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 한 해였다. 위원회는 2005년에 정책간담회, 분야별 간담회 및 방문조사, 실태조사에 단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2003, 2004년에 이어 ‘민간경상보조금사업’ 및 ‘시민실천 프로그램개발 용역사업’을 인권단체와 공동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고, ‘인권활동가 인권강좌’ 등을 개최함으로써 인권단체들과의 실질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제 2 절 주 요 추진실적

1. 인권단체와 협력 강화

(1) 공동 협력사업 추진

위원회와 인권단체의 공동 협력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사업’과 ‘시민실천 프로그램개발 용역사업’을 전년도에 이어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이 사업은 인권단체 및 활동가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통해 특화된 인권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한 여건 조성은 물론 인권의식을 널리 확산시키고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특히 2005년에는 사업의 투명성 및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했으며, 사업 참여 단체 및 인권단체들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내실화하였다.

인권단체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사업’으로 2005년에는 20개 단체를 선정, 총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지원사업 분야는 △인권 신장을 위한 새로운 분야의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국제 기구 및 단체 등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 △국제조약 관련 및 국민적 과급효과가 큰 사업 △지역 연대사업 등 네트워크 구축 효과가 큰 사업 등이다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3년 제정된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가 2005년 2월로 끝난 1기 사업심사위원회에 이어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제2기 사업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함으로써 지원사업 심사·선정·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했다. 지원사업 및 단체는 [표 2-6-1]과 같다.

지원사업 중 우수사례로는 인권실천시민연대에서 수행한 ‘경찰개혁을 위한 연속 정책 토론회’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사업은 경찰 개혁과제에 대해 민간 차원에서 최초로 종합적인 문제를 제기, 주제 대상자인 경찰측을 적극적으로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어 경찰활동 전반을 분야별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한 최초의 토론회로서 그 의미가 컸으며, 경찰



[표 2-6-1] 2005년 인권단체 지원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단 체 명	지원액
1	무학·저학력 성인학습자와 노인 인권교육	가톨릭여성회관	3,700
2	지역 청소년 인권조례 운동을 위한 지원사업	군산YMCA	7,000
3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권 보장 프로그램	노동건강연대	7,160
4	노동인권학교 - 불안정노동과 인권	안산노동인권센터	3,710
5	지역 청소년 인권 신장은 "너무 늦게 시작해서 미안하다..."	여수YMCA	7,000
6	이주노동자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을 위한 기초 실태조사	이주노동자 귀환정착지원 프로그램 개발 컨소시엄	7,900
7	경찰개혁을 위한 연속 정책 토론회	인권실천시민연대	7,430
8	아시아에서 필수약품 접근권 강화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아시아 보건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8,750
9	"잠시만요, 이제 내가 말할래요"	장애여성공감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8,250
10	장애해방을 향한 '전국 장애인 인권 활동가 대회'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연대회의	6,934
11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제1기 부모교육 사업	장애인 참교육 학부모회	6,560
12	'장애인들의 교통과 인권 침해' 시설 비리 문제 연상 다큐멘터리 제작보급	장애인문화공간, 다큐인	8,485
13	비정규직 인권보장 국제 학술대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8,720
14	미군기지 환경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8,520
15	HIV 감염인/AIDS 환자들의 인권증진과 치료접근 확대를 위한 사업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 의료연합	9,810
16	2005 동북아시아 평화 국제회의	평화네트워크	8,216
17	수화통역센터장 및 통역사 인권교육을 통한 연대체 구성	한국농아인협회	8,460
18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창간	한국성적소수자문화 인권센터	8,230
19	빈곤여성 '사회권 확보'를 위한 인권의식 강화 교육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6,705
20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 유족 인권피해 실태조사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8,460
합 계			150,000

개혁 각 분야에 대한 시민적·인권적 관점의 연구자 발굴 및 인력풀 조성에도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수행한 ‘비정규직 인권보장 국제학술대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비정규직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 및 해외 참여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이후 공동 대응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으며, 국내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 논의를 국제적 노동인권기준과 비교하여 검토해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주노동자 귀환정착 지원프로그램개발 컨소시엄의 ‘이주노동자의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을 위한 기초 실태조사’ 사업은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14개 단체가 대상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의미있는 작업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실천 프로그램 개발 용역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하여, 국민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고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자 2003년부터 실시한 사업이다. 2005년에는 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18개 차별 영역에 대한 사업공모를 실시하여 13개 사업(총 1억 2,500만원)을 선정, 추진했다. 특히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2004년 사업운영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수행 단체들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중간발표 및 평가, 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이 조기 정착되도록 했다. 사업명 및 수행단체는 [표 2-6-2]와 같다.

2005년에는 다양한 차별영역을 다루면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장애인 차별고용 개선 사업과 성차별 개선사업,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성소수자 교육사업, 한일교류협력을 통한 외국인노동자 차별방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등 기존 시민운동 방식에 비해 한층 대중적이며 효과적인 방식을 도입, 집행함으로써 다수의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대표적 우수사례로는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의 ‘성차별을 넘어 양성이 행복한 조직



[표 2-6-2] 2005년 시민실천 프로그램 개발 용역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단 체 명	지원액
1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차별감시 현장기동대'	전국여성노조 부산지부	10,000
2	군대 내 종교차별 개선 군종장교 임용 차별 개선	원불교인권위원회	9,500
3	주민참여를 통한 통합놀이 조성 및 장애인 인권증진	장애인편의시설 촉진시민연대	9,350
4	고용상의 남녀차별 및 비인격적 대우에 대한 상담 및 지원활동	서울여성노동조합	10,000
5	세상과 호흡하며 친구들의 차별의식을 개선하는 인권지킴이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8,280
6	성차별을 넘어 양성이 행복한 조직 문화만들기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	9,890
7	체벌 없는 세상을 만드는 시민들의 모임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8,800
8	장애인의 교육차별에 대한 사례집단 운영사업	노들장애인야간학교	9,330
9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4컷만화 전시회	자립생활센터 프랜즈케어	6,700
10	다문화공존 사회문화 구축을 위한 교육사업	지구촌나눔운동	10,600
11	올바른 성정체성 교육실현과 성정체성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동성애자인권연대	13,740
12	청소년 동성애자 차별방지 프로그램	한국남성동성애자 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9,850
13	이주노동자와 더불어 지역주민 인권 찾아가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8,960
합 계			125,000

문화 만들기를 꿈꿀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진행됐으며, 양성 평등문화 만들기 매뉴얼 전자책 제작, 양성이 행복한 조직 우수사례 발표회



프랜즈케어가 수행한 장애인고용 인식개선을 위한 4컷만화 전시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프랜즈케어의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사업은 장애인의 노동을 통한 사회참여를 주제로 이론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 고용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4컷 만화를 공모하여 시상하고 전시회를 개최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해 한층 쉽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사업의 참신성이 뛰어난 사업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올바른 성정체성 교육실현과 성정체성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은 올바른 성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수집, 전문가 간담회,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토론회, 예비교사 워크숍, 온라인 자료구축, 참여교육 프로그램 등 내실 있는 사업을 진행하여 완결성이 뛰어난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인권단체와의 정책간담회 2005.3.11.

(2) 간담회 및 업무 설명회 개최

한편 위원회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위한 부문별 정책 간담회를 총 2회, 5개 부문에 걸쳐 개최하여 57개 단체, 80명이 참석했다. 2005년 1월과 3월에는 18개 인권단체 32명, 48개 단체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에 걸쳐 ‘업무설명회’를 열었으며,



상시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하여 총 3회에 걸쳐 53개 단체, 72명이 참석하는 정례모임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광주와 부산에서 ‘지역 인권토론회’를 검찰·경찰·교정, 비정규직, 성차별, 장애인차별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개최하였는데, 88개 단체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 인권실태 파악 및 대안마련을 위한 장이 되었다.

(3) 인권교육 강좌 운영

인권단체들과 공동기획으로 인권단체 상근 활동가의 실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05년에는 사회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여 빈곤분야와 제주지역 활동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총 82개 단체에서 133명이 참석했다. 빈곤분야 활동가교육은 인권단체 활동가 및 사회복지사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강좌로 진행됐다. 또한 제주 활동가 교육에서는 평화와 인권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는데 지역단체간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의 인권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4) 인권정책 토론 활성화를 위한 ‘배움터’시설 개방

위원회는 청사 내의 ‘배움터’를 무료로 개방, 인권단체들이 각종 학술행사,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 여론 형성과 인권운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돕고 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동북아시아 국제이주 국제회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2005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헌법 다시보기 연속 세미나’, 인권 실천시민연대의 ‘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 등 2005년에 총 189회의 행사가 배움터에서 열렸다. 위원회의 배움터는 2002년 개방 이후 2005년까지 인권단체 등에서 총 716회 이용되었다.



무의탁노인 생활보호시설 성우회 방문 2005.9.30.

(5) 인권 취약현장 방문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소수자·약자·소외 계층을 방문해 이들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인권 취약현장 방문이다. 2005년 위원회는 독거노인들이 거주하는 ‘쪽방촌’(서울 창신동), 외국인 학교시설 ‘몽골학교’(서울 광장동), 한센인 집단

취락지(경기 양평군), 이주노동자들의 상담 및 생활보호시설인 ‘외국인노동자의 집’(서울 구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교육시설 ‘하나원’(경기 안성시), 무의탁 노인 보호 요양시설 ‘성우회’(서울 불광동), 무의탁 아동 사회복지시설 ‘삼동 소년촌’(서울 상암동) 등 총 7곳을 방문했다.

(6) 행사 참석 등 교류사업

위원회는 인권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류하고, 상호 협력·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신년하례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장애인인권상 시상식, 아시아 광주인권포럼, 부산인권문화제 등 각종 행사에 100여 회 참석해 사업에 대한 후원과 위원장상 수여, 축사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활동을 했다.



2.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 협력활동

(1) 유엔 국제회의에 적극 참가 및 역할 강화

가.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

위원회는 2005년 3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6주간 개최된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가하였다. 이 기간에 최영애 상임위원 등 약 10명의 우리 대표단은 유엔인권위원회 회의 모니터링, APF(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 회의, ICC(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연례회의, APF 회원국 대표단과 인권고등판무관실 국가기구팀 회의 등에 참가하였다.

한편 4월 7일 회의에서는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이 연설문 ‘In Larger Freedom’을 통해서 회원국에 유엔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 유엔 개혁의 주요 사항은 조약감시기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권한 강화, 인권위원회를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로 대체하는 문제 등으로 모아졌는데, 이 개혁의 의도는 기본적으로 국제인권기구의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의제 18(b)에서 위원회는 최영애 상임위원의 발표를 통해 위원회의 독립적 성격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동안의 활동 중에서 테러방지법 반대, 사회보호법 폐지, 사형제도 폐지 등의 권고 활동을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언급하였고, 또한 국가인권기구의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기구 참여 강화 방안에 관한 논의를 요청하였다.

나. 제57차 인권소위원회

2005년 8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7차 인권소위에서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 문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국제조약의 국내이행,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 인권 현안의 논의와 함께 유엔 개혁안의 구체적 내용과 인권이사회 설립 시 인권소위의 향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인권소위의 테러리즘에 관한 실무그룹회의에서는 테러와 반테러 상황의 인권보호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위원회는 2004년 9월에 개최된 서울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의 서울선언문의 의미와 내용, 개요를 소개했다.

2005년 유엔 주최 회의로는 이외에도 제13차 아·태지역 워크숍(8월), 국제 장애인 권리 협약 특별회의(8월), 인도 사회권 원탁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에는 위원회 대표가 참석했다.

[표 2-6-3] 2005년 국제회의 참가 현황

주관	회 의 명	회 의 목 적	기 간	지 역
유 엔	A규약선택의정서 관련 제2차 실무회의	A규약 성안을 위함	1.9 ~ 19	스위스 제네바
	UNHCR의 네팔인권 개선팀	유엔 주최 인권 관련 지역적 협력 도모	6.29 ~ 7.7	네팔 카트만두
	제61차 인권위원회	APF, IOC 회의 참가 및 인권위원회 모니터링	3.19 ~ 4.17	스위스 제네바
	제57차 인권소위원회	인권소위원회 참석 및 인권문제의 세계 동향 파악	7.27 ~ 8.5	스위스 제네바
	제6차 장애인 특별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안에 대한 논의 모니터링	7.31 ~ 8.14	미 국 뉴 욕
	분쟁예방교육 대면워크숍	분쟁예방을 위한 유엔 주최 교육	9.21 ~ 25	스리랑카 콜롬보
APF	제13차 아·태지역 워크숍	아·태지역의 인권 관련 지역적 협력 도모	8.28 ~ 9.3	중 국 베이징
	제10차 APF 연례회의 및 ACJ회의 참가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와의 상호 협력 체계 강화	8.22 ~ 28	몽 골 울란바토르
	파키스탄 위원회 설립 지원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와 상호 협력 체계 강화	8.26 ~ 9.6	파키스탄
	호주 시드니 APF 사무국 직원교류 프로그램	국가인권기구간 교류협력 및 위원회 국제 역량 강화	05.9.26 ~ 06.3.26	호 주 시드니
NGO	제5회 세계사회포럼	세계사회포럼(WSF) 참가 및 인권 관련 논의 모니터링	1.25 ~ 2.2	브라질
	유럽 EIPA 훈련기관과정	인권위 직원의 능력배양과 전문화	7.31 ~ 8.7	네덜란드



(2) ICC, APF 및 국가인권기구간 협력 강화

가. ICC 회의

2005년 4월 유엔인권위원회 개최 기간 중에 제네바에서 열린 APF 회의에서는 주요 논의 사항으로 네팔 인권상황과 네팔 인권위원회 문제가 상정되었다. 네팔의 상황은 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를 회원기구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고, 모든 회원기구가 네팔 인권 위원회의 호소에 공감하였다. 이 자리에서 네팔 인권위원회 측은 국가비상사태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으며, 위원회는 네팔 인권위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ICC 회의에서는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의 연례보고서, 제7차 세계국가인권 기구대회 및 '서울선언문'의 후속조치, 그리고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결의안 초안이 채택되었다. 특히 호주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가 인권위원회의 모든 의제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 초안을 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결의안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4월 19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그 시행에 관해서는 2006년 제62차 회기까지 최종적으로 정리할 것을 결정하였다.

ICC 회의 프로그램 중에서 주제별 토의로서 '이주와 국가인권기구'가 논의되었는데, 현재 한국에서 40여 만 명의 동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있고 이들이 인권 취약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나. 제10차 APF 연례회의

위원회는 2005년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 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Tenth Annual Meeting of The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연례회의에 의장기구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1996년 설립된 APF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 협의체로 △아·태지역 내 각국의 위원회 설립 및 활동 지원 △회원국간 인권보장과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 및 공동활동 실시 △회원국 인권기구 위원과 직원의 훈련 및 개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APF는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피지, 스리랑카, 몽골, 네팔, 한국 (2002년 11월 가입), 말레이시아, 태국 등 12개국이 정회원국으로 가입돼 있고,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요르단이 준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APF는 매년 총회를 개최하여 아·태지역 인권 향상을 위한 APF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번 제10차 APF 연례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12개 APF 정회원국 및 3개의 준회원국,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APF 사무국 및 참관을 신청한 3개 기관이 참석해 국가 인권기구와 인권교육, 국내 실태, 고문방지과 기타 부당한 대우 등을 주제로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조영황 위원장은 포럼 이사회의 주제 및 APF 회원 활동보고 등 의장직 수행을 마치고 몽골 측에 의장직을 인계하였다.

[표 2-6-4] 국제인권기구 및 외국 국가인권기구 방문 현황

방 문 기 관	방 문 목 적	방문자	방문기간
아일랜드 인권위원회	영국 아일랜드에서 개최된 영연방 국가 인권기구대회 참가 및 아일랜드 인권 위원회 활동상황 및 교류협력 증진	사무총장	1.29 ~ 2.6
이집트 인권위원회	아랍지역 국가인권기구 대회에 참가하여 활동상황 파악 및 교류협력 증진	사무총장 국제협력담당관	3.5 ~ 10
아프가니스탄 인권위원회	아프가니스탄 독립인권위원회 활동상황 파악 및 국제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증진	사무관	11.4 ~ 18
남아공 인권위원회	남아공 인권위원회 활동상황 파악 및 교류협력 증진	예산행정운영과장	11.22 ~ 12.4
덴마크 인권위원회	덴마크 인권위원회 활동상황 파악 및 교류협력 증진	국제협력담당관 사무관	11.27 ~ 12.11

다. 기타 NI(국가인권기구) 관련 회의 참석 및 교류협력

2005년에는 국가인권기구간의 교류협력이 어느 해보다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2월에는 사무총장이 영연방 국가인권기구 워크숍(북아일랜드)에 초청되어, 세계 각국 국가인권기구 사무총장 및 전문가들과 국가인권기구의 역량강화와 상호 협력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 워크숍에서는 위원회와 의회 간의 적절한 관계설정과 관련한 ‘아부자 가이드라인’이 완성되어 관련 의원들에게 설명되었는데, 이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의회 의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아프가니스탄 인권위원장의 내방을 맞아 환담하는 조영황 위원장 2005. 7.18.

이 외에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가 당면한 문제에 위원회가 경험과 전문성을 기초로 도움을 주고 교류한 사업으로

△APF 주최로 개최된 개도국 국가인권기구 직원연수 △ 요르단 국가인권기구 사무총장 방문연수(1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주최한 네팔 인권위 관련 실지조사(6월)에 사무총장 참여 △APF 주최로 개최된 파키스탄 인권위 설립 지원(8월)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 국제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추진된 APF 사무국 위원회 직원 1명 파견(1차 파견)을 비롯하여, 하반기에 추진된 국가인권기구 교환연수에서 아프가니스탄·남아공·덴마크 인권위 방문연수, 그리고 상임위원의 중앙아시아 인권기구 방문 등은 2005년 국제교류사업에서 의미 있는 사업들이었다.

카자흐스탄 위원회와의 교류는 향후 위원회의 국제 활동 영역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고, 나아가서 구 소련지역 고려인의 인권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적으로 추진된 사업 및 국제협력 인프라 구축사업도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특히 고문방지, 장애인권리협약 관련 전문가 및 단체와 협의 채널 구축, 주한외국대사 간담회 개최, 인권현안 여론 수렴(6월, 30여 명), 유엔 인권해설집(Fact Sheet 11종)과 ICC 15개국 인권기구 현황집 등 발간 및 배포, 국제인권 격주간 동향 분석(Human Rights Worldwide) 및 영문 홈페이지 내용 강화 등을 중요한 사업으로 꼽을 수 있다.

[표 2-6-5] 외국기관 및 인사 내방 현황

번호	방문명	일시	방문목적	방문자	비고
1	캐나다 대사관 관계자 방문	1.13	한국의 인권상황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문의 및 의견교환	정치·공보담당 2등서기관 모니카 랍슨(Monica Robson)	캐나다 본국 보고용 자료 준비차
2	요르단 인권위 사무총장 및 APF 관계자 방문	21~5	APF 신규 회원국인 요르단 인권센 터의 모범적 국가인권기구(한국, 인 도) 현황파악을 위한 연수	요르단 국가인권센터 사무총장 알주비(Saleh Al-Zu 'bi), APF 사무국 스테판 클락 (Stephen Clark)	
3	주한 파라과이 대사 위원장 예방	2.25	파라과이 대사 예방	대사 페데리코 알베르토 곤잘레스 프랑코(Federico Alberto Gonzalez Franco), 통역 1인	
4	주한 영국대사 및 주북한영국대사 위원장 면담	3.11	북한인권 관련 정보교환 및 한국 인권위의 활동 관련 논의	주 북한대사 데이비드 슬린(David Slinn), 주한 영국대사 월릭 모리스 (Warwick Morris), 주한 영국대사관 정치참사관	
5	후쿠오카현 인권연구소 방문	3.14	일본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준비임에 따라 한국의 인권위의 설립과정과 현황 파악	소장 모리야마 세니치, 부소장 마소 타쓰오, 언론인(1), 공무원(5), 교사(5), 연구원(3) 및 민간인(3) 등 총 19인	
6	이라크 쿠르드자치 정부 인권부장관 인권위원 면담	4.12	김호준 위원 면담, 양국간 친선 및 쿠르드자치정부 인권부와 한국 인권위와 교류 모색	모하메드 이흐산 (Mohammed Ihsan) 쿠르드자치정부 인권부 장관, 교육국장, 수행비서, 이라크 국영TV관계자 등 4인	
7	주한 독일대사 위원장 면담	5.2	신임 위원장 예방 및 공통점이 있는 양국간 북한인권문제 등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 공유	주한 독일대사 미카엘 가이어 (Mr. Michael Geier), 주한 독일대사관 정치담당 서기관 Ms. Ulrike Wolf	
8	주한 네덜란드대사 위원장 면담	5.31	위원장 면담, 북한인권 관련 논의	주한 네덜란드 대사 반 볼렌호벤(H.E. Radnck J. van Vollenhoven), 네덜란드 외무부 한국담당관 Mr. Robert Dresen	
9	홍콩대학교 법대생 방문	6.8	홍콩대학교 법대 학생 방문, 한국의 인권상황 및 인권위 현황 파악	홍콩대학교 법대 학생 35인 (단장 : 법학회 해외담당 Ms. Elsie Chu)	



번호	방 문 명	일 시	방 문 목 적	방 문 자	비 고
10	일본 이즈미사노시 청년단 방문	6.20	한국의 인권상황 및 인권위 현황 파악	일본 이즈미사노시 청년단 약 10인	
11	5·18 기념재단 주관 재외동포 학생 청년단 방문	7.13	재외동포 학생 민주주의 및 인권 청년단 방문, 한국의 인권상황 및 인권위 현황 파악	독일 등 해외동포학생 및 국내 참가자, 재단직원 43명	5·18기념 재단 주관
12	아프가니스탄 인권위 위원장 방문	7.18	아프가니스탄 인권위 위원장 접견, 강연 및 만찬, 양국간 정보교류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	아프간 인권위원회 위원장 Dr. Sima Samar	국제교류 재단 주관
13	캠벨·한동 로스쿨 연대프로그램 학생 방문	7.20	인권위 현황 설명	미국 캠벨 대학교, 리전트 대학교 및 한동대학교 법대생 14명 (국적은 미국, 베트남, 불가리아, 몽고, 한국 등)	한동대 주관
14	일본리츠메이칸 (立命館) 대학교 국제평화교류 세미나 방문	8.23	한국 인권위 설립배경 및 현황 소개	리츠메이칸 대학교 국제평화교류 세미나 서승 교수 및 교직원, 학생 19명	
15	국제민주법률가 협회장 강연	9.1	국제민주법률가협회장의 위원장 접견, 오찬 및 '인도의 불가촉천민(Dalit)의 현실 및 인도 위원회의 현황' 관련 강연 실시	Mr. Jitendra Sharma (국제민주법률가협회 회장, 인도)	
16	일본 변호사 11명 방문	9.1	한국 인권위 현황 및 인권위법 소개, 일본 인권옹호법 관련 논의, 위원장 접견 및 정책국장 면담 실시	제4회 아·태지역 법률가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키라 이즈미사와 변호사 등 일본변호사 11명	
17	여성의 이주와 인권 관련 해외전문가 강연	9.29	이주여성 관련 아태지역 전문가 2인의 위원장 접견, 오찬 및 '여성의 이주와 인권' 강연 실시	Ms. Renu Fajbhandari (여성재활센터, 네팔), Ms. Lorena D. Macabuag (아시아이주포럼, 필리핀)	
18	아·태지역 장애인단체 활동가 방문	10.20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장애인활동가 초청 연수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체 활동가들이 인권위 방문	아·태지역 6개국 14명의 활동가 및 DPI 직원 2인, 통역1인	한국 DPI 주관, 보건복지부 후원
19	일본 도교변호사회 변호사 방문	11.4	도교변호사회의 '형사구금제도 개혁 실현본부' 소속 회원들로서 한국의 구금시설 전반에 대한 의견 청취 (구금시설 관련 인권위 활동상황 및 계획 포함)	일본 도교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5, 통역 1, 직원 1	정책국
20	Chris Sidoti	11.25	국제인권과 NI	특강	교육협력
21	Mr. Clarence Dias	12.6	국제인권전문가	특강	교육협력
22	Peter Hotchikins	12.12	사형제도 관련 교수 전문가	면담	교육협력

제3절 평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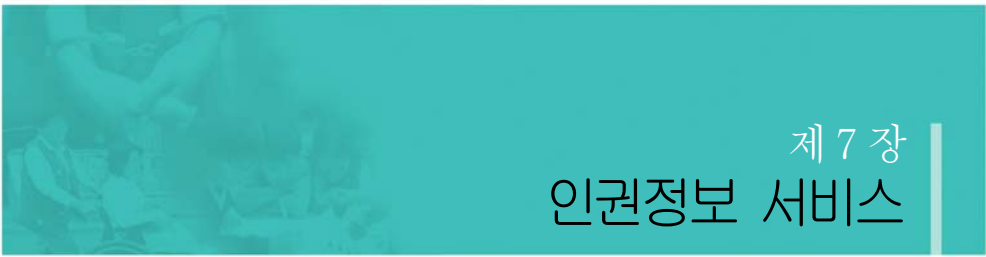
2005년은 인권단체들과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 상시 협력의 기본 체계를 구축한 해로 평가된다. 부문별/부서별 정책간담회, 업무설명회,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과 어울려 정책구상 및 실행단계에서 인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위원회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사업’ 과 ‘시민 실천 프로그램 개발 용역사업’은 인권운동의 활성화 및 국민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했고, 시행 초기의 미비점을 보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이 내실화되었으며 안정적 공동 협력사업으로 정착했다.

지역 순회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인권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했으며, 지역 인권운동 활동가들을 위한 인권교육 강좌 프로그램을 지역단체들과 공동으로 기획·운영하여 활동가들의 실무능력을 높이고, 지역 단체간 상호연대를 도모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2005년에 처음으로 시도된 지역 인권토론회는 지역 인권실태와 대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지역인권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

2005년 한 해 동안 위원회는 인권단체와 실질적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팀제 개편에 따라 단체협력에 대한 각 팀의 실질적인 업무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앞으로 이를 총괄 조정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2005년 국제협력업무는 NI협력, 국제기구협력 및 국제인권 동향분석의 세 가지 범주로 추진되었다. NI협력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적극적 지원으로 APF 의장직 수행, 네팔 및 파키스탄 NI 설립 지원 등과 함께 ICC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추진하는 등 위원회의 국제 교류협력은 업무영역의 확대와 아울러 괄목할 발전을 이뤄냈다. 그러나 국제협력의 양적 확대와 인권문제의 보편화 추세 속에서 위원회는 또한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인권과 관련한 국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 등이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제 7 장 인권정보 서비스

제1절 개 요

위원회는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인권감수성 제고와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을 목적으로 사이버 인권교육 시스템을 2003년부터 구축하였다. 또한, 인권자료실에서는 저시력자 및 약시자의 자료 이용을 돕기 위하여 자료이용 보조기기를 도입하여 현재 인권자료실에서 보유한 장서 및 위원회 결정문, 발간자료, 보도자료 및 접근 가능한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권자료실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와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료실 소장 자료의 대출을 인권 관련 시민·연구·전문가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자료실 방문 이용자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구축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구축 사업은 기존 홈페이지에 음성합성엔진(TTS)을 도입하여 이용자들이 클라이언트용 음성낭독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한국정보통신진흥원, 2004.12.23)을 적용해 사용자들이 위원회 홈페이지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홈페이지에 글자크기의 확대/축소기능, 고대비 기능 등을 적용하여 노인, 약시, 색약자 등도 홈페이지를 좀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http://www.humanrights.go.kr

2. 사이버 인권교육 시스템 구축

사이버 인권교육 시스템은 인터넷상에 인권 교육 콘텐츠를 구축하여 국민, 공무원,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을 함양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을 목적으로 서비스하는 시스템이다. 사이버 인권교육 시스템에서 서비스하는 내용은 인권배움터, 인권체험터, 인권지식터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http://edu.humanrights.go.kr



[표 2-7-1] 사이버 인권교육 시스템 콘텐츠 내용

개발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구 분	공통기본교육		· 인권 이해(8차시)	· 장애차별 예방(10차시) · 성차별 예방(10차시)
	선택전문교육	· 경찰과 인권(8차시) · 교정과 인권(8차시) · 검찰과 인권(6차시)	· 행정과 인권(15차시)	
	학교인권교실	· 우리 교과서의 인권	· 아동권리 이해(30차시) · 사회적 약자 이해(30차시)	
	어린이 인권교실		· 인권동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 69개 콘텐츠	· 인권동화 5편
	인권체험터	· 인권동화 2편	· 인권동화(1편) · 인권사진(34개) · 만화(13편) · 영상 및 홍보물(6개) · 애니메이션(23편) · 그림(7개) · 글(16편)	
			· 인권용어 해설(934개) · 결정례(12개) · 위원회 생산 지식 DB구축(954개)	· 결정례(24개) · 위원회 생산 지식 DB구축(636개)

3. 인권자료실 소장 자료 대출 서비스

인권자료실은 위원회법 제27조에 따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위원회 소속기관으로서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인권자료실의 외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 이용자를 위한 대출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였다.

따라서 인권자료실에서는 일반 방문 이용자뿐만 아니라, 인권분야 연구자 및 전문가들의 인권자료에 대한 정보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장서개발 및 정보 서비스의 운영에



반영하고, 시민단체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기관과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출 자료의 유형은 영상자료 및 국내서 단행본이며 단체와 개인에 따라 대출 부수 등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 자료의 대출 및 반납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인권 자료실 운영규칙에 준하여 처리된다.

[표 2-7-2] 인권자료실 장서 현황(2005년 12월 현재)

구	분	수 량 (종)
단행본	동 양 서	10,453
	서 양 서	2,931
비도서 자료		1,233
연속간행물	국 내	144
	국 외	60
전자정보원	국내외 법률정보	2
	국내외 전자저널	3

4. 저시력자를 위한 자료이용 보조기기 도입 및 자료열람 공간 확장

정보 소외계층의 자료 이용 기회를 확대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신체적 제약으로 인한 자료 이용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독서확대기와 음성인식 낭독프로그램, 점자 프린터를 비치하였다. 이 같은 자료이용 보조기기를 통하여 현재 인권자료실에서 보유한 장서 및 위원회 결정문, 발간자료, 보도자료뿐 아니라 시각장애인용 원문DB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점자 프린터를 사용하여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물론 국가전자도서관 시각원문 서비스 원문DB의 자료 등을 점자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인권자료실은 인권정보 수집 처리 제공을 통한 효율적인 대국민 정보 서비스의 일환으로 서고 및 업무용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이용자 자료열람공간을 확장했으며 국회전자도서관 원문검색 및 소장 자료 검색 공간을 재정비하였다.

제1절 지역사무소 설치 배경과 주요 업무

1. 지역사무소 설치 배경

위원회는 지역순회상담과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지역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지역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위원회에 대한 지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진정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 내부적으로도 지역사무소 설치 방안이 검토되고 있었다. 위원회는 지역사무소 설립을 위한 검토 작업을 거쳐 부산과 광주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직제령(「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을 2005년 5월 30일 개정하였다.

2. 지역사무소의 주요 업무

지역사무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을 근거로 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 △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 △ 구금·보호시설 등에 대한 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 △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
- △ 위원회의 조사 지원
- △ 인권교육·홍보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부산지역사무소 개소식 현판식 진행 광경
2005.10.11.

지역사무소는 개소 다음날부터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를 시작했다. 지역주민의 높은 기대감과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사무소의 문을 두드리는 지역민이 차츰 많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사무소 개소의 최대 이점인 거리상의 접근성 향상으로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를 위해 찾는 방문자가 늘고 있고, 여기에 2006년 2월부터 1331 인권상담 전화가 개통되면 상담과 진정 건수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 교류협력, 홍보, 교육

지역사무소는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지역의 기관 및 시민사회 단체 주최의 간담회 및 각종 행사에 참여했으며 지역 언론을 통해 홍보 활동을 벌였다. 주로 협력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모색과 대시민 홍보의 성격이 짙어 내용에서 깊이가 있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위원회와 지역사무소가 활동하는 데 밑받침이 될 것으로 본다.



세계 인권선언 57주년 기념 광주전남·북 지역 인권토론회
2005.12.6.

세계 인권선언 57주년을 기념하여 부산지역사무소 차원에서 인권주간을 마련하고 인권



영화상영, 시민과의 대화, 인권토론회, 구치소 방문행사 등 입체적인 활동을 벌인 것은 특기할 만한 성과로 볼 수 있다.

3. 조사 지원

지역의 인권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조사 지원 활동을 통해 구현되었다. 순천 현대 하이스코 점검 농성 관련 진정사건 조사,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불거진 폭행에 대한 진정 사건 실지조사,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조사지원 등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기동성을 발휘함으로써 지역사무소의 존재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지역사무소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었다.

제3절 평 가

지역사무소는 개소 후 약 3개월 동안 지역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집중하였다. 지역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 직원들의 업무분장과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대외적 기반 확대를 위한 기관 및 단체 협력과 홍보 사업 등 대체로 지역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산과 광주지역 시민사회와 유관 기관의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짧은 기간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3부

특별사업

제 1 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제 2 장 차별금지법안

제 3 장 위원회 발전기획단

제 4 장 사무처 조직혁신



제 1 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1. 권고안 작성 의의

위원회는 지난 3년여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인권NAP) 권고안을 작성해왔다. 그리고 2006년 1월 초 위원회가 작성한 인권NAP 권고안을 기초로 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003년 10월 정부기관과 협의해 인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위원회가 인권NAP 권고안을 작성하고, 인권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정부가 이 권고안을 기초로 중장기 인권정책 청사진이자 범국가적인 인권 정책 종합계획인 인권NAP를 수립하도록 했다. 이처럼 위원회와 정부부처 간의 성격과 권한에 따른 역할 조정을 통해 수립되는 한국의 인권NAP는 현실적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인권가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사회는 한국의 인권NAP 수립에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

2. 권고안 작성 근거

인권NAP 수립은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지를 공식화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와 개인의 기본권 보호 강화 및 인권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는 데 바탕이 된다. 그리고 인권NAP는 국제인권 관련 기구를 비롯한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1993년 비엔나에 열린 유엔 세계인권회의에서 결의된 ‘비엔나선언과 실행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은 각 국가에 인권NAP를 수립하라고

권고하였고, 2001년 5월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는 인권NAP 수립에 대해 2006년 6월까지 보고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위원회가 인권NAP 권고안을 작성한 것은 위원회의 기능적 측면과 법적 측면에 근거를 두고 있다. 먼저 기능적 근거는 위원회가 국제인권 기준 및 원칙에 입각하여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핵심 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인권 관련 전담 국가기구임과 동시에 향후 인권NAP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모니터링과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구라는 점이다. 그리고 법적 근거는 인권 관련 법령·정책·관행 등을 조사하여 의견표명과 권고 하는 것을 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법(제19조 제1호)과 인권NAP권고안 작성과 관련된 사항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에서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법 시행령(제19조 내지 제21조) 등에 있다.

3. 권고안 작성 과정

위원회는 인권NAP 권고안을 작성하면서 국제기준을 비롯한 보편적 인권 기준을 준수 하며 실태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정부 부처 및 시민사회와 협의해왔다. 정부부처와 지속적으로 정책협의를 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인권NAP를 수립할 때 위원회가 작성한 인권NAP 권고안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또한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인권NAP 권고안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토대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인권NAP 권고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주요 자료 번역과 기초현황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먼저 유엔 인권NAP 안내서, 주요 국가의 인권NAP, 외국의 국제협약 이행보고에 대한 유엔 권고 등 인권NAP 관련 자료를 번역했다. 이 과정을 통해 위원회는 해외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에 기초한 인권NAP 권고안을 구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위원회는 한국사회의 인권현황과 인권개선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기초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자유권(8건), 사회권(10건), 사회적 소수자(7건), 인권교육(1건) 등 총



26건의 연구용역에 학자·전문가, 인권단체 등이 참여했다.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담당한 연구진은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에 참여하여 인권NAP 권고안 내용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인권NAP 권고안을 작성하기 위해 인권NAP 추진기획단과 인권정책관계자 협의회를 구성·운영했다. 학계·전문가(9명), 인권단체 대표(7인) 등으로 구성된 인권NAP 추진기획단은 총 14차 회의를 통해 인권NAP 권고안 작성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그리고 위원회는 정부부처의 고위직 간부로 구성된 인권정책관계자 협의회와 실무 차원의 인권NAP 권고안 내용에 대한 정책협의를 통해 인권NAP 권고안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또한 위원회는 인권NAP 권고안 작성과정에서 간담회, 정책 토론회, 서면검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인권NAP 권고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자 했다.

위원회는 인권NAP 권고안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2005년 8월부터 인권위원 5명이 참여하는 인권NAP 권고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16차 회의를 통해 인권NAP 권고안의 모든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했다. 또한 인권위원 11명 전원이 참여하는 인권위원 워크숍을 세 차례 개최했다.

4. 권고안 주요 내용

인권NAP 권고안은 한국사회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우선 보호하고,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위원회는 인권NAP 권고안을 작성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으므로, 향후 5년간 정부가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이에 집중했다.

인권NAP 권고안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인권NAP의 개요, 한국의 인권NAP 권고안 추진과정 및 방법, 인권NAP 권고안 구성체계 등을 정리했다.

제2부는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해 향후 5년간 집중할 분야, 긴급 구제가 필요한 분야, 당사자 스스로 의제 설정이 어려운 분야 등을 기준으로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난민, 시설생활인, 성적 소수자, 새터민 등 총 11개 영역으로 구성했다.

제3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 및 보완을 필요로 하는 분야, 현재의 인권보호를 넘어서 인권증진 차원의 분야, 인권교육 분야, 국내외 인권 관련 협력체제 구축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처럼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인권NAP 권고안의 구성은 원칙과 방향만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제시한다든지, 많은 정책적 과제를 평면적으로 제시한 다른 국가의 인권NAP 구성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NAP 권고안의 제2부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 관련법 정비 △장애인의 참정권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교육권 보장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확보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고용 남용방지 △차별시정 △사회보험 적용 확대 △교육·훈련 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 △본인 및 가족의 권리 보호 △이주 여성의 권리증진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는 성적 소수자의 기본권 보호 및 성전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성전환 관련 수술의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적용 검토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새터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의 인권교육 강화 및 새터민 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인권NAP 권고안의 제3부 중 자유권 분야에서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범위 확대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 제한 및 오남용 방지 △정부에 의한 일률적인 인터넷 내용 규제 최소화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 완화 △양심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적절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포함했다. 사회권 분야에서는 △쟁의행위에 대한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축소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및 적용 대상 확대 △작업장 감시기술 도입 및 운영 정보 공개 등을 포함했다.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부문, 공직종사자, 시민사회의 인권교육 강화를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제 2 장 차별금지법안

1. 추진 배경

우리 사회는 그동안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 등 각계의 차별시정운동으로 차별문제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문제는 국제적 인권규범과 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심각할 뿐만 아니라 그 형태 또한 특정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며 복합적인 형태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시정조치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 및 정책·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국민 인권 전반의 향상을 도모하고, 차별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제시함은 물론 적극적인 차별구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의 제정 추진은 궁극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 관련 인권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2005.12.9.

2. 주요 추진실적

위원회는 출범 초기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내외 차별금지 관련법에 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2003년 1월에 위원회 내외부 차별 관련 전문가 17인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였고, 수차례의 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2004년 8월 추진위에서 차별금지법 시안(이하 추진위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5년 5월에는 상임위원 2인을 중심으로 한 ‘차별금지법 검토팀’을 구성하고 다시 내부 토론과 외부전문가 및 관련단체 간담회를 열어 추진위안을 수정·보완한 뒤 ‘차별금지법 검토팀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2005년 10월에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차별금지법제정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구성되어 관련부처 간담회, 전체 인권위원 워크숍, 차별전문가 및 인권단체 간담회, 차별금지법안 공청회를 열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차별금지법의 성안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3. 주요 내용

현재 특위가 마련한 차별금지법안(이하 법안)은 4개의 장, 총 4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3장은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4장은 차별의 구제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제3장은 차별금지의 실체적 규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고용 등 차별의 영역에 따라 4개의 절과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의 1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법안은 차별을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으로 개념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성별, 장애 등의 차별사유와 고용 등의 차별영역으로 금지의 범위를 규정하



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 등의 차별시정 의무로서,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실효성 있는 차별의 구제를 위하여 다양한 구제조치를 담보하고자 하였다. 우선 인권위의 구제조치로서, 일반적인 구제장치인 조정 및 시정권고와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권고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차별의 행태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지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의 구제조치로서, 임시조치권의 발동 외에도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외에 별도의 배상금 지급을 판결할 수 있고, 또한 차별분쟁에 있어 증명책임의 전환을 도입하였다.

4. 평가 및 향후계획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헌법상의 선언적 평등권을 주관적 공권의 범주로 확대하는 입법 조치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특히 고용분야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적 차별 관행을 금지, 개선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인권 발전에 새 지평을 열게 될 것이다.

현재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위하여 최종적인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마련된 특위안을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 3 장 위원회 발전기획단

1. 추진 배경

위원회는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범한 후 4년 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해온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들에 대한 조사·구제활동을 펼치는 한편으로 법, 제도 개선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무소속·독립·권고형 국가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해왔다.

이제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마련되고, 국민과 국가기관의 인권의식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으나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더욱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업무, 역량 및 위상 등 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위상, 업무, 역량 등 내외부 조직 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위원회 발전 및 활동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위원회 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그 아래 업무전략기획팀, 위상발전기획팀, 역량발전기획팀의 3개 팀을 두어 각각 위원회의 업무전략계획 및 위상발전 전략계획, 역량발전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2. 주요 내용

위원회는 2005년 9월 12일 사무처 내에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3개월간의 한시 조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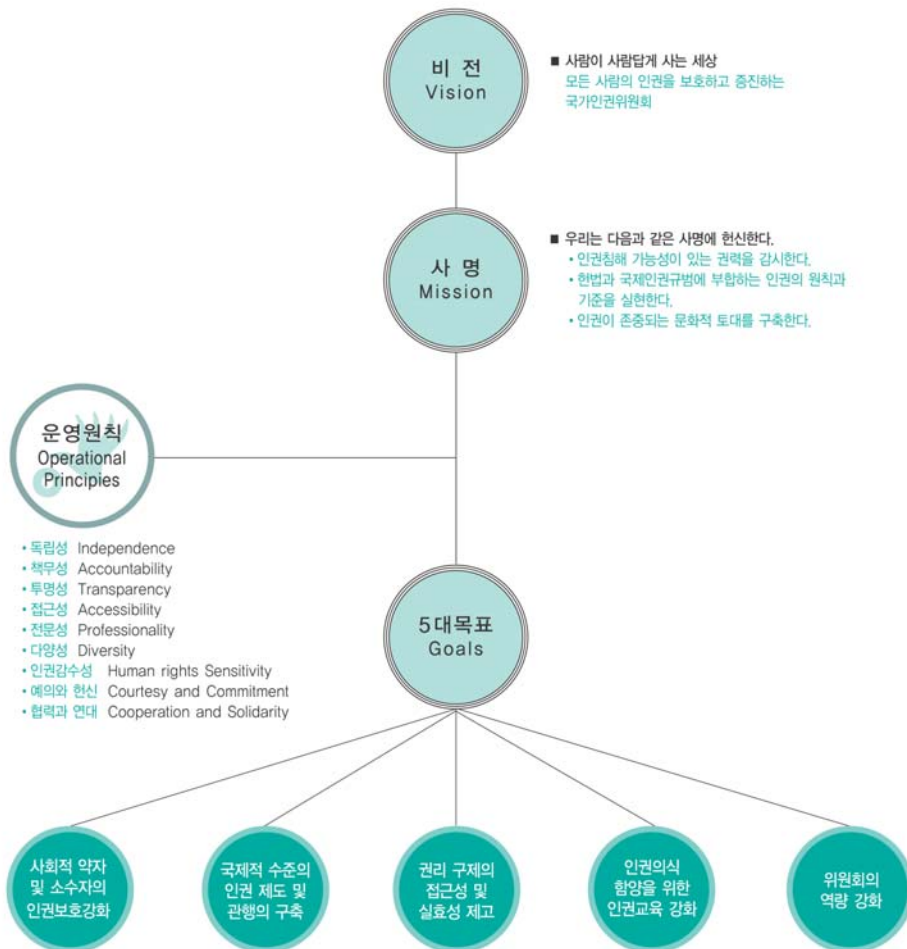


‘발전기획단’을 설치하고 위원회의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학계, 법조계, 인권단체 관계자 등 인권 전문가 15인과 내부 직원 11명 등 총 26명으로 기획단을 구성했다. 그리고 기획단 아래에 업무전략기획팀, 위상발전기획팀, 역량발전기획팀의 3개 팀을 뒤 분야별로 위원회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업무전략기획팀은 위원회가 추구하는 비전 및 위원회의 사명, 이를 이루기 위한 향후 3년간의 업무전략 목표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위상발전기획팀은 위원회 내외부의 환경 분석을 통해 위원회 위상강화 전략방향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독립성 강화, 권리구제 변별성 확보, 권고 실효성 강화의 3대 전략목표와 구체적인 실천계획 및 프로그램을 설정하였다. 역량강화기획팀은 위원회의 업무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표준화와 위원회 구성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체계 및 문제해결 능력 고양을 위한 지식공동체 활성화와 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방안을 기획하였다.

3개월간 각 팀에서 열띤 논의를 거쳐 작성한 전략계획안을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 발전 전략계획안’을 마련하여 2005년 11월 28일 제24차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였고, 전원위원회는 발전기획단이 작성한 기획안이 담고 있는 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위원회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5인의 인권위원으로 ‘발전전략기획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도록 하였다. 특별위원회는 2005년 말까지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발전 전략계획안’을 검토,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 행동계획’으로 확정 지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행동계획 2006 - 2008



제 4 장 사무처 조직혁신

1. 추진 배경 및 과정

2005년 1월 위원회는 지난 3년여 간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부 성찰 과정의 하나로 직원들로부터 위원회 업무 개선 방안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4월에는 정부의 차별시정기능 일원화 방침에 따른 직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과별로 조직의 미래상을 반영한 다양한 요구들이 분출됐다. 아울러 5월엔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1박2일 워크숍을 계획, 6월 17일~18일에 실시했는데 그 주제는 조직혁신이었다.



조직혁신을 위한 사무총장과의 대화
2005.3.22.

변화에 대한 조직의 요구와 필요는 결국 6월 3일 ‘위원회 비전수립 및 조직·인사제도 혁신안 마련’ 등을 목표로 조직혁신팀(T/F)을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검토됐다. 위원회는 9월 5일 직제개편 초안을 마련한 이후 내부 의견수렴 과정과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9228호로 직제령이 공포되어 5국 19과(담당관 포함) 3소속기관에서 5본부 22팀 3소속 기관으로 개편됐다.

2. 직제개편의 주요 내용

위원회는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국가인권위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이는 무엇보다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 교육기능을 대폭 강화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변화와 혁신을 다짐한 직원연찬회 2005.6.17.

인권교육 기능 강화를 목표로 인권교육본부를 신설하고 학교교육, 공공교육, 시민교육의 영역별 팀을 총 19명으로 구성했다. 이들 영역별 팀의 인권교육 활동은 그 범위를 대폭 확대·강화해 인권교육과 관련된 법령·제도·정책·관행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한 예는 기존 인권침해조사국과 차별조사국 대신 침해구제본부와 차별시정본부를 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차별시정본부의 경우 성차별팀, 장애차별팀, 신분차별팀, 인종차별팀으로 각기 그 영역을 명확히 했고, 차별시정 업무를 총괄할 차별시정총괄팀도 두었다. 침해구제본부 또한 침해구제총괄팀 외에 침해구제1팀(검·경·군·국정원 등의 인권침해 담당), 침해구제2팀(교정 등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담당), 침해구제3팀(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담당)을 두었다.

이와 같은 대국민 인권 서비스 향상은 위원회의 협력 업무에서도 나타난다. 이번 직제개편은 거버넌스 시대에 맞게 인권단체나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상시적·사안별로 이뤄질 수 있는 체제로 구축됐다.

위원회는 이번 직제개편에서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처 각 팀의 업무영역에 대한 조정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직사회의 조직형태를 이뤘은 계층제에 대한 변화를 시도, 전면



팀제로 조직운영 체계도 바꾸었다.

위원회는 팀제 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팀워크의 강화, 팀내 혹은 팀간 경험과 지식의 공유 촉진, 영역별 전문역량의 질적 제고를 핵심으로 삼았다. 또한 결재 단계에서도 책임과 자율, 능동적 대응이라는 팀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필요한 결재과정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팀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팀원들의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팀워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과 교육훈련도 중요한 '업무'로 자리잡도록 설정했다.

3. 향후 계획

위원회의 직제개편은 12월 말에 단행된 인사와 업무 재편으로 가시화되었지만, 직제개편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새롭게 분장된 업무에 대해 구성원들이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존 인권 정책국에서 정책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했으나 새 직제에서는 침해구제본부와 차별시정 본부에도 정책 업무가 분장된 상황이다.

팀제의 안착도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계층제에 익숙한 공직사회에 수평적 문화와 전문성을 강조하는 팀제가 어느 정도 안착하는가에 따라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가늠할 수 있다.

위원회의 전략목표를 관리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그에 따른 직원들의 평가 제도도 새롭게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직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위원회의 상황을 수성기에 비교한다. 수성기는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는 시기가 아니다. 성벽을 부단히 보수하고 개선하는 가운데 수성이 이뤄진다. 조직혁신이 2005년의 과거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06년에도 현재형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부 록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명단
2. 자문위원회 등 위원 명단
3. 조직 및 정원
4. 예산
5. 위원회 활동일지
6. 위원회 발간자료
7. 보도자료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명단

□ 인권위원

구 분 /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위원장 조영황	• 서울지방법변호사회 상임이사 •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공소유지 담당변호사 •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형군법원 판사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2005.4.4
 상임위원 최영애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여성부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위원 • 한국여성단체연합 성(性)과 인권위원회 위원장 • 한국인권재단 이사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04.7.23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김호준	• 서울신문 워싱턴특파원, 편집국장, 논설주간 • 문화일보 편집국장, 상무이사 겸 편집인 • 장준하기념사업협회 운영위원 • 동북아평화연대 이사 •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	2004.12.24 침해구제 제2위원회 위원장 다수인보호시설전문위원회 위원장 군전문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정강자	•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위원	2004.12.24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애인차별전문위원회 위원장

□ 인권위원

구 분 /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비상임위원 김만흠	· 참여연대 실행위원 및 자문위원 · 민주개혁국민연합 정책위원장 · 한국정치학회 상임이사 · CBS 객원해설위원 · 가톨릭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교수	2003.8.1 차별전문위원회 위원장
 비상임위원 나천수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영산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04.12.24 검경수사전문위원회 위원장
 비상임위원 이해학	·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공동의장 ·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이사장 ·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운동 공동의장 · 민주개혁국민연합 공동의장	2004.12.24 교정전문위원회 위원장
 비상임위원 정인섭	· 서울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국제법 전공)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2004.12.24



□ 인권위원

구 분 /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비상임위원 최금숙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법무부 남북특수법령위원회 위원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부원장	2004.12.24
 비상임위원 신혜수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 경희대학교 NGO 대학원 객원교수 • 아태여성·법·개발포럼(APWLD) 위원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위원	2005.3.15 성차별전문위원회 위원장
 비상임위원 원형은	• 부산 인권센터 공동대표 • 남북 공동선언 부산실천연대 상임대표 • 한국투명성기구 부산본부 상임대표 • 21세기 기독교포럼 상임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2005.6.1 학교인권교육전문위원회 위원장

□ 역대 위원장

구 분 /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위원장 김창국	• 부장검사(전주, 광주지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간사 • 제82대 서울지방법변호사회 회장 • 제4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참여연대 공동대표	2001.11.25 ~ 2004.12.24
 위원장 최영도	• 대전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겸 인권위원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 참여연대 공동대표	2004.12.24 ~ 2005.3.23

□ 역대 위원

구 분 /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상임위원 박경서	•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	2001.11.25 ~ 2004.12.24
상임위원 유 현	• 광주·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1.11.25 ~ 2004.7.21
상임위원 유시춘	•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2001.11.25 ~ 2004.3.13
비상임위원 곽노현	• 방승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2001.11.25 ~ 2003.2.24
비상임위원 조미경	• 아주대 법학부 교수·부장	2001.11.25 ~ 2004.12.24
비상임위원 김오섭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1.11.25 ~ 2004.12.24
비상임위원 신동운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1.11.25 ~ 2004.12.24
비상임위원 김덕현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2001.11.25 ~ 2005.3.15
비상임위원 이흥록	• 인권정책연구회 이사장, 변호사	2003.5.1 ~ 2005.4.19



□ 사무총장 및 사무처 간부

구 분 /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사무총장 곽노현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인권정책본부장 박찬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 위원장 • 헤이그 유고전법재판소 연구원 • 한국정신대 대책위원회 법률전문위원장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 부위원장	
 행정기획본부장 안중철	• 한국현대사 사료연구소(5·18연구소) 연구위원 • 광주광역시 5·18 전문위원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장	
 인권교육본부장 나영희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정책실장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전문위원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정책담당관 • 청와대 연설비서실 공보담당국장	

□ 사무처 팀장

구 분	팀 명	팀 장
직속팀	인권상담센터	정 병 춘
	홍보협력팀	이 명 재
	법무감사담당관	김 성 준
	운영지원팀	류 인 덕
인권정책본부	정책총괄팀	심 상 돈
	국제인권팀	오 병 훈
	인권연구팀	정 영 선
행정기획본부	혁신인사팀	손 심 길
	재정기획팀	김 성 욱
	정보관리팀	구 자 환
침해구제본부	침해총괄팀	김 형 완
	침해구제1팀	최 재 경
	침해구제2팀	홍 세 현
	침해구제3팀	안 석 모
차별시정본부	차별시정총괄팀	김 대 철
	성차별팀	이 수 연
	장애인차별팀	서 영 호
	신분차별팀	김 은 미
	인종차별팀	조 영 호
인권교육본부	학교교육팀	김 철 홍
	공공교육팀	임 송
	시민교육팀	남 규 선
소속기관	인권자료실	심 민 석
	부산지역사무소	이 광 영
	광주지역사무소	이 정 강



2. 자문위원회 등 위원 명단

□ 정책자문위원회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강문규	세계교회협의회(WCC) 공동의장	안경환	서울대 법과 교수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오재식	전 월드비전 회장
국순옥	인하대 법학부 교수	윤장현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김상근	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익섭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김 현	원불교 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운영위원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박정기	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청화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백충현	전 서울대 법과 교수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송두환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함세웅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 조정위원회

○ 차별조정위원회

성명	소속 및 직위	성명	소속 및 직위
강민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주현	계명대 여성대학원 여성학과 교수
유길상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최일숙	변호사(법무법인 한울)
이석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한충수	한양대 법과 교수
정영환	고려대 법과 교수		

○ 성차별조정위원회

성명	소속 및 직위	성명	소속 및 직위
김선택	고려대 법과 교수	윤기원	변호사(법무법인 자하연)
김주덕	변호사(법무법인 태일)	최은순	변호사(법무법인 새길)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인섭	서울대 법과 교수
안정선	공주대 간호학과 교수		

○ 장애인차별조정위원회

성 명	소속 및 직위	성 명	소속 및 직위
강경선	한국방송대 법과 교수	여상규	변호사(법무법인 한백)
강병근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	양길승	원진 녹색병원 원장
박승희	이화여대 사범대 특수교육과 교수	이경우	변호사(법무법인 한울)
송두환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 인권침해조정위원회

성 명	소속 및 직위	성 명	소속 및 직위
배병호	변호사	인경옥	경희대 법과 교수
손명세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학부장		

□ 전문위원회

○ 사회권전문위원회(위원장 : 정강자 상임위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성 명	소속 및 직위
김선택	고려대 법과 교수	이숙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김인재	상지대 법과 교수	이유정	변호사(법무법인 자하연)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찬진	변호사(제일합동법률사무소)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전광석	연세대 법과 교수
이경주	인하대 법과 교수		

○ 국제인권전문위원회(위원장 : 최영애 상임위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성 명	소속 및 직위
박기갑	고려대 법과 교수	장복희	서울대 BK21법학연구원 교수
양영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차지훈	변호사(민변국제연대위원장)
오재창	변호사		



○ 아동인권전문위원회(위원장 : 최금숙 인권위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성 명	소속 및 직위
조기제	진주교육대학교 도덕교육과 교수	정경수	전남대 법과 교수
모선영	한국복지재단 복지사업본부장	이명숙	변호사
신의진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 학교인권교육전문위원회(위원장 : 원형은 인권위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성 명	소속 및 직위
구정화	경인교대 교수	이승미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연구원
김영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이인규	서울미술고등학교 교감
이기규	대동초등학교 교사	조난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이대훈	참여연대 사무국장		

○ 검·경수사전문위원회(위원장 : 나천수 인권위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성 명	소속 및 직위
김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이상돈	고려대 법과 교수
도재형	강원대 법과 교수	이재승	국민대 법과 교수
이경희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교정전문위원회(위원장 : 이해학 인권위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성 명	소속 및 직위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이호중	한국외대 법과 교수
이경재	충북대 법과 교수	조은경	한림대 심리학과 교수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한결)	한영수	경원대 법과 교수

○ 다수인보호시설전문위원회(위원장 : 김호준 상임위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성 명	소속 및 직위
김영수	변호사	신영전	한양대 의과대 교수
박숙경	장애인편의시설공대위	유원섭	울지대 의과대 교수
변혜정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교수	윤혜미	충북대 아동심리학 교수
서경석	인하대 법과 교수		

○ 군인권전문위원회(위원장 : 김호준 상임위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성 명	소속 및 직위
김의형	변호사	이상영	방송통신대 법과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과 교수	정재영	국군사상자유가족연대 사무처장
이계수	건국대 법과 교수		

○ 차별전문위원회(위원장 : 김만흠 인권위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성 명	소속 및 직위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	이찬진	변호사(제일합동법률사무소)
이준일	고려대 법과 조교수	이준형	중앙대 법과 조교수
엄규숙	경희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성차별전문위원회(위원장 : 신혜수 인권위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성 명	소속 및 직위
김도균	서울대 법과 조교수	윤홍식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	변호사(이안법률사무소)	조용만	건국대 법과 조교수
박혜경	인천발전연구원 여성개발센터장	황정미	한림대 사회학과 전임강사



○ 장애차별전문위원회(위원장 : 정강자 상임위원)

성명	소속 및 직위	성명	소속 및 직위
권선진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김승돈	대구보건대학 사회복지과 강사	배응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 시민연대 정책실장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임선숙	변호사

□ 행정심판위원회

성명	소속 및 직위	성명	소속 및 직위
김동균	변호사(법무법인 다산)	이원우	서울대학교 법과 교수
윤종현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정하중	서강대학교 법과 교수

※ 위원 중 외부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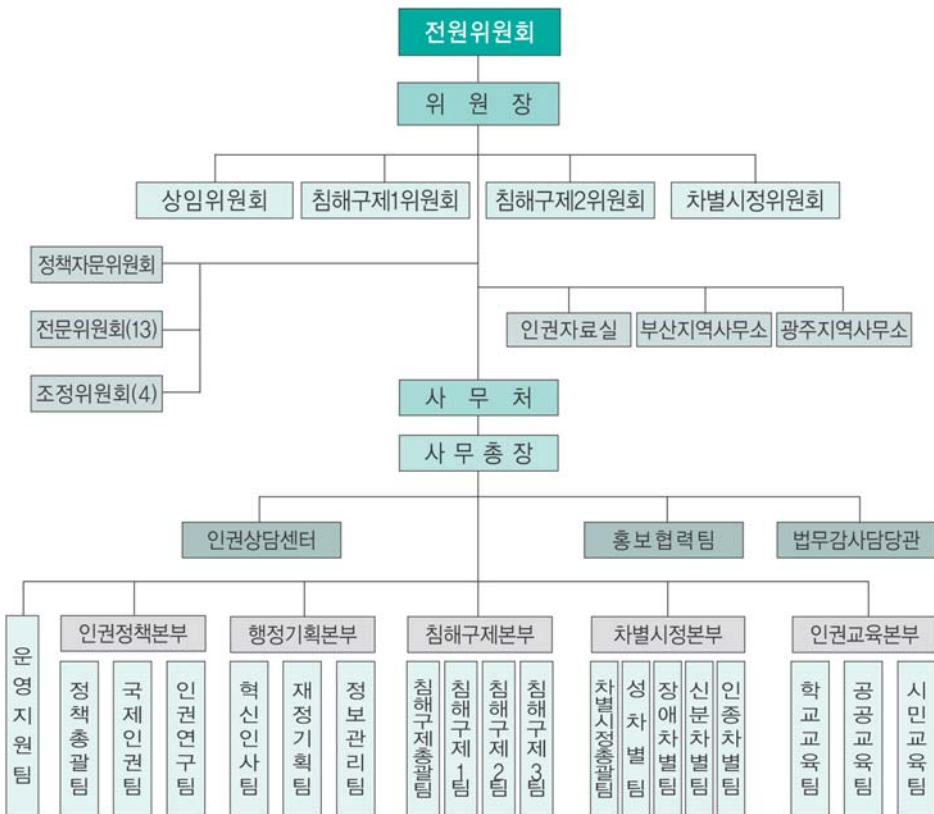
□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및 직위	성명	소속 및 직위
윤기원	변호사(법무법인 자하연)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 위원 중 외부위원

3. 조직 및 정원(2005.12.31 현재)

- 위원회 : 11명(위원장 1,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7)
- 사무처 : 5본부 22팀 3소속기관
- 정 원 : 201명





4.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04년예산	2005년예산	증 감		비 고
				%	
총 계	19,617	20,406	789	4.0	
인건비	7,665	8,317	652	8.5	
사업비	11,952	12,809	137	1.1	
- 기본운영비	6,596	6,727	131	2.0	
- 주요사업비	5,356	5,362	6	0.1	

(1) 인건비 규모 : 83억원

- 정원 201명, 전문계약직 8명, 청원경찰 1명 등 인건비

(2) 기본사업비 규모 : 67억원

- 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 35억원
-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 : 32억원

(3) 주요 사업비 규모 : 54억원

- 인권보호·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인권보호정책 및 제도구축 등 21억원
-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접수 및 조사·구제
 - 인권전문상담원 운영 등 4억원
-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국내외 협조체제 강화
 - 인권의식 홍보 강화 등 29억원

5. 위원회 활동일지(2005. 1. ~ 12.)

2005년 1월

- 1월 3일
 - 위원회 사무식 개최
 - 국립묘지 참배(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국장 등)
- 1월 4일
 - 청와대 신년인사회 참석(위원장, 상임위원)
- 1월 6일
 - 2005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참석(위원장, 상임위원)
- 1월 7일
 - 박노현 사무총장 임명
- 1월 10일
 - 제1차 전원위원회 개최 : ○○○○경찰서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권고 등 6건(보고3, 의결3) 처리
 - 제1차 제2소위원회 개최 : 총 84건(권고4, 기각21, 각하 등 59)
- 1월 11일
 - 인권에니메이션 기술시사회 개최(영화진흥위원회 시사회)
- 1월 13일
 - 제1차 상임위원회 개최 : ○○화재공장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관련 직권조사 의결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신년교례회 참석
 - 캐나다 대사관 인권담당 내방
- 1월 17일
 - 제2차 전원위원회 개최 : 위원회법 개정안 등 2건(보고1, 의결1) 처리
- 1월 18일
 - 신원조사제도 관련 청문회
 - 제2차 상임위원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의결
 - 2005년 제1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등 3건 처리
- 1월 21일
 - 제3차 상임위원회 개최 : 육군훈련소 가혹행위 관련 직권조사 의결
 -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쟁점 토론(프라이버시법 제정 연석회의)
 - 기업 고용차별예방교육 간담회
 - 전문상담원 운영에 관한 워크숍 실시(1.21~22)
 - 동대문 쪽방촌, 재한 몽골학교 방문(위원장, 사무총장 등)
- 1월 24일
 - 제1차 제3소위원회 개최
 - 제3차 전원위원회 개최 : 신원조사제도 개선 권고 등 3건(의결3) 처리
 - 제2차 제2소위원회 개최 : 총 93건 처리
- 1월 25일
 - 제5회 세계사회포럼 참가(1.25~2.2, 브라질)
 - 박노현 사무총장, ‘영연방 국가인권기구 사무총장 워크숍’초청강연 및 아일랜드 인권위원회 방문(1.25~2.2) ‘국가인권기구 독립성과 책임성 간의 균형모색’



- 1월 26일 · 이주노동자 도서관 자료 기증(위원회 발간자료, 직원기증자료 및 물품)
- 1월 27일 · 기지촌 여성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토론회(두레방)

2005년 2월

- 2월 1일 · 요르단 인권위원회 대표 내방(2.1~5)
- 월간 <인권> 2월호(통권 18호) 발간
- 2월 3일 · 제4차 상임위원회 개최 : 신원조사 관련 권고 대상 의결
- 위원장, 부패방지위원회 주최 '부패방지보고대회' 참석
- 2월 7일 · 제2차 제3소위원회 개최 : 보고2, 논의1, 의결46
- 2월 14일 · 제4차 전원위원회 개최 : 육군훈련소 인분취식 강요 등 인권침해 권고 등 9건(보고4, 의결5) 처리
- 제3차 제2소위원회 개최 : 총 109건 처리
- 2월 16일 ·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 참석(Forum-Asia, 2.16~18)
- 2월 18일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 위원회법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 관련)에 대해 답변(위원장, 사무총장)
- 2월 21일 · 제3차 제3소위원회 개최 : 보고2, 논의1, 의결58
- 2월 23일 · 인권교육연구학교 교사 대상 워크숍 개최(2.21~23)
- 인권감수성 체험학습 -인권교육의 이해
- 2월 24일 · 제252회 임시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국장 등)
- 2월 25일 · 주한 파라과이 대사 내방
- 아시아인권위원회 위원장 초청 인권특강
- 2월 26일 · 법집행공무원 인권교육 : 경찰대학(4학년 진학생 120명)
- 2월 28일 · 제5차 전원위원회 개최 : 가족상황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권고 등 7건(보고3, 의결4) 처리
- 제4차 제2소위원회 개최 : 총 123건 처리

2005년 3월

- 3월 1일 · 3·1절 기념행사 참석(위원장)
- 3월 2일 · 제1회 인권자료운영자문단회의 개최
- 월간 <인권> 3월호(통권 19호) 발간

- 3월 3일 · 전직 북파공작원(HID) 관련 피해자들과 면담(위원장)
- 3월 4일 · 경찰청 초청 전국 수사, 형사과장 워크숍 인권특강 :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강당
(최영도 위원장)
- 3월 5일 · 광노현 사무총장, ‘아랍지역 국가인권기구 대회’ 아랍지역 대표발제
- 3월 7일 · 제4차 제3소위원회 개최 : 보고1, 논의4, 의결46 건
- 3월 8일 · 제5차 상임위원회 개최 : 위원회 워크숍 실시 계획안 검토 등 4건(보고2, 논의2) 처리
· 세계여성의 날 특집 <여섯 개의 시선> MBC TV 방영
- 3월 11일 · 주 북한 영국대사 및 주한 영국대사 내방
- 3월 14일 · 제6차 전원위원회 개최 : ○○○○경찰서 불법체포 등의 건 권고 등 10건(보고4, 의결3, 논의3) 처리
· 제6차 상임위원회 개최 : 한센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추진 기본계획안 의결 등 2건(의결2) 처리
· 제5차 제2소위원회 개최 : 총 123건 처리
- 3월 16일 · 비정규직 관련 청문회
- 3월 21일 · 위원회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개통
- 3월 22일 · 제7차 상임위원회 개최 : 지역사무소 개청 준비계획 보고 등 4건(보고4) 처리
- 3월 23일 · 최영도 위원장 이임식
· 인권NAP 관련 인권단체 간담회 실시
· 제5차 제3소위원회 개최 : 보고4, 논의11, 의결35 건
- 3월 25일 · 초등학생 일기장 관련 의견표명(교육인적자원부)
- 3월 26일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 참석(스위스 제네바)
- 3월 28일 · 제7차 전원위원회 개최 : 점자 선거공보의 규격제한건 의견표명 등 9건(보고3, 의결6) 처리
· 제6차 제2소위원회 개최 : 총 116건 처리

2005년 4월

- 4월 1일 · 제8차 상임위원회 개최 : 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 월간 <인권> 4월호(통권 20호) 발간
- 4월 2일 · 유엔인권위원회 참석(4.2~10)
- 4월 4일 · 조영환 위원장, 위원회 위원장 취임 및 직원 상견례와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면담
· 제6차 제3소위원회 개최 : 보고1, 논의1, 의결42 건



- 4월 6일 · 제8차 전원위원회 개최 : 사형제도 개선 의견표명 등 8건(보고3, 의결5) 처리
아동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 권고
- 제7차 제2소위원회 개최 : 총 80건 처리
- 4월 11일 · 비정규직 관련 법안 의견표명
- 제9차 전원위원회 개최 :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침해 권고 등 6건(의결6) 처리
- 4월 12일 · 직제개편 1차 회의 개최
- 쿠르드 자치정부 인권부장관, 김호준 상임위원 면담
- 4월 13일 · B형 간염보유자 차별개선을 위한 입법 공청회 참석(국회)
- 임시정부수립 기념식 참석(사무총장)
- 4월 14일 · 제16차 ICC 회의(유엔인권위 기간 중) 참가 : 최영애 상임위원 외 2인, 제네바
- 4월 20일 · 제7차 제3소위원회 개최 : 보고1, 논의1, 의결64 건
- 4월 22일 · 2005년 춘계 체육행사 실시(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
- 4월 25일 · 제8차 제1소위원회 개최 : 초등학교 일기장 관련 권고 교육부 수용보고, 학생두발
관련 인권문제 검토보고
- 제10차 전원위원회 개최 : 위원회 기구도 수정 등 5건(보고4, 논의1) 처리
- 제8차 제2소위원회 개최 : 총 152건 처리
- 법의 날 기념식 참가(위원장, 기념사 낭독)
- 4월 26일 · 생계형 노점상 단속 관련 전문가 간담회
- 4월 28일 · 경기도 양평 소재 한센인 정착촌 상록농원 방문(조영항 위원장)

2005년 5월

- 5월 2일 · 월간 <인권> 5월호(통권 21호) 발간
- 주한 독일 대사 내방(위원장 면담)
- 제8차 제3소위원회 개최
- 5월 3일 · 제9차 상임위원회 개최
- 위원회 기구도 수정 의결 등 2건(보고1, 논의1) 처리
- 5월 9일 · 제11차 전원위원회 개최 : 행정자치부 사생활 관련 인권침해 권고 등 6건(보고3,
의결3) 처리
- 제9차 제2소위원회 개최
- 5월 13일 · 학생 두발제한에 대한 토론회

- 5월 16일 · 제9차 제3소위원회 개최
- 5월 18일 ·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 국립5·18묘지, 위원장·상임위원 등 참석
- 5월 19일 · 제10차 상임위원회 개최 : 2005년 제2차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의결
- 5월 23일 · 제1소위원회 개최 : 학생두발 관련 검토보고 등 4건
- 제12차 전원위원회 개최 : 미등록 외국인 강제단속 과정의 인권침해 등 6건(보고 4, 의결2) 처리
- 제10차 제2소위원회 개최
- 5월 25일 · 구로 외국인노동자의 집 및 서울출입국관리소 방문
- 5월 27일 · 제11차 상임위원회 개최 :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검토
- 5월 30일 · 아동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 권고문 발송
- 5월 31일 · 지역사무소 개설 관련 직제령 개정
- 주한네덜란드 부대사 방문(북한인권 관련 논의)

2005년 6월

- 6월 1일 · 제12차 상임위원회 개최 :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 개정안 검토 의결
- 월간 <인권> 6월호(통권 22호) 발간
- 6월 2일 · 국회 위원회법 개정 관련 당정 협의 참석(국회 귀빈식당, 조영황 위원장)
- 6월 3일 · 외국인보호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송부(법무부)
- 혁신업무수행을 위한 한시적 상근조직으로 '조직혁신팀'구성
- 6월 7일 · 제11차 제2소위원회 개최
- 6월 8일 · 제10차 제3소위원회 개최
- 6월 13일 · 제13차 전원위원회 개최 : 통계 등 4개 직무분야 별정직 공무원 정년차별 등 9건 (보고6, 의결3) 처리
- 제12차 제2소위원회 개최
- 6월 15일 · 제13차 상임위원회 개최 : 2005년 제2차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등 2건(보고1, 의결1) 처리
-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북한인권 관련 외국대사 초청 간담회
- 6월 17일 · 2005년 여름 혁신연찬회 개최(증권연수원)
- 6월 20일 · 제11차 제3소위원회 개최
- 6월 21일 · 제13차 제2소위원회 개최



- 6월 23일 · 제1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6.23~24, 수안보 상록호텔)
- 위원회 직제령 개정
- 6월 24일 · <동아일보> 인권위 2회 공동기획 '한센인 인권' 1회 보도
- 6월 27일 · 제14차 전위원회 개최 : 학생두발 제한 관련 권고 등 7건(보고4, 의결3) 처리
- 제14차 제2소위원회 개최
- 6월 29일 · 위원회법 정부안 수정, 국회 통과
- 광노현 사무총장,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요청으로 네팔 인권상황 유엔진상조사단 활동 (6.29~7.7)
- 위원장 소록도 현지 취재기자들과 기자간담회(MBC 등 5개 언론사 참석)
- 6월 30일 · 제14차 상임위원회 개최 : 학생두발 제한 관련 검토 의결
- KBS <시사투나잇> '2005 인권순회상담' 프로그램 방영

2005년 7월

- 7월 1일 ·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개최
- 월간 <인권> 7월호(통권 23호) 발간
- 국가인권위원회 직무분석 및 조직재설계안 연구용역 실시(~9.5.)
- 7월 2일 · MBC 라디오 <여성시대> 인권위 공동기획 '위풍당당 영자씨' 1회 방송 (2회 : 9일, 3회 : 17일, 4회 : 23일)
- 7월 4일 · <한겨레21> '한센인 인권' 기획보도
- 제12차 제3소위원회 개최
- 7월 5일 · 학생두발 관련 제도개선 권고
- 7월 8일 · 제15차 상임위원회 개최 : 보조견 동반 시각장애인 식품접객업소 출입거절 관련 직권조사 의결 등 2건(의결2) 처리
- '인권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 인권운동사랑방 등 16개 단체 참석
- 7월 9일 · 아동복지시설 '서울시립 소년의 집' 방문조사
- 7월 11일 · 제15차 전위원회 개최 : 공기업의 직원 채용 시 나이 및 학력 차별 등 8건(보고4, 의결1, 논의3) 처리
- 제15차 제2소위원회 개최
- 7월 13일 · 인권보호 공감을 위한 '경찰현장' 체험(7.13~15), 강남 및 청량리 경찰서 등
- 7월 14일 · 난민 인권 관련 청문회

- 제1소위원회 개최
- 북한 탈북자 시설 '하나원' 방문(경기 안성 소재, 조영환 위원장)
- 아동복지시설 '여주 우리집' 방문조사
- 7월 15일 · 제16차 상임위원회 개최 : 교육인권 연수과정 운영준비 보고
- 광주MBC <금요기획> '2005 인권순회상담' 특집 다큐 방영
- 7월 16일 · 부랑인보호시설 '충남 금이성 마을' 방문조사
- 7월 18일 · <서울신문> 인권위 10회 공동기획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길' 1회 보도(10주간 연속보도)
- 아프가니스탄 인권위원회 위원장 시마 사마르(Sima Samar) 접견 및 만찬
- 7월 19일 · 제13차 제3소위원회 개최
- 7월 22일 · 제14차 제3소위원회 개최
- 부랑인보호시설 '대구시립 희망원' 방문조사(7.22~23)
- 7월 25일 · 제16차 전원위원회 개최 : 위원회 운영규칙 중 개정규칙안 등 4건(의결4) 처리
-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 제16차 제2소위원회 개최
- 7월 27일 · 제57차 인권소위 참석 및 국제인권기관 방문(7.27~8.12) : 네덜란드 및 스웨덴
국제인권기관 방문(김호준·정강자 상임위원 등)
- 7월 28일 · 고문방지협약 및 그 선택의정서 관련 주요 쟁점에 관한 세미나 개최

2005년 8월

- 8월 1일 · 제6차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참석(8.1~12, 뉴욕)
- 제15차 제3소위원회 개최
- 월간 <인권> 8월호(통권 24호) 발간
- 8월 16일 · 제17차 전원위원회 개최 :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 사건과 관련한 위원회의 의견 검토
- 제17차 제2소위원회 개최
- 8월 18일 · 인권 NAP 권고안 특별위원회 개최
- 8월 19일 · 제17차 상임위원회 개최 :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긴급구제조치
-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과 인권 토론회 개최
- 8월 22일 · 제14차 정책위원회 개최
- 제18차 전원위원회 개최 : 민간 보험의 장애인 차별개선 등 관련 검토 의견 등
6건(보고2, 의결2, 논의2) 처리



- 제16차 제3소위원회 개최
- 8월 24일 · 제10차 APF 연례회의 참가(8.24 ~ 26, 몽골 울란바토르, 위원장 외 4인 참가)
- 8월 25일 · 2005 병역처분기준의 평등권 침해에 관한 간담회 개최
- 8월 26일 · 파키스탄 인권위 설립 관련 현지 방문(8.26~9.3, 국제협력담당관)
- 제17차 제3소위원회 개최
- 8월 29일 · 인권NAP 권고안 특별위원회 개최
- 학령기 장애아동 통합교육 실태조사 연구회의
- 8월 30일 · 발전전략기획안 작성을 위해 발전기획단 구성·운영계획 수립
- 8월 31일 · 제15차 제1소위원회 개최

2005년 9월

- 9월 1일 · 월간 <인권> 9월호(통권 25호) 발간
- 9월 2일 · 조영황 위원장,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법률가 회의' 만찬행사 축하 및 주제
- 9월 8일 · 조영황 위원장, 시각장애인 보조견 이용 활성화 관련 해외 초청인사 마이클 킹섬 외 2인 접견
- 직제개편안 논의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과장급 혁신 워크숍(우이동 원불교 봉도수련원)
- 9월 12일 · 제19차 전원위원회 개최 : 발전기획단 활동계획, 정신보건법령개정 및 정책권고 등 7건(보고4, 의결3) 처리
-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 제16차 제1소위원회 개최
- 9월 13일 · 제18차 제3소위원회 개최
- 9월 15일 · 사이버 인권배움터 사이트 개통
- 제18차 제2소위원회 개최
- 9월 18일 · 인권 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 시사회 개최
- 9월 22일 · 유엔 분쟁예방 관련 국제워크숍 참석(9.22~24, 스리랑카)
- 조영황 위원장, 대한성공회 주최 '노숙자를 위한 수요주먹밥' 콘서트 1주년 기념행사 참석
- 9월 23일 · 인권 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 배급
- 9월 26일 · 제20차 전원위원회 개최 : 경찰공무원 채용 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 4건(의결3, 논의1) 처리
- 제18차 제1소위원회 개최
- 제19차 제2소위원회 개최
- 9월 27일 · 유엔 인권활동보고회 개최

- 9월 28일 · 제19차 제3소위원회 개최
- 9월 29일 · ‘여성의 이주와 인권’ 초청 특강 및 오찬
발표자 : Ms. Lorena Macabuag(아시아이주여성 국제포럼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Ms. Renu Fajbhandari(네팔여성재활센터 소장)
- 9월 30일 · 조영황 위원장 인권현장 방문 (불광동 소재 무의탁노인보호시설 ‘성우회’)

2005년 10월

- 10월 4일 · 제18차 상임위원회 개최 : 위원회 직제 개정안 검토
· 월간 <인권> 10월호(통권 26호) 발간
- 10월 6일 · 제19차 상임위원회 개최 : 위원회 직제 개정안 검토
- 10월 10일 · 제21차 전원위원회 개최 : 위원회 직제령 개정안 등 5건(보고4, 의결1) 처리
· 제19차 정책위원회 개최
· 제20차 침해구제위원회 개최
· 제20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
- 10월 11일 · 부산지역사무소 개소식(국민연금 부산회관 3층 컨벤션홀)
- 10월 12일 · 광주지역사무소 개소식(광주YWCA 1층 대강당)
- 10월 17일 · 제21차 정책위원회 개최
- 10월 18일 · 제21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
- 10월 19일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 10월 20일 · 제20차 상임위원회 개최 :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의결
· 제6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 아태지역 장애인단체 활동가 18인 내방
- 10월 24일 · 제22차 전원위원회 개최
금강산 관광 관련 평등권 침해(03진차655) 등 9건(보고5, 의결4) 처리
· 제21차 침해구제위원회 개최
· 제22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

2005년 11월

- 11월 1일 · 월간 <인권> 11월호(통권 27호) 발간
- 11월 3일 · 북한인권 국제세미나 개최(힐튼호텔)



- 11월 7일 · 제23차 정책위원회 개최
- 제23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
- 11월 9일 · 제21차 상임위원회 개최 :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 개정안 검토
- 제1회 장애차별 조정위원회 개최
- 11월 14일 · 제23차 전위원회 개최 :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 권고 등 9건
(보고2, 의결4, 논의3) 처리
- 제22차 침해구제위원회 개최
- 유엔 고문방지 교육 워크숍 참석(11.14 ~ 1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11월 15일 · 제22차 상임위원회 개최 : 발전기획단 향후 추진방향 검토
- 11월 17일 · 인권정책과제 관리체계 정비방안 수립 : 법령검토, 인권현안, 조사국 이관사건 등
관리방안 마련
- 11월 18일 · 조영황 위원장, 국제인권연맹 회장 예방
- 11월 21일 · 제25차 정책위원회 개최
- 제24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
- 11월 22일 · 제2차 장애차별 조정위원회 개최
- 11월 23일 · 조영황 위원장, 인권취약현장 방문 : 삼동 소년촌(무의탁아동보호시설, 상암동)
- 11월 24일 · 조영황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 김대중 전 대통령 예방
- 제23차 상임위원회 개최 : 단전·단수 등으로 인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실시 의결
- 11월 25일 · 위원회 설립 4주년 기념행사 및 우수직원 표창
- 11월 27일 · 유엔 원탁회의 참가 지원(11.27~12.3, 인도)
- 11월 28일 · 제24차 전위원회 개최 :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관련 의견표명 등 7건(보고2, 의결4, 논의1) 처리
- 제23차 침해구제위원회 개최
- 11월 29일 · 여의도 농민시위 사망사건 조사 착수

2005년 12월

- 12월 1일 · 월간 <인권> 12월호(통권 28호) 발간
- 차별관련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 여의도 농민시위 사망사건 현장조사
- 12월 2일 · 제25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

- 12월 5일 · 제27차 정책위원회 개최
· 제26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
- 12월 6일 · 해외 인권전문가(Mr.Clarence J.Dias) 초청강연
- 12월 8일 · 5·18기념사업회 주최, 광주인권포럼에 참석한 아시아인권위원회 대표단 접견 및 축하 만찬 주재(조영황 위원장)
- 12월 10일 · 제57회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의 날’ 행사 :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인권논문 시상식 등
- 12월 12일 · 사형제도 관련 영국 피터 호치킨스 교수 방문, 인권정책국장 면담
· 제25차 전위원회 개최 : 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 권고 등 7건(보고3, 논의1, 의결3) 처리
· 제24차 침해구제위원회 개최
· 제27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
- 12월 13일 · 군대 인권교육 실시(12.13 ~ 16)
 군 인권전문상담관, 군 법무관 등 관계자 36명을 대상으로 홍원 연수원에서 실시
· 제24차 상임위원회 개최 : 법무부의 인권국 신설 추진 상황 보고 등 3건(논의3) 처리
· 제28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
·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제1회 특별위원회 개최
- 12월 15일 · 제29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
- 12월 19일 · 제29차 정책위원회 개최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작성을 위한 인권위원 제2차 워크숍 실시
- 12월 22일 · 박경서, 유현, 유시춘 전 상임위원 황조근정훈장 전달 및 격려 오찬
- 12월 26일 · 제26차 전위원회 개최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개선 권고 등 7건(보고3, 의결3, 논의1) 처리
· 제25차 침해구제위원회 개최
· 제30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
- 12월 28일 · 2005년 겨울 혁신연찬회 개최(롯데연수원)
- 12월 30일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 공포
· 위원회 중무식(배움터2)



6. 위원회 발간자료

□ 2005년 발간자료

연번	자 료 명	저(편)자	발행시기	담당부서
1	200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사업보고서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 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여성주의 저널 일다 (연구책임자 : 조여울)	2005	인권정책국 인권연구담당관실
2	200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	국제평화전략연구원 (연구책임자 : 박호성)	2005	인권정책국 인권연구담당관실
3	200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탈북자 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 인권 실태조사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5	인권정책국 인권연구담당관실
4	한센인 인권향상을 위한 2005년도 인권순회 상담 결과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편	2005	인권상담센터
5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인권정책분야 제1집 (2005)	인권정책국	2005.1	인권정책국 법제개선담당관실
6	신원조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국가인권위원회 편	2005.1	인권정책국 정책총괄과
7	2005 인권단체와의 정책간담회	국가인권위원회 편	2005.3	교육협력국 국내협력과
8	200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사업보고서 - 환경권 분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실태조사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연구책임자 : 구도완)	2005.3	인권정책국 정책총괄과
9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 주민등록번호제도 이대로 좋은가	국가인권위원회 편	2005.4	인권정책국 정책총괄과
10	APF·ICC 규정집 : APF 정관 및 ICC 절차규칙 등 수록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실	2005.4	교육협력국 국제협력담당관실
11	법령해석질의회신집	국가인권위원회	2005.5	행정지원국 법무담당관실
12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 학생 두발제한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	국가인권위원회 편	2005.5	인권정책국 정책총괄과
13	2005년 국민인권의식조사 1권 : 총괄보고서 2권 : 정량보고서 3권 : 정성보고서 4권 : 조사실문지 부록 : 2005년도 국가인권의식조사 조사결과표 부록 : 2005년도 국가인권의식조사 심층면접 조사결과	한국리서치	2005.6	인권정책국 인권연구담당관실

연번	자 료 명	저(편)자	발행시기	담당부서
14	2005년 인권순회상담 - 편견과 차별을 넘어 하나로, 지역공동체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편	2005.6	인권상담센터
15	경찰 각급학교 교수요원 인권강사 양성과정 : 인권강사양성 연수과정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편	2005.6	교육협력국 인권교육담당관실
16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정보 열람·발급 허용,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 편	2005.6	인권정책국 정책총괄과
17	아동의 권리(유엔인권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	2005.6	교육협력국 국제협력담당관실
18	여성과 아동의 건강에 유해한 전통적 관습 (유엔인권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	2005.6	교육협력국 국제협력담당관실
19	초법적, 악식 또는 자의적 처형(유엔인권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	2005.6	교육협력국 국제협력담당관실
20	국가인권위원회 세미나 - 고문방지협약 및 그 선택의정서 관련 주요 쟁점 분석	국가인권위원회 편	2005.7	교육협력국 국제협력담당관실
21	빈곤분야 인권활동가 교육 “소외계층인권보호 우리가 함께해요”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편	2005.7	교육협력국 국내협력과
22	통합학급 담당 교원 대상 중등반 교원 인권 연수과정	국가인권위원회 편	2005.7	교육협력국 인권교육담당관실
23	통합학급 담당 교원 대상 초등반 교원 인권 연수과정	국가인권위원회 편	2005.7	교육협력국 인권교육담당관실
24	국가인권위원회 공청회 - 피의사실공표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편	2005.7	인권침해조사국 인권침해조사서과
25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 한센인 인권보호 증진 방안을 위한 한·일 양국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편	2005.7	인권정책국 인권연구담당관실
26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과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편	2005.8	인권정책국 정책총괄과
27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 제10차 연례회의 참가보고서 및 별책부록	국가인권위원회	2005.9	교육협력국 국제협력담당관실
28	외국인진정 관련 결정례 등 자료 모음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	2005.9	인권침해조사국 조사기획담당관실
29	유엔인권활동 보고회 : 유엔 인권소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2005.9	교육협력국 국제협력담당관실
30	North Korean Human Rights : Trends and Issue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2005.9	인권정책국 인권연구담당관실
31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국가인권위원회 편	2005.10	인권정책국 인권연구담당관실
32	강제퇴거와 인권(유엔인권해설집)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저, 국가인권위원회 역	2005.11	교육협력국 국제협력담당관실



연번	자 료 명	저(편)자	발행시기	담당부서
33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유엔인권해설집)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저, 국가인권위원회 역	2005.11	교육협력국 국제협력담당관실
34	고문방지위원회(유엔인권해설집)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저, 국가인권위원회 역	2005.11	교육협력국 국제협력담당관실
35	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2005.11)	국가인권위원회	2005.11	행정지원국 법무담당관실
36	북한인권 국제세미나 - 북한의 인권상황과 국제협력	국가인권위원회 편	2005.11	인권정책국 인권연구담당관실
37	세계 주요 국가인권기구 현황집	국제협력담당관실 편	2005.11	교육협력국 국제협력담당관실
38	소수집단의 권리(유엔인권해설집)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저, 국가인권위원회 역	2005.11	교육협력국 국제협력담당관실
39	옹호활동이 국민의 자결권에 미치는 영향 (유엔인권해설집)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저, 국가인권위원회 역	2005.11	교육협력국 국제협력담당관실
40	인권과 난민(유엔인권해설집)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저, 국가인권위원회 역	2005.11	교육협력국 국제협력담당관실
41	인권운동가 : 인권 옹호활동을 위한 권리의 보호 (유엔인권해설집)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저, 국가인권위원회 역	2005.11	교육협력국 국제협력담당관실
42	인도주의법과 인권	국제적십자위원회 저, 국가인권위원회 역	2005.11	교육협력국 국제협력담당관실
43	인종차별철폐위원회(유엔인권해설집)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저, 국가인권위원회 역	2005.11	교육협력국 국제협력담당관실
44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유엔인권해설집)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저, 국가인권위원회 역	2005.11	교육협력국 국제협력담당관실
45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 장애인 보조견 활성화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편	2005.11	차별조사국 차별조사과
46	제6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참가 결과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5.11	교육협력국 국제협력담당관실
47	진정 절차(유엔인권해설집)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저, 국가인권위원회 역	2005.11	교육협력국 국제협력담당관실
48	통합교육 관리자 인권 워크숍	국가인권위원회	2005.11	교육협력국 인권교육담당관실
49	2005 광주 전남·북지역 인권현황과 과제 - 세계인권선언 57주년 기념 인권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2005.12	광주지역사무소

연번	자 료 명	저(편)자	발행시기	담당부서
50	2005 부산지역 인권현황과 과제 - 세계인권선언 57주년 기념 인권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부산인권포럼 준비위원회	2005.12	부산지역사무소
51	2005 인권논문 수상집	국가인권위원회 편	2005.12	인권정책국 인권연구담당관실
52	2005 인권상담사례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2005.12	인권상담센터
53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위원회	2005.12	인권상담센터
54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 인권전문인력양성 연수교재	국가인권위원회 편	2005.12	교육협력국 인권교육담당관실
55	2005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연구책임자 : 한홍구)	2005.12	인권정책본부 인권연구팀
56	2005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책임자 : 정원오)	2005.12	인권정책본부 인권연구팀
57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야기 인권(접자도서)	국가인권위원회 편	2005.12	공보담당관실
58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교육협력국 인권교육담당관실 편	2005.12	교육협력국 인권교육담당관실
59	2005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아동 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연구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참여복지센터 (연구책임자 : 이웅교)	2005.12	인권침해조사국 조사기획담당관실
60	인권교육 실천사례집 2005 - 인권교육 실천사례 및 문예작품공모 수상작	국가인권위원회 편	2005.12	교육협력국 인권교육담당관실
61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보고서 2005	국가인권위원회 편	2005.12	교육협력국 인권교육담당관실
62	2005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양성화된 조건부신고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연구책임자 : 남구현)	2005.12	인권정책본부 인권연구팀
63	2005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건국대학교 (책임연구원 : 한상희)	2005.12	인권정책본부 정책총괄팀
64	2005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진정직업자격 등 고용차별 판단기준에 관한 외국 판례 조사	법률사무소 이안	2005.12	차별조사국 차별조사과
65	2005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청소년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연구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연구책임자 : 고성혜)	2005.12	차별시정본부 신분차별팀



7. 보도자료(2005.1.1. ~ 12.31.)

보도일자	제 목 및 내 용
2005.1.13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직권조사 결정
2005.1.17	출석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잉 지명수배는 인권침해
2005.1.18	국가인권위, '신원조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개최
2005.1.21	육군훈련소 중대장 인분취식 강요행위 직권조사 착수
2005.2.2	교통사고 초동 조사 시 현장사진 촬영 않는 등 현장증거확보조치 소홀은 인권침해
2005.2.2	알몸 신체수색 절차와 방법 규정 마련되어야
2005.2.14	국가인권위, 국가기관 최초로 원폭 1세, 2세 실태조사
2005.2.17	신원조사 위험적 요소 개선해야
2005.2.21	가혹행위 경찰관 고발 및 밤샘조사 관련 규정 마련
2005.2.22	“색각이상자에 대한 취업제한, 근거는 부족하고 기준은 엄격하다” 국가인권위, 색각이상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실태조사
2005.3.2	휴무토요일, 실외운동 미실시 및 접견 제한은 인권침해
2005.3.3	여성 성적 소수자 단체를 여성단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
2005.3.7	남편이 같은 대학 교수라는 이유로 여교수를 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
2005.3.9	국가인권위, 삼성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여부 예비조사 착수
2005.3.10	인턴 기간 중 3개월 출산휴가 사용했다고 6개월 추가 근무케 한 것은 차별
2005.3.11	국가인권위, 「2005 인권단체와의 정책 간담회」 개최
2005.3.11	차별관련 진정사건, 1,000건 넘어서다 권고수용률 92%, 차별개선권고 60건, 조사 중 해결 67건
2005.3.14	2005년 인권논문 공모사업 실시 -군대, 여성, 외국인, 장애인 주제로-
2005.3.15	국가인권위,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 강화

보도일자	제 목 및 내 용
2005.3.15	국가인권위, 한센인 인권보장 사업추진(2005년 주요사업으로 추진)
2005.3.15	국가인권위, '비정규직 근로 관련 입법안 청문회' 개최
2005.3.16	신용 평가 시 혼인여부, 성별 항목 삭제
2005.3.23	공무원 직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
2005.3.23	최영도 위원장 이임식
2005.3.28	만18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여성 규정 폐지
2005.3.28	치료 보호 시 보호관찰 필수 부과는 과잉금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보건복지부에 의견 표명
2005.3.28	대학별 등급가중치 사용 안 된다
2005.3.31	국가인권위, 군대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2005.3.31	친척의 불법체류를 이유로 자녀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인권침해
2005.4.1	공공도서관 획일적인 주민등록번호 요구 관행 개선해야
2005.4.4	국가인권위 조영황 위원장 취임
2005.4.6	국가인권위, '주민등록번호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2005.4.7	국가인권위, 사형폐지 의견표명
2005.4.7	인신보호법안 제정 적극 찬성
2005.4.7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관행 개선되어야
2005.4.8	체납우편요금 강제징수절차 준수해야
2005.4.12	공무원 채용 시 키·몸무게 제한은 평등권 침해
2005.4.12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입양아동 보호
2005.4.12	국가인권위, APF 및 ICC 회의 참석
2005.4.14	기간제근로자 사용 사유 제한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필요 비정규근로자 관련 2개 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보도일자	제 목 및 내 용
2005.4.14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표명에 즈음하여
2005.4.19	점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자 선거공보 규격 제한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2005.4.19	특이수용자 각서 작성은 평등권 침해
2005.4.19	학교폭력에 대처 않은 학교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권고
2005.4.20	조영황 위원장, '장애인 보조기구 전시회' 참석
2005.4.26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단속과정에서의 폭행·가혹행위 근절돼야
2005.4.27	일기검사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 교육부 수용
2005.4.28	조영황 위원장, 한센인 정착농원 방문
2005.5.2	국가인권위원회장, 중재를 통해 합의 성사
2005.5.3	본인 동의 없이 인터넷 통해 재학생 입영신청 가능케 한 행위는 인권침해
2005.5.11	개인정보인권 보호되어야
2005.5.11	조영황 위원장, '한센인 인권 그림' 기증식 참석
2005.5.13	국가인권위, 학생 두발제한에 대한 토론회 개최
2005.5.19	살색 크레파스, 살구색으로 최종 확정
2005.5.20	조영황 위원장, '제9회 인권영화제' 개막식 참석
2005.5.24	대학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철저
2005.5.26	적법절차 준수 않은 공문서 폐기는 알 권리 침해
2005.6.9	이혼 소송 중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 출국 조치한 것은 인권침해
2005.6.9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 단속·연행에 관한 법적 근거와 요건 명확히 해야
2005.6.13	공무원 및 공기업의 고용차별 직권조사 결정
2005.6.20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 육군사관학교 장교 대상 인권특강
2005.6.20	국가인권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정보 열람·발급 허용' 관련 토론회 개최
2005.6.21	인권위, '연천지역 총기난사 사건' 보강수사 참여

보도일자	제 목 및 내 용
2005.6.23	국가인권위가 한센인을 찾아갑니다
2005.6.23	성차별·성희롱 시정업무 국가인권위로 일원화
2005.6.23	성차별·성희롱 시정업무 일원화 첫날, 신문사 여기자 정리해고 성차별 진정접수
2005.6.24	국가인권위 ‘제1차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
2005.6.28	국가인권위·경찰청 공동 ‘인권강사양성 연수과정’ (4박5일)운영
2005.6.28	국가인권위, ‘국민인권의식조사’ 실시
2005.6.28	통계 등 4개 직무 별정직공무원만 근무상한연령을 낮게 규정한 것은 차별
2005.6.29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 소록도 방문
2005.6.30	국가인권위, ‘피의사실공표와 인권침해’ 주제로 공청회 개최
2005.7.4	학생두발자유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2005.7.5	환자 장기·불법 입원 등 신체의 자유 침해한 정신병원장 검찰총장에 고발
2005.7.12	한센인 인권보호 위한 한일 양국 토론회 개최
2005.7.12	국가정보원, 신원조사제도 개선
2005.7.12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별정직채용 추가 공고
2005.7.13	난민 인권보호 정책개선 청문회 개최
2005.7.13	국가인권위,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경찰 현장 체험’ 실시
2005.7.19	동명이인에 대한 재판 기일통지서 송달 소홀은 인권침해
2005.7.19	‘완전한’ 섹스 소유자만이 ‘안전한’ 공무수행을 한다는 근거 없어
2005.7.19	행정사자격증, 특정 공무원들의 독점물 되어서는 안돼
2005.7.21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행위 않은 것은 인권침해
2005.7.25	국가인권위, 통합학급 교사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연수과정’ 운영
2005.7.27	학교·직장·병원… 성희롱은 곳곳에 있다
2005.7.28	28일, ‘고문방지협약’ 관련 세미나 개최



보도일자	제 목 및 내 용
2005.8.3	국가인권위, 청계천 거리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 실시
2005.8.4	소속 공무원을 70여 일간 과 대기 상태로 둔 것은 인권침해
2005.8.5	치료목적의 강박이라도 주의의무 준수 않으면 인권침해
2005.8.8	재량권을 넘어서 인사조치 및 외부 공표는 인권침해
2005.8.9	행정처분 시효가 없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 규정은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침해
2005.8.10	국가인권위, 청계천거리 편의시설 관련 간담회 개최
2005.8.16	유학 휴직 시 토플성적만 요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2005.8.22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개선 권고
2005.8.24	국가인권위, 제10차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연례회의 참가
2005.8.29	한센병력자 교육거부는 평등권 침해
2005.8.30	대학도서관 열람실 이용 시 지문정보 요구는 과도한 인권 침해
2005.8.31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 전면 재검토해야
2005.9.1	청계천, 장애인 등 이동권 보장 미흡
2005.9.5	국가인권위, 사이버인권교육 시스템 구축 '사이버인권배움터 시연회'
2005.9.6	공무원 경력보다 민간기업 경력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2005.9.7	적법절차 어긴 소년보호처분 전력 조회. 회보는 사생활의 자유 침해
2005.9.7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Michael Hingson 등 초청 강연회
2005.9.13	과도한 격리·강박 등 인권침해 행위 시정할 것
2005.9.20	인권 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 특별시사회
2005.9.21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수사 장비 취급·사용 기준 마련되어야
2005.9.26	수갑 사용 시에도 피의자 인권 보호되어야
2005.9.27	법무부, 공무원 채용 시 신체조건 제한 폐지 및 개선

보도일자	제 목 및 내 용
2005.9.28	국가인권위, 정신병원장 고발 및 정신보건법 개정 권고
2005.10.4	경찰채용시험 군필자 제한은 평등권 침해
2005.10.4	결혼과 가정의 보호를 위해 불법체류 상태인 이란국 배우자 사증 발급 조치해야
2005.10.5	부산지역사무소와 광주지역사무소 개소
2005.10.10	미결수용자에게도 생활필수품 지급해야
2005.10.10	국가인권위, 검찰·교정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연수과정’ 운영
2005.10.11	구급시설 수용자의 동절기 7일 1회 이상 온수목욕 보장되어야
2005.10.17	출석부 ‘남학생 앞 번호, 여학생 뒷 번호’는 성차별
2005.10.17	탈북망명인사 관련 중앙일보 보도에 대하여
2005.10.18	학생 및 학부모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한 퇴학처분은 인권침해
2005.10.18	국가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개최
2005.10.20	학교식당 지문인식기 설치 및 학생지문날인 요구는 인권침해
2005.10.24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직권조사
2005.10.24	순직변경처리 미 통지는 국가배상책임
2005.10.26	여성의 농업종사경력 노인정은 성차별
2005.10.27	다양한 가족 및 가정의 형태를 인정해야
2005.11.1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도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있어
2005.11.1	「『민간인 학살』 진상 밝힌다」 보도에 대하여
2005.11.2	‘날짜 없는 사직서’ 작성 종용 관행 등 시정해야
2005.11.3	경찰의 현대 하이스코 실지조사 불응관련 과태료 부과 등 대응 방침
2005.11.7	특정 운송수단 운전경력자에게만 개인택시면허는 차별
2005.11.8	참고인에 대한 강압적 출석요구는 인권침해



보도일자	제 목 및 내 용
2005.11.9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시 나이제한은 차별
2005.11.10	장애인 보조견 활성화 토론회 개최
2005.11.10	국가인권위, 통합교육 관리자 '휠체어와 함께 하는 인권워크숍' 운영
2005.11.15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정지할 특례법 필요성 인정
2005.11.16	안전한 청계천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2005.11.25	조영황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 김대중 전대통령 예방
2005.11.28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선해야
2005.11.29	국가인권위, 이혼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자녀교육수당지급 관련 규정 개정할 것 권고
2005.12.2	외국인 고용업소 등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은 인권침해
2005.12.7	「인권위 시정명령권 도입 검토 '논란」 보도에 대하여
2005.12.9	세계인권선언 제5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 인권상 시상식, 세계인권선언 낭독
2005.12.9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 종합평가 보고회 개최
2005.12.13	군 인권전문상담관 등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연수과정' (3박4일) 운영
2005.12.26	미성년 피의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관련 경찰서장 주의조치 및 진정인 법률구조요청
2005.12.26	국가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 결정
2005.12.26	농민사망사건, 검찰 수사의뢰 및 서울청장 등 책임자 경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05 연간보고서

-
- 인 쇄 일 : 2006년 5월
 - 발 행 일 : 2006년 5월
 - 발 행 인 : 조 영 황
 - 발 행 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우 100-842
전화 / (02) 2125-9795
팩스 / (02) 2125-9798
홈페이지 / www.humanrights.go.kr
 - 인 쇄 처 : 서린기획 (02) 2263-2704
-

비매품

